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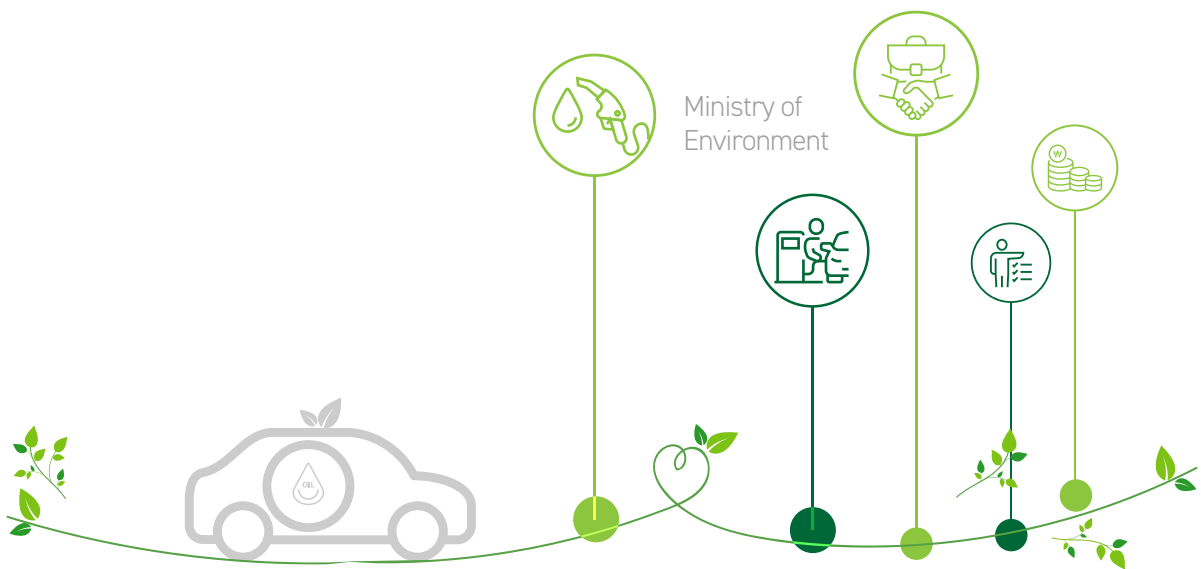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480000-100019-01

www.me.go.kr

#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

2024. 12





## 제1장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요

|                              |   |
|------------------------------|---|
| 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          | 3 |
| 2.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연혁 .....      | 4 |
| 3.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    | 4 |
| 4. 부과 대상 등 .....             | 5 |
| 5. 근거 법령, 행정규칙 및 지침 등 .....  | 6 |
| [붙임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절차도 ..... | 8 |

## 제2장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주요내용

|                                      |    |
|--------------------------------------|----|
| 1. 부과 대상 .....                       | 11 |
| 2.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및 감면(면제) 대상 ..... | 13 |
| 3. 추가적인 감면 제도 .....                  | 22 |
| 4. 일할계산하는 경우 .....                   | 24 |
| 5.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 25 |
| 6. 부과·징수·후속조치 절차 .....               | 28 |
| 7. 강제징수 .....                        | 32 |
| 8. 과오납금 환급 .....                     | 35 |
| 9.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 37 |
| 10. 징수비용 교부 .....                    | 38 |
| 11. 결손처분 .....                       | 39 |
| 12. 납부의무자의 재산조회 .....                | 42 |
| 13. 체납처분 중지 .....                    | 44 |
| 14. 체납처분 유예 .....                    | 45 |

|                                              |    |
|----------------------------------------------|----|
| [붙임2] 법인에 대한 부과, 부과제외, 결손처분 정리 .....         | 46 |
| [붙임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              | 47 |
| [참고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48 |
| [참고2]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49 |
| [참고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관련 규정 .....        | 50 |
| [참고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기준 .....                 | 52 |
| [붙임4] 부과제외, 감면(면제) 및 추가적인 감면 사항별 연혁 .....    | 53 |
| [붙임5] 계산식 구성항목별 연혁 .....                     | 60 |

### 제3장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지침 모음

|                                                |    |
|------------------------------------------------|----|
| 1. 농축협 등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관련 .....               | 69 |
| 2. 감면대상자와 비감면대상자가 자동차를 공동소유 하는 경우 감면범위 .....   | 70 |
| 3.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 .. | 71 |
| [붙임6] 관계 법령 .....                              | 74 |
| [붙임7] 운영기준 적용 안내 .....                         | 76 |

### 제4장 질의·회신사례 모음

|                          |     |
|--------------------------|-----|
| 1. 제도 운영 .....           | 79  |
| 2. 면제 및 감면 .....         | 83  |
| 3. 부과 및 납부 .....         | 91  |
| 4. 압류 등 강제징수와 압류해제 ..... | 96  |
| 5. 과오납 환급 .....          | 101 |
| 6. 결손처분 .....            | 102 |

# CONTENTS

## 제5장 환경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     |
|-------------------------------|-----|
| 1. 개요 .....                   | 107 |
| 2. 업무 따라하기 .....              | 112 |
| 2-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     | 112 |
| 2-2.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관리 .....  | 152 |
| 2-3.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     | 160 |
| 2-4. 간단e납부 연계 관리 .....        | 164 |
| 2-5. 가상계좌관리 .....             | 170 |
| 2-6. 자동납부관리 .....             | 173 |
| 2-7. 자동차등록부 조회(말소 현황 등) ..... | 180 |
| 2-8. 기타 관리 .....              | 183 |
| 3. 자주 묻는 질문 .....             | 190 |

## 제6장 부록

|                                                      |     |
|------------------------------------------------------|-----|
|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3단 비교표(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시행규칙 별지서식) ··· | 197 |
|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                          | 236 |
| 3.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 245 |
| 4.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              | 247 |
| 5.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                         | 249 |
| 6.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                     | 250 |



# 제1장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요

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2.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연혁
3.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4. 부과대상 등
5. 근거 법령, 행정규칙 및 지침 등

【붙임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절차도



# 1장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요

## 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 가. 제도로입 배경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 나. 제도의 의의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함
- 일반적으로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로 대별될 수 있음
  - 직접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과 같이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 간접규제는 쓰레기종량제와 같이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해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저감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2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연혁

- '90.12. : 환경개선증기종합계획 수립 및 원인자부담제도 도입 보고(대통령)
  - '91.12.31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공포(법률 제4493호)
  - '92. 7.21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3699호)
  - '92. 8. 8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제정·공포(총리령 제403호)
  - '93. 1.15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정(훈령 제222호)
  - '93. 3. : 시설물에 최초로 부과('92.7.1~12.31분에 대해 '93.3에 부과)
  - '94. 3. : 경유자동차에 최초로 부과('93.7.1~12.31분에 대해 '94.3에 부과)
  - '95. 7. 1 : 1,000㎡이상에서 160㎡ 이상인 시설물로 부과 대상 확대
  - '99. 2. 8 : 시·도에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징수비용 교부
  - '07.12.28 :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비용 추가 교부
  - '09. 7. 2 :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10. 8.17 :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 5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13. 7.16 : 일시납부(연납)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 '13.12. :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납부 가능(현금 및 신용카드)  
※ 신용카드 납부는 시군구별 기시행한 곳도 있음
  - '15. 7. 1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15.1.1~6.30분은 '15.9에 부과)
  - '19.10.16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제도, 연대납부의무, 제2차납부의무 도입, 일시납부 시기 및 내용 변경\*
- \* (변경 전) 3월[1년분 10% 감면] → (변경 후) 1월[1년분 10% 감면], 3월[하반기분 10% 감면]
- '22. 3.28 : 징수율 60% 초과 시 추가 징수교부금 확대(최대 20% → 30%)
  - '23. 7.18 : 체납액 징수 방법 개정(「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 3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
| 상반기분 | 매년 6월30일 | 1월 1일부터<br>6월30일까지  | 9월16일부터<br>9월30일까지      |
| 하반기분 | 매년12월31일 | 7월 1일부터<br>12월31일까지 | 다음연도 3월16일부터<br>3월31일까지 |

\* 납부기간 마지막 날이 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다음날(연휴는 마지막 휴일의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

## 4 부과 대상 등

### 가.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 '12.9 이후 신규 부과대상 없음

### 나. 부과·징수권 위임

- 환경부 → 광역·특례시 → 기초(광역에서 일부 직접 부과·징수)

### 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

- **부과시기** :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  
\*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1년분의 10% 감면, 3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상반기분의 10% 감면
- **부담금 산정식** : 대당 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대당 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20,250원) × 부과금 산정지수\*\*  
\* 생계형 차량은 기준부과금액 7,600원  
· 생계형 차량 : 배기량 3천cc이하, 최대적재량 8백kg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법인소유 등 제외)
  - \*\* 전년도 산정지수 × (1 + 물가상승률), ('22) 2.102 → ('23) 2.247 → ('24) 2.319
- **오염유발계수**

| 엔진 총배기량(cc)        | 오염유발계수 |
|--------------------|--------|
| 2,000 이하           | 1.00   |
| 2,000 초과 2,500 이하  | 1.25   |
| 2,500 초과 3,500 이하  | 1.75   |
| 3,500 초과 6,500 이하  | 2.64   |
| 6,500 초과 10,000 이하 | 4.50   |
| 10,000 초과          | 5.00   |

### - 차령계수

| 차령   | 3년 미만 | 3년 이상<br>4년 미만 | 4년 이상<br>6년 미만 | 6년 이상<br>8년 미만 | 8년 이상<br>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 - 지역계수

| 지역별  | 인구<br>10만 미만 | 인구<br>10만 이상<br>50만 미만 | 인구<br>50만 이상<br>100만 미만 | 인구<br>100만 이상<br>500만 미만 | 인구<br>500만 이상 |
|------|--------------|------------------------|-------------------------|--------------------------|---------------|
| 지역계수 | 0.40         | 0.85                   | 0.87                    | 1.00                     | 1.53          |

## 5 근거 법령, 행정규칙 및 지침 등

### 가. 근거 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91.12.31 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92.7.21 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92.8.8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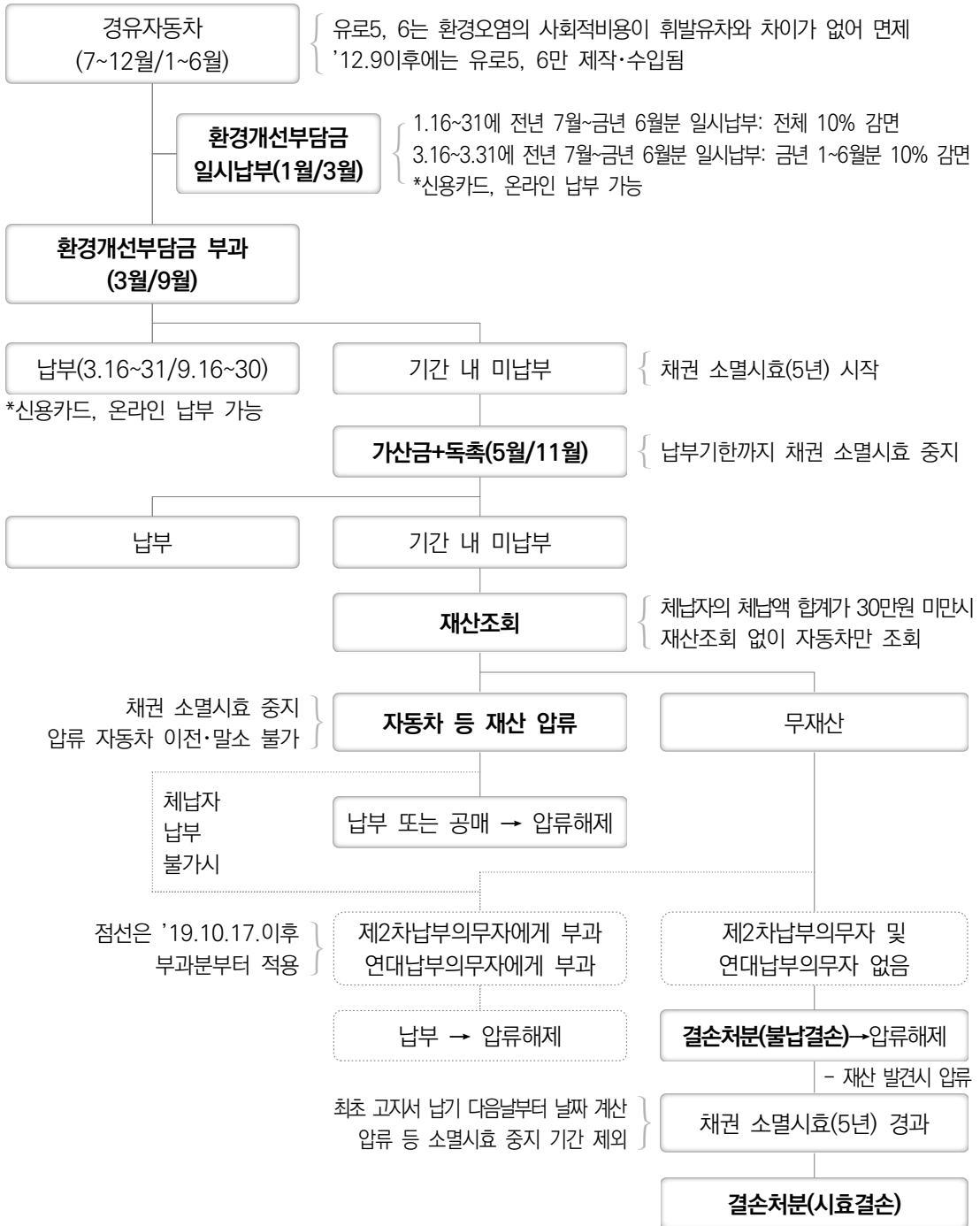
### 나. 행정규칙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646호, 2024.6.7.)  
\* 제정 : 환경처훈령 제222호, 1993.1.15.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13호)  
\* 제정 : 환경처고시 제1993-88호, 1993.10.4.(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12호)  
\* 제정 : 환경부고시 제2008-36호, 2008.2.22.
-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환경부고시 2019-192호)  
\* 제정 : 환경부고시 제2019-192호, 2019.10.17.
-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23-298호)  
\*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 산정지수 고시(제정)

## 다. 지침 등

-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비부과 및 체납처분 중지 유예 등 운영기준(녹색전환정책과-33(2021.1.4.))
  - \* 환경산업경제과-5617호(2019.12.16.) 및 5624호(2019.12.17.)에서 변경
- 운행정지 처분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및 부과취소 안내(녹색전환정책과-691, 2020.10.23.)
-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 적용 안내(환경산업경제과-4731, 2019.10.24.)
-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환경산업경제과-4655, 2019.10.17.)
  - \* 환경산업경제과-4634호(2019.10.16.)에서 변경
-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알림(환경산업경제과-4796, 2019.10.28.)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 해제 요건 질의 회신(환경산업경제과-4025, 2019.9.4.)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관련 안내(환경산업경제과-2800, 2019.6.17.)
- 산림조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지침 수립·시달(환경경제과-203, 2005.02.17.)
- 농수협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업무처리지침(환경경제과-564, 2004.06.09.)
- 중소기업은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업무처리지침(환제67100-798, 2001.10.23.)
- 중소기업은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및 업무처리지침(환제67100-798, 2001.10.23.)

## 붙임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절차도



\* 말소, 소유권이전 등의 경우 수시부과 가능

\* 위의 부과징수 관련 모든 권한은 시·도·특례시에 위임되어 있음(시·군·구에 재위임)

# 제2장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주요내용

1. 부과 대상
2.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및 감면(면제) 대상
3. 추가적인 감면 제도
4. 일할계산하는 경우
5.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6. 부과·징수·후속조치 절차
7. 강제징수
8. 과오납금 환급
9.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10. 징수비용 교부
11. 결손처분
12. 납부의무자의 재산조회
13. 체납처분 중지
14. 체납처분 유예

【붙임 2】 법인에 대한 부과, 부과제외, 결손처분 정리

【붙임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붙임 4】 부과제외, 감면(면제) 및 추가적인 감면 사항별 연혁

【붙임 5】 계산식 구성항목별 연혁



## 2장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주요내용

### 1 부과 대상

#### 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군용 특수자동차),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의료기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 엔진이 없는 트레일러 등은 제외
-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

#### 나. 정기분 부과대상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

#### 다. 수시분 부과대상

- 부과대상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개선부담금 수시 부과 가능(령 제8조제1항)
  -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
  -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부과 제외 또는 면제대상으로 된 경우

## ※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 납부의무승계
  - (법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또는 신설)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체납금 포함) 납부의무를 진다.
  - (개인) 상속한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체납금 포함) 납부의무를 진다.
- 연대납부의무\*
  - \* '19.10.17이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적용
  - 공유물(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환경개선부담금(체납금 포함)에 대하여는 공유자(또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 하나의 부과대상에 대하여 관계되는 여러명의 납부의무자가 전체 징수금에 대해 각자 개개인이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고, 어느 1인이 납부하면 다른 납부자도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 그리고, 어느 1인이 전체 환경개선부담금(체납금 포함)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면 그 일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면하므로 나머지 미납분에 대해서는 그 일부 납부자를 포함하여 공유자 모두 계속 연대납부의무가 있게 된다.
- 제2차납부의무\*
  - \* '19.10.17이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적용
  - 체납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여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체납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 \* 법인이 해산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 비상장 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 책임사원 또는 과점 주주,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 주주가 납부불능일 때 그 법인

## 2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및 감면(면제) 대상

### 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령 제4조제2항)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한 공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등

### 나. 감면 대상(법 제9조제3항)

※ **감면 내용**(령 제7조제1항) : **전액 면제**(아래 두 경우 이외에는 기간제한 없이 면제)

- 전시용 자동차는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동안 면제
- 제1종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저감장치 보증기간 동안 면제  
(보증기간\* : (1종) 3년 또는 16만km, (2종) 3년 또는 8만km)
- \*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주행거리가 아닌 연도로 일괄 적용중

-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2)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 경유차, 제1종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 제1종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3년간만 면제

※ 2012.9월부터는 신규 부과대상 자동차 없음(유로5 이상 경유차만 출고)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세부기준이 없으므로 부과대상 차량 중 부과금액이 많은 차량을 선택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아래와 같음(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이며 공동 명의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3급 장애인 포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다. 다른 법률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

※ 시설물('15년 폐지) 및 자동차 모두 면제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1961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 축산업협동조합유통사업단이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조직이나 부서이면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자회사일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이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임

※ 지역 농·축협이 아닌 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농협유통 및 하나로유통 등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이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임

Ⅱ 농협법 제8조에 따른 하나로마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여부\*

| 대분류            | 중분류             | 부과여부 | 부과기준         |
|----------------|-----------------|------|--------------|
| 지역 농·축협        | 하나로마트           | 면제   | 기존 면제대상      |
| 경제지주회사의<br>자회사 |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 부과   | 기존 부과대상      |
|                | 대전유통 하나로마트      | 부과   |              |
|                | 충북유통 하나로마트      | 부과   |              |
|                | 부산·경남유통 하나로마트   | 부과   |              |
|                | 하나로유통 하나로마트(클럽) | 부과   | 2015년부터 부과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금융정책과-2825('15.9.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관련 검토의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 1962년~)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임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산림조합법」 제8조, 1980년~)

\*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임

4)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중소기업은행법」 제50조, 1961년~)

5)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9조, 2012.12.1.~)

라. 말소등록 되지 않았어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령 제4조제5항)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부과제외(부과취소 포함) 적용 기준

- 아래 부과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미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취소한다.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폐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서류의 작성일\*을 사용폐지의 등록일로 보아 그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한다.
  - \* 공적서류 또는 그 첨부 서류에 의해 사용을 폐지한 날짜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사용폐지의 등록일로 볼 수 있다.
- 부과제외한 후라도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5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일괄소급하여 부과
- 아래 부과제외 요건 중 둘 이상이 해당할 때는 더 과거의 날짜를 적용
  - ※ 부과취소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압류는 해제한다.
  - ※ 사용폐지의 등록일 전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제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괄계산하여 고지서 발부 후 징수(사용폐지의 등록일 전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제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수대상임)

1) (수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의 작성일부터 부과제외

2) (폐차)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부터 부과제외. 다만, 폐차장입고확인서\*도 같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장입고일부터 부과제외(폐차장입고일 전일까지 부과)\*

\* (예시) 2024년 2월 1일에 폐차장에 입고되었다면(폐차장입고일 2024년 2월 1일) 2024년 1월 31일(폐차장입고일 전일)까지 부과.

- 폐차장입고확인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사실(경찰서, 시군구 교통관련부서 등), 자동차관련보험가입여부(보험개발원), 자동차검사여부(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을 통해 자동차 운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폐차장입고일부터 부과제외

\* 폐차장입고일 이후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이 이루어졌거나 자동차검사를 한 경우에는 폐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폐차로 인해 말소된 경우 폐차장입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장입고일부터 부과제외

3)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번호판의 영치일을 사용폐지의 등록일로 본다. 즉, 영치 기간동안 부과제외

※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간 때부터 부과

- 4) **(도난)**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  
(**도난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일(도난 사건접수일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사건접수일)부터 부과제외

\* 발급서류의 명칭은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으며, 단순한 도난신고서나 접수증은 불인정

- 5)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  
명령한 날부터 부과제외

- 6)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의 장)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발행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의  
발급일(멸실인정일이 명기된 경우 멸실인정일)부터 부과제외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명칭과 기준은 발급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 7)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자동차)** 자동차세 담당부서에서 비과세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담당부서의 비과세 처분일부터 부과제외

※ 자동차세 고지 유예 상태의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임

- 8) **(미소유확인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주로 기재되어있는 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후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6개월이상이 경과된 경우 통반장 또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미소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소유확인서  
발급일을 사용폐지의 등록일로 본다.

\* '03년 폐지된 제도이지만 폐지 후 발급된 것도 인정

- 9) **(자동차를 갖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자동차를 동반하여 출국한다는 증빙서류(일시반출  
등록증서 등)의 작성일(출국일이 명시된 경우 출국일)을 사용폐지의 등록일로 본다.  
즉, 자동차 동반 출국기간동안 부과제외

※ 자동차를 동반하여 입국한 때부터 부과

- 10) **(천재지변·사고 등)** 천재지변·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되었거나 자동차 정비업소에  
입고된 경우, 사건사고사실증명원·사고사실증명서 등(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구청장 발행)의 작성일(사고일 등이 명기된 경우 사고일 등)부터 부과제외\*

\* 등록말소 및 2)(폐차), 11)(사고 등에 의한 자동차 정비) 등과 연계되어 작성일(또는 사고일)부터 차량이  
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

11) **(사고 등에 의한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업소 입·출고 확인서 등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부과제외

12) **(중고차 매매상사에 인계)** 명의이전 된 차량을 명의이전 전에 중고차 매매상사에 차량을 인계한 경우 인계한 날\*부터 명의이전한 날까지 부과제외

\* 계약서 및 인계한 날짜가 특정된 서류(계약서에 부기되어 있고 인수자 및 인계자 모두 날인한 경우 등)로 확인(전화, 전산화면 등 매매상사에도 확인)

13)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된 자동차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사용폐지 여부를 확인(출장복명서 작성) 하고 사실상 사용폐지 차량에 대하여 확인일 이후부터 부과제외

※ 해당차량이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과거 2년간 주정차위반 및 속도위반 등 운행과 관련된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현지확인 없이 최종 책임보험 만료일, 최종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종료일 및 차령이 15년이 되는 날 중 가장 최근의 날부터 부과제외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책임보험가입자가 같을 필요는 없음

14)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한 차량)** 차령이 10년(화물·특수자동차 중 중형 및 대형은 12년) 경과하고 최근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① 자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하여 2회 이상 미이행하고 ②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최근 계속하여 2년 초과된 차량\*은 부과제외. 단, ①과 ②를 만족하였으나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과 ①, ② 중 최근의 날 이후 부과제외

\* ①,② 기간이 중복된 경우는 차량존재기간이 긴 기간 적용하되, 책임보험 가입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 자동차검사만 적용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책임보험가입자가 같을 필요는 없음

Ⅱ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74조 관련) Ⅱ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경형·소형·중형·대형)               |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경형·소형·중형·대형)                | 1년     |
|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비사업용 및 사업용) 중형·대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6개월    |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내용으로 관련 규정으로 편집함

Ⅱ 차량이 10년이상 경과한 차량의 부과제외 계산 예 Ⅱ

□ 승용·승합, 화물·특수자동차(소형이하) 예시

【사례1】

- ➡ 2006년식 자동차로 최근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말소등록이 않된 경우(최근 자동차검사유효기간 : 2015.12.1.~2016.11.30, 최근 자동차배상책임보험기간 : 2014.6.1~2015.5.31)
- ㉢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이 만료하고 검사유효기간이 2회 경과한 2018.11.30. 이후 부과제외

【사례2】

- ➡ 2010.1.1 최초 등록된 자동차로 최근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2019년 현재 말소등록이 않된 경우(최근 자동차검사유효기간 : 2016.12.1.~2017.11.30, 최근 자동차배상책임보험기간 : 2015.6.1~2016.5.31)
- ㉢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이 만료하고 검사유효기간이 2회 경과한 2019.11.30.은 차량이 10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차량이 10년 경과한 2020.1.1. 이후 부과제외

【사례3】

- ➡ 최근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 10년이 경과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이 2회 경과한 이후에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최근 자동차검사유효기간 : 2011.12.1~2012.11.30, 최근 자동차배상책임보험기간 : 2010.6.1~2011.5.31, 교통법규위반 2015.7.1)
- ㉢ 교통법규위반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7.1 이후 부과제외

【사례4】

- ➡ 2015년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4회 이상 체납된 2005년식 자동차가 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 못한 경우(자동차검사유효기간 : 2013.12.1~2014.11.30, 자동차배상책임보험기간 : 2013.1.1~2014.12.31)
- ㉢ 자동차검사유효기간 및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각 2회 미경과로 부과취소 불가(자동차배상책임보험이 만료되고 2년이 경과한 날인 2016.12.31. 이후 부과제외 가능)

【사례5】

- ➡ 2003년식 자동차로 최근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말소등록이 않된 경우(최근 자동차검사유효기간 : 2008.12.1.~2010.11.30, 최근 자동차배상책임보험기간 : 2010.6.1~2011.5.31)
- ㉢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이 만료하고 검사유효기간이 2회 경과한 날(2014.11.30.)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기간이 2년 초과된 날(2013.5.31.) 중 차량 존재기간이 긴 2014.11.30. 이후 부과제외

□ 화물·특수자동차(중형이상) 예시

【사례6】

- ➡ 2002년식 자동차로 최근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로서 말소등록이 안된 경우(최근 자동차검사유효기간 : 2012.11.1.~2013.4.30, 최근 자동차배상책임보험기간 : 2012.6.1 ~2013.5.31)
- ㉢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이 만료하고 검사유효기간이 2회 경과한 날(2014.4.30.)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기간이 2년 초과된 날(2015.5.31.) 중 차량 존재기간이 긴 2015.5.31. 이후 부과제외

15) **(해산, 청산종결, 파산종결 법인)** 법인 청산종결일 또는 청산종결 전이라도 해산일\* 부터 부과제외\*\*

\* 법인의 해산일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① 주주총회 등에서 해산을 결정한 경우 그 익일, ② 해산한 날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이다.(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

\*\*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함

※ 청산·파산종결일 전에 부과된 체납분은 결손처분(50쪽 '11. 결손처분 가. 8'))

16) **(청산종결간주 법인)** 청산종결간주(「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된 법인은 청산종결간주 날짜\*부터 부과제외\*\*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

\*\* 청산종결간주 법인은 재산 처분 이외의 행위는 할 수 없는 사실상 소멸된 법인

※ 청산종결 간주일 전에 부과된 체납분은 결손처분(50쪽 '11. 결손처분 가. 3'))

※ 해산간주(「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의한 해산) 법인은 계속등기를 통해 정상 법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해산간주 법인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임

※ 법인이 5년동안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해산간주 등기를 하고, 그 후 3년안에 계속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간주 합니다.

| 법인 종류   | 파산종결 | 청산종결 | 청산종결간주 | 해산 | 해산간주 |
|---------|------|------|--------|----|------|
| 부과 제외취소 | 0    | 0    | 0      | 0  | X    |
| 결손처분    | 0    | 0    | 0      | X  | X    |

17) **(행방불명자, 상속인 없는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행방불명자 소유의 차량과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 소유의 차량은 부과 제외

18)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지역별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에 대해 운행이 제한되는 날\*\*\*\*은 부과제외(‘21.1.1.부터 적용)

\* 시행일(발령 다음날) 부과제외 - 시행 중 발령 취소된 경우도 부과제외, 발령 당일 취소되면 부과

\*\* 12월1일~다음해 3월31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제한하지 않으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적용지역과 지자체별 운행제한 제외대상 차량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지자체 운행제한 담당부서로 문의

-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21)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 \*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한 공매, 강제경매, 임의경매 등
- 22) 소유자에 대한 파산선고일부터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때까지 부과제외
- 23) 「자동차손해배상 보험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1~3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업무가 위임된 경우 시·군·구청장 포함)에게 보관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그 보관한 기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험법 소관 부서에 문의
- 24) (기타) 관계공무원이 당해 차량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출장복 명서의 작성일(출장일보다 작성일이 늦는 경우 출장일)부터 부과제외
  - ※ 1)~22) 중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 더 과거의 날짜를 적용하여 부과제외(부과취소)
  - ※ 1), 2), 4)~8), 10), 13) 및 14)의 사유로 부과취소 또는 부과제외한 후에도 해당 자동차에 부과 취소·제외 사유 발생 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압류가 있는 때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체압류를 권고함
  - ※ 압류한 목적물이 사실상 없어지면(압류의 실효) 압류의 효력은 잃게 되나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사실상 소멸·멸실이 인정된 자동차에 대해 인정일 전에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압류해제”할 필요는 없음
  - 필요 시에는 44쪽 13.(체납처분 중지)에 따라 조치

### 3 추가적인 감면 제도

#### 가. 영세 자영업자 소유 일반형 화물자동차 감면(령 별표6의2)

-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이상인 화물자동차 기준부과금액 인하\*(20,250원→7,600원)로 경감

\* 다만, 다음 1~4의 자동차는 제외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신규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 Ⅱ 화물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발췌) Ⅱ

|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
| 화물<br>자동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 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           |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 나. 일시납부(연납)에 의한 감면(법 제9조제7항)

### 1) 일시납부\* 신고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 규모 구분

\*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연도 상반기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법령상 용어는 '일시납부'이며, 이를 '연납'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가) 1.16~1.31 중 일시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의 10% 감면

\* 매년 1.16~1.31 중 위택스(wetax) 및 이택스(etax)에서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납부시 일시 납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1.1~1.31 중 해당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담당부서에 방문·전화·팩스로 신고하여 고지서 발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도 가능

나) 3.16~3.31 중 일시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2.1~3.31 중 해당 시·군·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부서에 방문·전화·팩스로도 신고하여 고지서 발부받아 은행 등에 납부

### 2) 일시납부 관련 유의사항

가)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일시납부 대상이 아님

나) 일시납부 신고는 연중 가능 : 해당 시·군·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부서에 방문·전화·팩스 등으로 신고

다) 한번 일시납부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매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일시납부 고지서 발부(3.16~3.31 중 일시납부한 경우에도 다음해부터는 1.16~1.31 중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된 고지서 발부)

라) 일시납부 신고 및 납부했던 자가 다음 연도에 일시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일시납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마) 해당 시·군·구를 벗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다시 일시납부 신고\*를 하여야 함

\*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일시납부 대상자는 전입 시·군·구로 이관되지 않음

바) 일시납부 후 당해연도 6월30일 이전에 자동차 등록지(개인은 주민등록주소)의 이전, 소유권 양도,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으로 되었을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

\* 일시납부 후 위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산정하는 경우에도 10% 감면 적용(자동차 등록지 이전 후에 대해서도 10% 감면 적용)

사) 위 바)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지(개인은 주민등록주소)의 이전, 소유권 양도,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으로 된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과오납금 환급과 같음)

아) 1월에 폐차하거나 양도한 자가 1월 일시납부 기간 중에 일시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와 1~3월에 폐차하거나 양도한 자가 3월 일시납부 기간 중에 일시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도 일시납부 대상이 됩니다.

- 1월에 폐차하거나 양도한 자가 1월 일시납부 기간 중에 일시납부를 신청하였을 때는 [전년도 7월1일 ~ 폐차(양도)일]에 대해 10% 감면 적용
- 1~3월에 폐차하거나 양도한 자가 3월 일시납부 기간 중에 일시납부를 신청하였을 때는 [해당연도 1월1일 ~ 폐차(양도)일]에 대해 10% 감면 적용

## 4 일할계산하는 경우

가. 신규등록

나. 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면제대상 용도로의 변경등록

다. 운송사업용 또는 자가용으로의 변경등록

라. 휴지신고

마.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바. 말소등록

사. 기타 일할계산이 필요한 경우

※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나 부과기간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이 폐지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28쪽 라.(말소등록 되지 않았어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적용하여 일할계산

## 5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가. 자동차 배기량별,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계산식(법제10조제2항)

$$\begin{array}{ccccccc} \text{대당기본부과금액} & \times & \text{오염유발계수} & \times & \text{차령계수} & \times & \text{지역계수} \\ (\text{기준부과금액} \times \text{부과금산정지수}) & & (\text{배기량기준}) & & (\text{차령노후정도}) & & (\text{행정구역별}) \end{array}$$

- 계산 예

| 개선부담금 = | 대당기본부과금액 ×                         |                                | 오염유발계수 ×                                                                                                                                                                                         | 차령계수 ×                                                                                                                                                                                                         | 지역계수                                                                                                                                                                                            |
|---------|------------------------------------|--------------------------------|--------------------------------------------------------------------------------------------------------------------------------------------------------------------------------------------------|----------------------------------------------------------------------------------------------------------------------------------------------------------------------------------------------------------------|-------------------------------------------------------------------------------------------------------------------------------------------------------------------------------------------------|
|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엔진배기량(cc)〉                                                                                                                                                                                      |                                                                                                                                                                                                                |                                                                                                                                                                                                 |
| (예시)    | 20,250원<br>(7,600원 <sup>1)</sup> ) | 2.319 <sup>2)</sup><br>(‘24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0이하: 1.00</li> <li>•2000~2500: 1.25</li> <li>•2500~3500: 1.75</li> <li>•3500~6500: 2.64</li> <li>•6500~10000: 4.50</li> <li>•10000이상: 5.0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미만:0.50<sup>3)</sup></li> <li>•3년 이상 4년 미만:1.00</li> <li>•4년 이상 6년 미만:1.04</li> <li>•6년 이상 8년 미만:1.08</li> <li>•8년 이상 10년 미만:1.12</li> <li>•10년 이상 : 1.16</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500만 이상: 1.53</li> <li>•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1.00</li> <li>•인구50만 이상 100만 미만: 0.87</li> <li>•인구10만 이상 50만 미만: 0.85</li> <li>•인구0만 미만: 0.40</li> </ul> |

1)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800kg이상)에 적용

2)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환경부고시)

3) 2006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유로-4) 만족하는 자동차에 적용

### 나. 기준 부과금액

- 20,250원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7,6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우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신규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 다. 부과금산정지수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시 매년 전년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함으로써 실질적인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로써, 매년 전년도에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고시(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환경부고시) 참조)

\* 가격변동지수 = 1 + 전년도 물가상승률\*\*

\*\*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도 11월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

※ 부과금산정지수는 해당년도 1.1~12.31의 부과기간에 적용

(예시) '20.7.1.'~'20.12.31.'의 부과기간에 대해 '21년 3월 정기분 부과할 때 '20년 부과금 산정지수 적용

※ 2.045('20년) → 2.035('21년) → 2.102('22년) → 2.247('23년) → 2.319('24년)

## 다. 오염유발계수

| 엔진<br>총배기량(cc) | 2,000이하 | 2,000초과 ~<br>2,500이하 | 2,500초과 ~<br>3,500이하 | 3,500초과 ~<br>6,500이하 | 6,500초과 ~<br>10,000이하 | 10,000초과 |
|----------------|---------|----------------------|----------------------|----------------------|-----------------------|----------|
| 오염유발계수         | 1.00    | 1.25                 | 1.75                 | 2.64                 | 4.50                  | 5.00     |

## 라. 차령계수

| 차령   | 3년 미만 | 3년 이상<br>4년 미만 | 4년 이상<br>6년 미만 | 6년 이상<br>8년 미만 | 8년 이상<br>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비고: 차령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되,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 0.50
2.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1.00

## 마. 지역계수

| 지역별  | 인구<br>500만 이상 | 인구<br>100만 이상<br>500만 미만 | 인구<br>50만 이상<br>100만 미만 | 인구<br>10만 이상<br>50만 미만 | 인구<br>10만 미만 |
|------|---------------|--------------------------|-------------------------|------------------------|--------------|
| 지역계수 | 1.53          | 1.00                     | 0.87                    | 0.85                   | 0.40         |

비고

1.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 구역별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3. 군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권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 부과기간 내 인구변동으로 인하여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일괄계산하여 부담금 산정(매월 말일기준으로 익월초에 인구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6 부과·징수·후속조치 절차

- 부과·징수업무는 각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위임(령 제28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군·구청장에 재위임(일부는 시·도에서 직접 부과·징수)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방법
  - 환경행정시스템\* 활용하여 부과징수
    - \* 시스템 운영상 문의사항은 환경행정시스템 내 Q&A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02-3279-0774, 02-2076-5911)으로 연락

Ⅱ 월별 부과·징수 등 주요업무 및 절차 예시 Ⅱ

| 월  | 주요업무                                                                                                                                                                                                                                                                                                                                                                                                                                                                                                                                                                                                                                                                           |
|----|--------------------------------------------------------------------------------------------------------------------------------------------------------------------------------------------------------------------------------------------------------------------------------------------------------------------------------------------------------------------------------------------------------------------------------------------------------------------------------------------------------------------------------------------------------------------------------------------------------------------------------------------------------------------------------|
|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계획 작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계획 및 고지서 인쇄업체 용역발주</li> <li>-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계획 작성</li> </ul> </li> <li>• <b>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연납) 일괄 부과처리(1.1~1.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담금 산정기간(전년도 7월1일 ~ 현년도 6월30일)</li> <li>* 일시납부(연납) 부과처리 대상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전체</li> </ul> </li> <li>• <b>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연납) 고지서 인쇄 및 발송(1.13~1.1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납부(연납) 고지서 발송 대상 : [전년도 1월 및 3월에 일시납부(연납)한 자] + [전년도 4월부터 현년도 1월 고지서 발송 전까지 일시납부(연납) 신청자]</li> </ul> </li> <li>• <b>1월 일시납부(연납) 위택스 신청 및 납부(1.16~1.31)</b></li> </ul> |
|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기분 정기분 및 3월 일시납부(연납) 신청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괄 부과처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분 부담금 산정기간(전년도 7월1일 ~ 12월31일)</li> <li>- 부과금액 3,000원 미만 미고지</li> <li>- 일시납부(연납)* 부담금 산정기간(전년도 7월1일 ~ 현년도 6월30일)</li> <li>* 일시납부(연납) 부과처리 대상 : 2월부터 3월 고지서 발송 전까지 일시납부(연납) 신청자</li> </ul> </li> </ul>                                                                                                                                                                                                                                                                                                                                   |
|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기분 발송 전 관외정보 요청(최종주소지 반영)</b></li> <li>• <b>1기분 정기분 및 3월 일시납부(연납)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발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에 따라 정기분 및 과년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li> <li>-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홍보</li> <li>- 연납신청자 처리</li> </ul> </li> <li>• <b>1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수납(3.16~3.31)</b></li> </ul>                                                                                                                                                                                                                                                                                                                                             |
|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기내 미수납자 가산금 부과(부과금의 3%)</li> </ul> </li> <li>• <b>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b></li> </ul>                                                                                                                                                                                                                                                                                                                                                                                                                                                                               |
|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체납분 고지서 발송 전 관외정보 요청(최종주소지 반영)</b></li> <li>• <b>1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 독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인쇄 및 발송(등기발송 권고)</li> <li>-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발송</li> </ul> </li> </ul>                                                                                                                                                                                                                                                                                                                                                                                                                        |
|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시설물, 계좌 등 재산압류(재산조회)</li> <li>※ 독촉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내에 압류(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 26조제3항)</li> </ul> </li> </ul>                                                                                                                                                                                                                                                                                                                                                                                                                                               |

| 월   | 주요업무                                                                                                                                                                                                                                                                                                                          |
|-----|-------------------------------------------------------------------------------------------------------------------------------------------------------------------------------------------------------------------------------------------------------------------------------------------------------------------------------|
|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기분 정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괄 부과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담금 산정기간(현년도 1월1일 ~ 6월30일)</li> <li>-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기초자료 구축용 파일 다운로드</li> <li>- 자동차정보 기초자료 구축(시군 정보화담당자 작업)</li> <li>- 상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료 생성(시·군·구 부담금 담당자)</li> </ul> </li> </ul> |
|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일괄 부과 처리(8월~9월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 부과 처리된 자료 고지처리</li> <li>- 부과금액 3,000원 미만 미고지</li> <li>- 정기분 보정작업 (면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등과 면제차량인 전 시·상품용차량, 유로5·유로6 차량 등 확인 및 미고지)</li> </ul> </li> </ul>                  |
|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분 발송 전 관외정보 요청(최종주소지 반영)</li> <li>• 2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에 따라 정기분 및 과년도 체납고지서 일괄발송</li> <li>-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홍보</li> </ul> </li> </ul>                                                                |
|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기내 미수납자 가산금 부과(부과금의 3%)</li> </ul> </li> <li>•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li> </ul>                                                                                                                |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분 고지서 발송 전 관외정보 요청(최종주소지 반영)</li> <li>• 2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 독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인쇄 및 발송(등기발송 권고)</li> <li>-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발송</li> </ul> </li> </ul>                                                         |
|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기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압류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시설물, 계좌 등 재산압류(재산조회)</li> </ul> </li> </ul> <p>※ 독촉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내에 압류(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3항)</p>                                                                            |

※ 수시로(1회/일 권고) 수납일괄처리 및 자동차 압류해제 조치(제5장 매뉴얼 1.9 및 1.13)

※ 결손처분, 부과취소, 수시부과, 환급 등은 연중 필요시 처리

※ 고지서에 아래 문구 인쇄 권고

- “해외근무, 해외유학, 질병, 부상, 입영, 교도소·구치소 수감 시 시·도(시·군·구)에 자동차번호판 보관(자가 영치)하면 그 기간동안 면제(자동차 관련 부서에 문의)”
- “도난, 사고, 수출, 폐차, 운행금지 명령 등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은 일부 부과취소(연락 필요)”
- “전년 하반기분과 올해 상반기분을 1월(1.16~1.31)에 일시납부하면 1년분의 10% 감면, 3월(3.16~3.31)에 일시납부하면 올해 상반기분의 10% 감면 - 1월 일시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go.kr)[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납부 가능, 일시납부 신청은 연중 접수중(전화 등)”
-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시행 지역에 한함)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제한되는 차량은 그 기간동안 면제”
- (1월 일시납부 고지서) “고지 금액은 전년 7.1. ~ 올해 6.30. 환경개선부담금에서 10% 감면된 금액이며 6.30. 이전에 매도, 말소등록, 부과제외·면제 대상이 된 경우 환급(연락 필요)”

※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징수결정액·수납액·결손액 정확하게 입력(징수율 산정 기준)

**[예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시 감면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에 따라 부과금액의 약 5%~10% 감면

- 1월 16일 ~ 1월 31일에 신청·납부하는 경우 :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3월 16일 ~ 3월 30일에 신청·납부하는 경우 :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즉, 1년분의 약 5% 감면)

※ 신고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방문(위택스는 신고 즉시 납부 가능)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 반기별 | 부과기간                      | 납기                  | 비고  |
|-----|---------------------------|---------------------|-----|
| 상반기 | 전년도 /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3월 16일 부터 3월 31일 까지 | 1기분 |
| 하반기 |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 2기분 |

- 부과대상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방법 : 부과대상 자동차의 처음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으로 그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적용제외 자동차 있음(저감장치 부착)

\*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토·일 공휴일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시 감면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에 따라 부과금액의 약 5%~10% 감면
- 1월 16일 ~ 1월 31일에 신청·납부하는 경우 :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3월 16일 ~ 3월 30일에 신청·납부하는 경우 : 해당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즉, 1년분의 약 5% 감면)
- ※ 신고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방문 (위택스는 신고 즉시 납부 가능)

## 7 강제징수

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

-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 3%\*의 가산금 부과\*\*

\* 2013.7.15. 이전에 부과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 부과하지 않음

※ 독촉 후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소멸시효 중단됨(최초 1회 독촉에 한함)

나. 독촉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법 제20조에 의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으며, 부과·징수권한이 시·도·특례시에 위임되었으므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름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채권에 관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체납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 2) 체납자가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 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이 시작된 경우

Ⅱ 압류 및 압류해제 관련 유의사항 Ⅱ

| 구분       | 내용                                                                                                                                                                                                                                                                                                                                                                                                                    | 비고                                         |
|----------|-----------------------------------------------------------------------------------------------------------------------------------------------------------------------------------------------------------------------------------------------------------------------------------------------------------------------------------------------------------------------------------------------------------------------|--------------------------------------------|
| 압류       | 리스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시설대여)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리스회사이므로 사용자의 체납에 대해 리스차량을 압류할 수 없음*</li> <li>*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40025판결</li> <li>• 사용자(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의 리스 보증금 압류 (다른 재산을 조회하여 다른 재산에 압류도 가능)</li> </ul>                                                                                                                                                                          | 리스회사 요청 시<br>압류 해제<br>(리스 보증금에<br>대체압류 권고) |
|          | 파산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산선고 후에는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 불가</li> </ul>                                                                                                                                                                                                                                                                                                                                  | 「채무자회생법」<br>제331조, 제349조                   |
|          | 지입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일명 지입차량)에는 대체압류 불가</li> <li>• 해당 차량에 대한 체납금은 해당 차량에 압류 가능</li> </ul>                                                                                                                                                                                                                                                                                   | 「화물자동차<br>운수사업법」 제58조                      |
|          | 회생절차<br>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 불가</li> <li>※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는 체납처분 가능</li> </ul>                                                                                                                                                                                                                                                                                   | 「채무자회생법」<br>제58조, 제600조                    |
|          | 신탁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재산 압류금지</li> <li>※ 신탁 전에 압류한 것은 유효하며 공매 등 강제집행 가능</li> <li>※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을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을 압류할 수 있음</li> </ul>                                                                                                                                                                                                                                   | 「신탁법」 제22조                                 |
| 압류<br>해제 | 말소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소된 차량에 대한 기존의 압류는 효력이 상실됨</li> <li>• 압류된 상태에서 말소등록된 차량에 대한 압류는 해제된 것이므로 체납자의 다른 재산(자동차 등)에 대체압류하여야 함</li> </ul>                                                                                                                                                                                                                                                        | 말소 후 소멸시효가<br>완성된 때에는<br>대체압류 불가           |
|          | 멸실인정<br>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압류한 목적물이 말소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멸실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인정되나 실익이 없음</li> <li>• 멸실인정일 전의 체납처분은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li> <li>* 54쪽 '13. 체납처분 중지' 참고</li> <li>• 압류해제 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체압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결손처분</li> </ul>                                                                                                                                                                         | 멸실인정일 이후에는<br>부과제외<br>(부과된 건은 부과취소)        |
|          | 파산선고<br>또는<br>회생절차<br>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을 근거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을 파산채권(회생채권)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파산채권(회생채권)에 포함된 것을 확인 후 압류해제</li> <li>※ 채권신고 후 파산절차가 끝날 때(회생계획 인가일 또는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소멸시효 중단됨(「채무자회생법」 제32조)</li> <li>• 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4조 또는 제593조에 따른 법원의 중지명령*을 위 요청자에게 요구하고 그 명령에 따라 압류 해제</li> <li>* 법원의 중지명령 시 소멸시효 중단됨</li> </ul> | 파산선고일 이후에는<br>부과제외(부과된 건은<br>부과취소)         |

| 구분       |               | 내용                                                                                                                                                                          | 비고                                                                               |
|----------|---------------|-----------------------------------------------------------------------------------------------------------------------------------------------------------------------------|----------------------------------------------------------------------------------|
| 압류<br>해제 | 청산종결<br>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된 법인의 체납금은 결손처분*<br/>* 50쪽 '11. 결손처분 가. 8)' 적용</li> <li>※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이 성립되지 않음</li> </ul>                                  | 청산종결일,<br>파산종결일, 청산종결<br>간주일, 해산일 이후는<br>부과제외<br>(부과된 건은 부과취소)<br>* '19.10.17 이후 |
|          | 파산종결<br>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산된 법인의 체납금은 결손처분*<br/>* 50쪽 '11. 결손처분 가. 8)' 적용</li> <li>※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이 성립되지 않음</li> </ul>                                  | 부과 건은<br>제2차납부의무를<br>확인한 후 결손처분<br>(44쪽 나. 참고)                                   |
|          | 청산종결<br>간주 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종결간주(「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br/>법인의 체납금은 결손처분*<br/>* 49쪽 '11. 결손처분 가. 3)' 적용</li> <li>※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이 성립되지 않음</li> </ul> |                                                                                  |
|          | 해산간주<br>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산간주(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해산)<br/>법인은 부과대상이며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대상 아님</li> </ul>                                                         |                                                                                  |
|          | 체납처분<br>중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처분의 목적물(압류한 자동차 등)의 추산가액이 체납<br/>처분비에 총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br/>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li> </ul>                                   | 다른 재산에 대체압류<br>하거나 무재산으로<br>결손처분                                                 |
|          | 결손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손처분한 건은 압류해제</li> </ul>                                                                                                           |                                                                                  |

※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압류해제 후 환경행정시스템에서도 압류기록 정리

## 8 과오납금 환급

### •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환급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1. 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3. 삭제
4. 분할납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

- 부담금의 과다 납입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처리절차를 준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3조)

- 일시납부(연납) 후 당해연도 6월30일 이전에 자동차 등록지(개인은 주민등록주소)의 이전, 소유권 양도,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으로 되었을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

\* 일시납부 후 위 사유가 발생하여 다시 산정하는 경우에도 10% 감면 적용(자동차 등록지 이전 후에 대해서도 10% 감면 적용)

- 환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시행일 | '17.3.15                                                                                                                                                        | '18.3.19  | '19.3.20  | '20.3.13  | '21.3.16  | '23.3.20  | '23.3.20  |
|-----|-----------------------------------------------------------------------------------------------------------------------------------------------------------------|-----------|-----------|-----------|-----------|-----------|-----------|
| 이자율 | 연 1천분의 16                                                                                                                                                       | 연 1천분의 18 | 연 1천분의 21 | 연 1천분의 18 | 연 1천분의 12 | 연 1천분의 29 | 연 1천분의 35 |
| 적용례 | “기산일 이후 기간별로 적용”<br>예) '21.5.31 지급결정 시 기산일이 '19.4.1인 경우 '19.4.1~'20.3.12 기간에는 연 1천분의 21, '20.3.13~'21.3.15 기간에는 연 1천분의 18, '21.3.16~ '21.5.31 기간에는 연 1천분의 12 적용 |           |           |           |           |           |           |

※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

## • 환급금 처리 순서

- 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
- ② 나머지는 환급
- ③ 충당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고지 시 충당
  - ※ ①, ③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후략)

1. (생략)
2. 체납액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략) 충당할 수 있다. (후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9 환경개선부담금 용도(법 제11조, 영 제18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용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 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

## 10 징수비용 교부(법 제9조제5항, 영 제8조의2)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권한의 위임에 따른 부과·징수 경비 보전 등을 위해 징수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40%를 시·도에 교부
-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교부

### 【징수비용 교부금 산정 방식】

- 징수비용 교부금 = 기본 징수비용 교부금 + 추가 징수비용 교부금
- 기본 징수비용 교부금 : 징수금액의 10%(전국 동일)
- 추가 징수비용 교부금 : 징수금액의 0~30%(시·군·구별 산정)
  - 추가징수비용\* = 시·군·구별 당해연도 수납액(현년도+과년도) × 초과징수율
  - \* 징수한 부담금의 30% 상한
  - 초과징수율 =  $\frac{\text{시·군·구별 당해연도 수납액(현년도+과년도)}}{\text{시·군·구별 당해연도 징수결정액(현년도+과년도)}} - 0.6(\text{기본징수율})$

※ 징수율은 '수납액/징수결정액'(D-Brain 자료로 산출)이며, 부과취소액이 차감되어 징수결정액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입력 시 환경행정시스템과 비교하여 부과 취소액 차감 등 정확한 입력 필요

### 【징수비용교부금 사용 용도(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

- 여비, 일용직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등
- 행정소송 비용
- 신규부과대상 발굴자, 체납액 징수자 및 징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 관할 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
- 기타 시·도의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

## 11 결손처분

### 가. 결손처분 요건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

※ 결손처분한 경우에 해당 압류는 해제(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압류해제 후 환경행정시스템에서도 압류 기록 정리)

#### 1)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소멸시효는 5년이며, 독촉(최초 1회의 독촉에 한함) 후 그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와 압류된 기간 및 파산절차 진행 중에는 시효가 중단됨

####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중단과 정지되는 경우】

-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되며, 고지한 납부기한,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등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함
- ※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 시효중단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1회 독촉고지분에 한함(국세청 재조세 46000-47, 2001. 2.19)

#### 2)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 체납한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공매에 의한 청산)이 끝난 경우

#### 3)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체납자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라 함은】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과세물건의 소재지에 현재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하여 현장주민으로부터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지역의 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이를 출장복명서에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 재산이 없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보유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전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 소유 확인을 한 바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한 바 예금도 없을 때를 의미함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2003. 8.13)

※ 청산종결간주 법인(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에 대해서는 체납한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결손처분

- 4)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어 54쪽 '13. 체납처분 중지'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다만, 체납한 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대체압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5)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격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 개시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다만, 체납한 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대체압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6) 자동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그 차주가 사망하고 해당 자동차는 폐차, 멸실되어 등록 말소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 편람에서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자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회생절차), 같은 법 제564조에 따라 체납한 개인이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파산절차) 및 같은 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제624조에 따라 체납한 개인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개인회생절차)
  - \* 법원 결정문 등 확인
  - ※ 환경개선부담금은 「채무자회생법」상의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조세나 과태료처럼 다른 채권에 우선하거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8)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이 해산되어 「민법」 제84조에 따라 청산종결된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호) 및 「채무자회생법」 제530조에 따라 파산 종결이 결정된 경우\*\*
  -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산종결 연월일 확인
  - \*\* 법원 결정문 등 확인
  - ※ 청산종결간주 법인(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에 대해서는 위 3) 체납한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결손처분
- 9)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회생채권(개인회생절차인 경우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고 인가된 회생계획(개인회생절차인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된 금액만큼 납부한 경우(즉,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잔여금액을 결손처분하고, 같은 법에 따른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파산채권으로 확정되고 채권자집회에서 조정된 금액만큼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 잔여금액을 결손처분

※ 환경개선부담금은 채무자회생법상의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조세나 과태료처럼 다른 채권에 우선하거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10) 체납한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 모든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함

11) 체납한 자가 사망하고 상속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다른 우선 채권의 합계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호)

\* 법원 결정문(또는 판결문), 변호사 작성 서류 등으로 확인

12)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제2차 납부 의무 적용

2019.10.17.이후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위 가.의 2), 3), 4), 5) 및 12)의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차 납부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차 납부의무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1)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2) 제2차 납부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 한 이후에 결손처분

\* 43쪽 12. 다. 2) 참고

## 다. 결손처분의 취소

위 가.의 2), 3), 4), 5) 및 12)에 따라 결손처분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위 가.의 1), 6), 7), 8), 9)의 경우에는 채권(징수권)이 소멸하므로 결손처분 후 재산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 12 납부의무자의 재산조회

### 가. 재산조회 방법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 결손처분 및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하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자의 금융재산조회가 필수적이나, 납부의무자의 금융재산조회를 위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와는 달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이 필요

- 1) 「민사집행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 요구를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 확보하고,
- 2) 위 1)의 신청에 의해 확보되지 않거나 확보된 재산이 체납처분비와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전산조회하여 확보

※ 다른 방법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재산조회 후 아래 다.의 조치 시행

### 나. 재산조회 예외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총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음(「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단서조항)

-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예시: 자동차)만을 확인하여 대체압류하거나, 대체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압류없이 체납액을 관리

## 다. 재산조회 후 조치사항

### 1) 재산조회 결과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 지방세징수법 제40조부터 제42조 및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에 따른 압류금지재산 및 압류 제한재산에 유의

### 2)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인 경우

가) 2019.10.16.이전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이거나, 제2차 납부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나) 2019.10.17.이후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 의무 대상인 경우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가산금 포함)하고, 제2차 납부의무자가 미납 시에는 최고(주된 납부의무자에 대한 독촉과 같음)의 절차를 거쳐 제2차 납부의무자의 재산 압류\*

\* 자동차, 부동산 등 또는 위 가.의 방법으로 재산조회한 재산을 압류하면 주된 납부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소멸시효가 중단됨

※ 주된 납부의무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제2차납부의무자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도 소멸됨.

## 13 체납처분 중지

가. 체납처분의 목적물(압류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

\* 체납처분비의 정확한 추산이 불가한 경우 50만원으로 산정(감정평가비·차량보관료 등 50만원이상 소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 폐차, 도난 등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경우(위 3. '부과제외 및 부과취소' 나.~아.) 추산가액이 0원이므로 체납처분 중지

나.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

※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됨

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납자의 주소·성명, 체납액,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이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1개월간 공고

라. 체납처분 중지로 압류를 해제한 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체압류

\* 체납자 소유의 다른 자동차(경유자동차가 아니어도 가능)를 우선적으로 압류

※ '19.10.17.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후에만 자동차 말소·이전 등록이 가능하므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 말소·이전 등록 시 징수가능

마.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한 후, 대체압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결손처분 후 환경개선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에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대체압류

###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이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주소,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의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14 체납처분 유예

- 체납처분의 유예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보하는 납부완화 조치를 말하며,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105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93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 참조)

## 붙임2 법인에 대한 부과, 부과제외, 결손처분 정리

| 구분        | 처분요약           | 내용                                                                                                                                                 | 비고                                            |
|-----------|----------------|----------------------------------------------------------------------------------------------------------------------------------------------------|-----------------------------------------------|
| 청산종결법인    | 결손             |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이 해산되어 「민법」 제84조에 따라 청산종결된 법인은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호에 따라 모든 체납금 결손처분[50쪽 '11. 결손처분 가. 8) 참고]                                      | 해산일부터 부과제외                                    |
| 파산종결법인    | 결손             | 「채무자회생법」 제530조에 따라 파산종결이 결정된 법인은 모든 체납금 결손처분[50쪽 '11. 결손처분 가. 8) 참고]                                                                               | 파산선고일부터 부과제외                                  |
| 파산선고      | 파산절차 참여 후 압류해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을 근거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을 파산채권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포함된 것을 확인 후 압류해제[43쪽 참고]                                                             | 소멸시효 중단<br>※ 파산선고는 파산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서, 파산한 것은 아님 |
|           | 압류불가           | 파산선고일부터 압류 등 체납처분 불가[43쪽 참고]                                                                                                                       |                                               |
|           | 부과제외           | 파산선고일부터 부과제외[27쪽 22) 참고]<br>※ 이미 부과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 이후에 대해 부과취소                                                                                        |                                               |
| 청산종결간주 법인 | 결손             | 청산종결간주 법인(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에 대해서는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모든 체납금 결손처분[49쪽 '11. 결손처분 가. 3) 참고]                                             | 해산간주 법인은 결손 불가                                |
| 회생절차종결    | 잔여 체납액 결손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회생채권(개인회생절차인 경우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된 금액만큼 납부한 경우(즉,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잔여금액을 결손처분[50쪽 '11. 결손처분 가. 7) 참고] |                                               |
| 회생절차 개시   | 회생절차 참여 후 압류해제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을 근거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을 회생채권에 포함하라고 요구 하고 포함된 것을 확인 후 압류해제[43쪽 참고]                                                          | 소멸시효 중단                                       |
|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법인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임                                                                                                       |                                               |
|           | 압류불가           | 회생절차 개시 후 압류 등 체납처분 불가[43쪽 참고]<br>※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 또는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최대 2년)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금의 소멸시효 중단(「채무자회생법」 제32조 및 제58조)             |                                               |
| 해산 법인     | 부과제외           | 해산일부터 부과제외[25쪽 15) 참고]<br>※ 이미 부과한 경우에는 해산일 이후에 대해 부과취소                                                                                            |                                               |
| 해산간주 법인   | 부과             | 해산간주(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해산) 법인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br>※ 부과제외(부과취소 포함)나 결손처분 대상이 아님                                                                    |                                               |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도 동일하게 적용

### 붙임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24.10.31. 현재)

#### □ 노후차 운행제한제도 현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4종류의 운행제한\* 제도 시행중
  - \* 계절관리기간, 비상저감조치, 대기관리권역, 녹색교통진흥지역

#### Ⅵ 시행중인 노후차 운행제한제도 현황 Ⅵ

| 제도   | 계절관리제                                                       | 비상저감조치                | 녹색교통진흥지역         | 대기관리권역 LEZ                      |
|------|-------------------------------------------------------------|-----------------------|------------------|---------------------------------|
| 근거   | 미세먼지법                                                       | 미세먼지법                 | 지속가능교통물류법        | 대기관리권역법                         |
| 적용시기 | 12~3월<br>(06시~21시)                                          | 저감조치 발령시<br>(06시~21시) | 연 중<br>(06시~21시) | 연 중<br>(24시간)                   |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                       |                  |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br>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차량 |
| 과태료  | 1일 10만원                                                     | 1일 10만원               | 1일 10만원          | 월 1회 20만원<br>(1차 경고, 최대 200만원)  |
| 시행시기 | ’20.12~(수도권),<br>’22.12~(부산·대구)<br>’23.12~(광주·<br>대전·울산·세종) | ’19. 2~               | ’19.12.1~        | ’12~(서울), ’19~(인천·경기)           |

#### □ 배출가스 등급 분류 및 안내

- 친환경차 구매 유도 및 운행제한에 활용하도록 유종, 연식,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50호)」 → 전기차·수소차 1등급, 휘발유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

#### • 대국민 배출가스 등급 안내

-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 배출가스 등급 누리집, KT 114, 자동차 검사안내서 및 결과서, 자동차용 네비게이션, 정부24,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비상저감조치) 전국 17개 시·도 운행제한 조례 마련·시행(’19.2~)
- (계절관리기간) 수도권 최초 시행(’20.12~) 후 6대 특·광역시로 단계별 확대 추진\*
  - \* 부산·대구(’22.12~), 광주·대전·울산·세종(’23.12~)

## 참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경과

- 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
- 전 시·도 조례 제정 완료('19.2.15) 및 단속 시행('20.7.1부터 전국 단속)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행제한 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중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및 단속\*\*
  - \* 토·공휴일은 차량운행 제한 미시행
  - \*\* 과태료 10만원
-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보훈보상대상자(1~7급)·518민주화부상자(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경찰·소방·경호·군용 등 국가 특수공용 목적 자동차, 외국공관·외교관·주한외국군 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 자동차 운행 제한의 대상지역, 대상차량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함

## 참고2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기본방향

- 5등급차량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

### □ 추진경과

- 수도권 :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월)부터 운행제한 시행
- 부산·대구 : 제4차 계절관리제('22.12~'23.3월) 운행제한 시행
- 광주·대전·울산·세종 : 제5차 계절관리제('23.12~'24.3월) 운행제한 시행

###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내용

- (대상지역)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단속기간) 매년 12.1.부터 이듬해 3.31.
- (단속대상) 5등급 차량

#### Ⅱ 제6차 계절관리제 기준 지역별 운행제한 제외·유예 대상 Ⅱ

| 지역             | 수도권<br>(서울·경기·인천, '20.12월~)                                                                         | 부산·대구<br>( '22.12월~)                                                         | 광주·대전·울산·세종<br>( '23.12월~)                              |
|----------------|-----------------------------------------------------------------------------------------------------|------------------------------------------------------------------------------|---------------------------------------------------------|
| 제외<br>대상<br>차량 | · ① 저공해 조치 차량<br>· ②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9호에 해당되는 차량<br>·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 ③ 영업용, ④ 저감장치 부착 불가, 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⑥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前 저공해 조치 신청 | · ③ 영업용, ④ 저감장치 부착 불가 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⑥ 저공해 조치 신청 |
| 유예<br>대상<br>차량 | · 해당 없음                                                                                             | · ⑦ 적발 後 저공해 신청 차량<br>⇒ '25.9.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 · ⑦ 적발 後 저공해 신청 차량<br>⇒ '25.9.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시 과태료 미부과  |

- (단속시간) 오전 6시 ~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과태료) 1일 10만원(최초 적발 지자체 과태료 부과)

### 참고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관련 규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후략)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사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략) 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Ⅱ 시·도별 관련 조례('24.10.28. 현재) Ⅱ

| 시·도 | 조례명                             | 비고 |
|-----|---------------------------------|----|
| 서울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인천  |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    |
| 경기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부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대구  |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광주  |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대전  |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울산  |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    |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경남  |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경북  |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전남  |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충남  |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충북  |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참고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기준

### □ 추진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제2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50)

### □ 개 요

- (적용대상)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 포함) 판매된 자동차
- (등급) 유종·연식, 미세먼지 등 배출량 차이에 따른 5개 등급
- (등급기준) 배출가스 인증 당시에 적용된 기준
  - ※ 차량의 연식별 배출가스기준 차이가 곧바로 등급으로 연결

### □ 분류 기준 및 유종별 등급

-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 등의 기준으로 분류
  - ※ 전기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부여,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 최신 년식 차라도 3등급

#### Ⅰ 등급분류 기준(요약) Ⅰ

| 등급  | 차종                   |                                               |                                                            |
|-----|----------------------|-----------------------------------------------|------------------------------------------------------------|
|     | 전기 및 수소차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
| 1등급 | 모든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 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                                                            |
| 3등급 |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 2009.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br>[유로5이상]     |
| 4등급 |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br>[유로4]            |
| 5등급 |                      | 1987년 이전 기준적용(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하)        | 2002.7.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하)<br>[유로3이하] |

## 붙임4 부과제외, 감면(면제) 및 추가적인 감면 사항별 연혁

### • 휴지신고 자동차 부과제외 연혁

#### - ('02.9.1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허가를 받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 ('99.11.27.~'02.9.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신고를 하고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한 화물자동차는 그 휴지기간 중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

###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연혁

#### - ('02.9.11.~) 신설

### • 외국정부(공관원 포함)·국제기구(직원 포함)·정부·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 감면(면제) 연혁

#### - ('10.11.26.~)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면제하지 않는 경우를 '동일한 부담금'에서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으로 확대

#### - ('95.1.1.~'10.11.25)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외국정부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대한민국정부 공관원 소유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부문의 면제·경감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면제대상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 삭제

#### - ('93.7.1.~'94.12.31.)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그 공관원을 포함) 및 국제기구

(그 직원을 포함)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다만, 외국정부(그 공관원을 포함)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로서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그 공관원을 포함)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자동차매매업자 전시차량 감면(면제) 연혁

- ('02.9.11.~) 전시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97.8.19.~'02.9.1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시 후 최초로 종료하는 기분의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 ('99.2.8.~'97.8.18.) 전시용 자동차(법 제9조제3항제5호)

• 저공해자동차 감면(면제) 연혁

- ('10.8.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모든 저공해자동차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4조
- ('06.9.7.~'10.8.1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같은 조 제3호의 제3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신규 등록일로부터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4조('09.7.2.~'10.8.16.)  
※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6조제2항('06.9.7.~'09.7.2.)
- ('05.5.9.~'06.9.6.)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다만, 규칙 별표 1 1)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승용 2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  
※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6조제2항('05.5.9.~'06.9.6.)
- ('01.2.6.~'03.12.3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0 나목 4)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인증받은 자동차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1 라목의 배출가스보증기간(승용4 화물3은 2년, 기타는 5년) 이내의 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환경부고시) 제2호 및 부칙('01.2.6.~'03.12.31.)

• 유로6, 유로5, 유로4 경유차 등 감면(면제) 연혁

(유로6) 2014.1.1.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따라 제작된 경유자동차  
 (유로5) 2009.9.1.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따라 제작된 경유자동차  
 \* 차종별 적용유예로 '12년2월까지 유로4도 제작, '12년3월부터는 유로5만 제작  
 (유로4) 2006.1.1.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따라 제작된 경유자동차

- ('15.8.26.~) 유로5, 유로6 경유차 면제
- ('10년 상반기분 부과 시~) 유로5 경유차 면제, '09.5.1.~'09.12.31.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한 유로4 경유차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4년간 면제
- ('09년 상반기분 부과 시~'10.6.30) '09.5.1.~'09.12.31.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경유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 유로4 경유차: 자동차등록일로부터 4년간
  - 유로5 경유차: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간
- ('08.1.1~'15.1.31.) 유로4 경유차는 제작 후 3년 동안 50% 감면
  - \*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차는 시행령 제15조 별표7 제4호에 따라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우 차령계수를 0.5로 한다(그 밖의 경유자동차는 1.0) (령 별표7 제4호)
- ('93.10.4~'95.12.31.) '96.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인증받은 자동차는 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이 되기 전('95.12.31.)까지 면제
  -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환경처고시)('93.10.4.~'97.5.30.)

• 배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감면(면제) 연혁

- ※ 요소수 주입하여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의 부착여부는 감면대상 판단 기준이 아님, SCR이 부착되어 있어도 유로4 경유차가 있음
- ('15.8.26.~) 배출가스저감장치(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제외) 부착자동차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16만km(1종), 8만km(2종) 또는 3년, 둘 중 하나라도 초과 시 보증기간 만료로 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 제3종 저감장치는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25%이상 50%미만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님 (중소형 경유차에 부착되는 DOC)
  - ※ 주행거리 확인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3년동안 면제
  -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5조

- ('05.12.6.~'15.8.25.) 배출가스저감장치(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제외) 부착자동차는 저감장치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5조('09.7.2.~'15.8.25.)
  -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2조('05.12.6.~'09.7.1.)
- ('05.2.3.~'05.12.5.) 제1종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2조('05.2.3.~'05.12.5.)
- ('01.2.6.~'05.2.2.)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고 매연농도가 8%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마다 매연측정결과 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환경부고시) 제1호('01.2.6.~'05.2.2.)
  - ※ 매연여과장치능기준및시험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7조('14.11.28. 폐지)
- ('97.5.31.~'01.2.5.)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후 매연측정결과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로서 매연농도가 8%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면제
  -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환경부고시)('97.5.31.~'01.2.5.)
- ('93.10.4.~'97.5.31.)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정비·점검 확인서를 제시한 자동차 면제
  -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환경부고시)('93.10.4.~'97.5.30.)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감면(면제) 연혁**
  - ('05.2.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는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5조('09.7.2.~)
    -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2조('05.2.3.~'09.7.1.)
  - (~'21.12)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지원사업 종료
    - ※ 사업 종료 이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유지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감면(면제) 연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14.1.14.~) 면제
      - ※ ‘14년 3월 부과분부터 면제(환경기술경제과-481, 2014.2.1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14.1.14.~) 면제
      - ※ ‘14년 3월 부과분부터 면제한 것으로 확인됨.(환경기술경제과-481, 2014.2.1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14.1.14.~) 면제
      - ※ ‘14년 3월 부과분부터 면제한 것으로 확인됨.(환경기술경제과-481, 2014.2.13.)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 (‘19.7.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면제
      - \* 개정 전 1급~3급 장애인과 같은 의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용어 폐지
    - (‘18.7.1.~’19.6.30.) 1급~3급 장애인 면제
    - (‘14.1.14.~’18.6.30.) 중증장애인\* 면제
      - \* 1급 및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 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질장애인

Ⅱ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상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 조정표 Ⅱ

| 구 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 2급  | 1급 | 1급 | 1급 | 1급 | 2급 | 2급 |
| 3급  | 1급 | 1급 | 2급 | 2급 | 3급 | 3급 |
| 4급  | 1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 5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4급 |
| 6급  | 1급 | 2급 | 3급 | 4급 | 4급 | 5급 |

※ ‘14년 3월 부과분부터 면제한 것으로 확인됨.(환경기술경제과-481, 2014.2.13.)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18.7.1.~) 면제

• 영세 자영업자 소유 일반형 화물자동차 감면 연혁

- (‘09.7.1~) 배기량 3,000cc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800kg이상인 자동차는 기준부과금액 15,190원 적용(다른 자동차는 20,250원)  
다만, 다음 1~4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신규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 (‘09.1.1.~’09.6.30.) 배기량 3,000cc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800kg 이상인 자동차는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의 기준부과금액 10,125원적용 (다른 자동차는 20,250원)  
다만, 다음 1~4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앞의 1~4와 동일)
- (‘08.1.1.~’08.12.31.) 배기량 3,000cc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800kg 이상인 자동차는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의 기준부과금액 10,125원적용 (다른 자동차는 20,250원)  
다만, 다음 1~4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앞의 1~4와 동일)
- (‘00.1.1~’07.12.31.) 기준부과금액 20,250원 적용
- (‘98.1.1~’99.12.31.) 기준부과금액 20,250원 적용.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12,150원
  - \* ‘98.6.24.부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
- (‘97.1.1~’97.12.31.) 기준부과금액 20,250원 적용.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8,100원

- ('96.7.1~'96.12.31.) 기준부과금액 12,150원 적용.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8,100원
- ('95.1.1~'96.6.30.) 기준부과금액 12,150원 적용
- ('92.7.21~'94.12.31) 대당기본부과금액 반기별 8,100원
- ('24.7.1~) 기준부과금액 7,600원 적용
- **일시납부에 의한 감면 연혁**
  - ('19.4.1~) 일시납부 신고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 규모 구분
    - 1.16~1.31 중 일시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매년 3.16~3.31 중 일시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14.3.1~'19.3.31.) 3.16~3.31 중 일시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
- **사립학교 소유 자동차 감면(면제) 연혁**
  - ('95.1.1.~) 면제 대상 아님
  - ('93.7.1.~'94.12.31.)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학교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 **소방·청소·오물제거·환자수송·헌혈·우편 및 전파관리 용도 특수 자동차 감면(면제) 연혁**
  - ('95.1.1.~) 면제 대상 아님
  - ('93.7.1.~'94.12.31.) 소방·청소·오물제거·환자수송·헌혈·우편 및 전파관리의 용도에 제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 붙임5 계산식 구성항목별 연혁

### • 기준 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 연혁

#### - ('09.7.1~) 기준부과금액 20,250원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2008년 1월 1일부터 15,19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신규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 - ('08.1.1.~'09.6.30.) 기준부과금액 20,250원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2008년 하반기분 및 2009년 상반기분의 기준부과금액 10,125원 적용.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09.7.1이후의 1~4와 동일)

#### - ('00.1.1~'07.12.31.) 기준부과금액 20,250원

#### - ('98.1.1~'99.12.31.) 기준부과금액 20,250원.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12,150원

\* '98.6.24.부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

#### - ('97.1.1~'97.12.31.) 기준부과금액 20,250원.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8,100원

#### - ('96.7.1~'96.12.31.) 기준부과금액 12,150원.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부과금액은 8,100원

#### - ('95.1.1~'96.6.30.) 기준부과금액 12,150원

#### - ('92.7.21~'94.12.31) 대당기본부과금액 반기별 8,100원

• 산정지수 연혁

| 해당연도  | 산정지수  | 해당연도  | 산정지수  |
|-------|-------|-------|-------|
| 2024년 | 2.319 | 2007년 | 1.679 |
| 2023년 | 2.247 | 2006년 | 1.643 |
| 2022년 | 2.102 | 2005년 | 1.599 |
| 2021년 | 2.035 | 2004년 | 1.531 |
| 2020년 | 2.045 | 2003년 | 1.490 |
| 2019년 | 2.037 | 2002년 | 1.466 |
| 2018년 | 2.001 | 2001년 | 1.422 |
| 2017년 | 1.950 | 2000년 | 1.396 |
| 2016년 | 1.968 | 1999년 | 1.393 |
| 2015년 | 1.996 | 1998년 | 1.269 |
| 2014년 | 1.987 | 1997년 | 1.218 |
| 2013년 | 1.992 | 1996년 | 1.172 |
| 2012년 | 1.946 | 1995년 | 1.121 |
| 2011년 | 1.854 | 1994년 | 1.073 |
| 2010년 | 1.800 | 1993년 | 1.042 |
| 2009년 | 1.769 | 1992년 | 1.000 |
| 2008년 | 1.715 |       |       |

• 부과계수 연혁

※ 오염유발계수는 제정 이후 변동 없으며, 지역계수와 차령계수가 변동되었음

- (‘15.7.1~)

【지역계수】

| 지역별  | 인구<br>10만 미만 | 인구<br>10만 이상<br>50만 미만 | 인구<br>50만 이상<br>100만 미만 | 인구<br>100만 이상<br>500만 미만 | 인구<br>500만 이상 |
|------|--------------|------------------------|-------------------------|--------------------------|---------------|
| 지역계수 | 0.40         | 0.85                   | 0.87                    | 1.00                     | 1.53          |

비고

1.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 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구역별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3. 군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차령계수】

| 차령   | 3년 미만 | 3년 이상<br>4년 미만 | 4년 이상<br>6년 미만 | 6년 이상<br>8년 미만 | 8년 이상<br>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비고: 차령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되,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우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우 사용 자동차: 0.50
2. 그 밖의 경우 사용 자동차: 1.00

#### - (10년 하반기 부과분~)

#### 【지역계수】

| 지역별  | 인구<br>500만 이상 | 인구<br>100만 이상<br>500만 미만 | 인구<br>50만 이상<br>100만 미만 | 인구<br>10만 이상<br>50만 미만 | 인구<br>10만 미만 |
|------|---------------|--------------------------|-------------------------|------------------------|--------------|
| 지역계수 | 1.53          | 1.00                     | 0.87                    | 0.85                   | 0.40         |

비고

1.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4. 군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6.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구역별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차량계수】

| 차령   | 3년 미만 | 3년 이상<br>4년 미만 | 4년 이상<br>6년 미만 | 6년 이상<br>8년 미만 | 8년 이상<br>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비고: 차량계수를 적용할 때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되,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용 자동차의 차량계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 0.50
2.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1.00

#### - (‘08.1.1.~)

#### 【지역계수】

| 지역별  | 인구<br>10만 미만 | 인구<br>10만 이상<br>50만 미만 | 인구<br>50만 이상<br>100만 미만 | 인구<br>100만 이상<br>500만 미만 | 인구<br>500만 이상 |
|------|--------------|------------------------|-------------------------|--------------------------|---------------|
| 지역계수 | 0.40         | 0.85                   | 0.87                    | 1.00                     | 1.53          |

비고

- 1)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4) 군지역(「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으로 구분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6)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차령계수】

| 차령   | 3년 미만 | 3년 이상<br>4년 미만 | 4년 이상<br>6년 미만 | 6년 이상<br>8년 미만 | 8년 이상<br>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비고: 차령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되,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우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우 사용 자동차: 0.50
2. 그 밖의 경우 사용 자동차: 1.00

- ('07.2.1.~'07.12.31.)

【자동차 지역계수】

| 지역별  |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소재지 | 시지역  | 기타지역 |
|------|------|------|-------|------|------|
| 지역계수 | 1.53 | 1.00 | 0.97  | 0.79 | 0.40 |

비고

1. 해당지역계수가 2 이상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광역시, 도청소재지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당해 시의 시청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지역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특별시·광역시 도청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시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 동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동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시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차령계수】

| 차령   | 4년 미만 | 4년 이상<br>6년 미만 | 6년 이상<br>8년 미만 | 8년 이상 |
|------|-------|----------------|----------------|-------|
| 차령계수 | 1.00  | 1.04           | 1.08           | 1.12  |

- ('99.11.27~'07.1.31)

【자동차 지역계수】

| 지역별  |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소재지 | 시지역  | 기타지역 |
|------|------|------|-------|------|------|
| 지역계수 | 1.53 | 1.00 | 0.97  | 0.79 | 0.40 |

비고: 1.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에 등록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시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차령계수】

| 차령   | 1년 미만 | 1년 이상<br>2년 미만 | 2년 이상<br>3년 미만 | 3년 이상<br>4년 미만 | 4년 이상<br>5년 미만 | 5년 이상<br>6년 미만 | 6년 이상<br>7년 미만 | 7년 이상<br>8년 미만 | 8년 이상 |
|------|-------|----------------|----------------|----------------|----------------|----------------|----------------|----------------|-------|
| 차령계수 | 1.00  | 1.02           | 1.04           | 1.06           | 1.08           | 1.10           | 1.12           | 1.14           | 1.16  |

- ('95.1.1~'99.11.26)

【자동차 지역계수】

| 지역별  |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소재지 | 시지역  | 기타지역 |
|------|------|------|-------|------|------|
| 지역계수 | 1.53 | 1.00 | 0.97  | 0.79 | 0.40 |

비고

1.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2.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차령계수】

| 차령   | 1년 미만 | 1년 이상<br>2년 미만 | 2년 이상<br>3년 미만 | 3년 이상<br>4년 미만 | 4년 이상<br>5년 미만 | 5년 이상<br>6년 미만 | 6년 이상<br>7년 미만 | 7년 이상<br>8년 미만 | 8년 이상 |
|------|-------|----------------|----------------|----------------|----------------|----------------|----------------|----------------|-------|
| 차령계수 | 1.00  | 1.02           | 1.04           | 1.06           | 1.08           | 1.10           | 1.12           | 1.14           | 1.16  |

- ('93.7.1~'94.12.31)

【자동차 지역계수】

| 지역별  |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소재지 | 시지역  | 기타지역 |
|------|------|------|-------|------|------|
| 지역계수 | 1.53 | 1.00 | 0.97  | 0.79 | 0.40 |

비고: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높은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차령계수】

| 차령   | 1년 미만 | 1년 이상<br>2년 미만 | 2년 이상<br>3년 미만 | 3년 이상<br>4년 미만 | 4년 이상<br>5년 미만 | 5년 이상<br>6년 미만 | 6년 이상<br>7년 미만 | 7년 이상<br>8년 미만 | 8년 이상 |
|------|-------|----------------|----------------|----------------|----------------|----------------|----------------|----------------|-------|
| 차령계수 | 1.00  | 1.02           | 1.04           | 1.06           | 1.08           | 1.10           | 1.12           | 1.14           | 1.16  |



# 제3장

##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지침 모음

1. 농·축협 등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관련
2. 감면대상자와 비감면대상자가 자동차를 공동소유 하는 경우  
감면범위
3.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



## 3장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처리지침 모음

### 1 농·축협 등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관련

□ 관련규정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 부과면제 대상

-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

□ 부과 대상

- 지역 농·축협이 아닌 경제지주회사 자회사인 농협유통 및 하나로유통 등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이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임

#### Ⅱ 농협법 제8조에 따른 하나로마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여부 Ⅱ

| 대분류         | 중분류             | 부과여부 | 부과기준         |
|-------------|-----------------|------|--------------|
| 지역 농·축협     | 하나로마트           | 면제   | 기존 면제대상      |
| 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 부과   | 기존 부과대상      |
|             | 대전유통 하나로마트      | 부과   |              |
|             | 충북유통 하나로마트      | 부과   |              |
|             | 부산·경남유통 하나로마트   | 부과   |              |
|             | 하나로유통 하나로마트(클럽) | 부과   | 2015년부터 부과대상 |

□ 관련문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금융정책과-2825

(‘15.9.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관련 검토의견)

※ 시설물분 및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면제

## Ⅱ 기타 개별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사항

- 「산림조합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을 면제
- 「중소기업은행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부과금을 면제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 중앙회, 수협은행**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을 면제
- 「협동조합기본법」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을 면제

## 2 감면대상자와 비감면대상자가 자동차를 공동소유 하는 경우 감면범위

### □ 관련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감면대상자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 □ 검토사항

- 감면대상자와 비대상자가 부과대상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선부담금을 감면대상자의 지분에 한하여 면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전액 면제하여야 하는지 ?

### □ 답변사항(○○법률사무소, 2015. 10. 16)

- 법상 부담금 면제대상자와 비면제 대상자가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개선부담금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소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현행 개선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 결론

-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는 부담금 면제대상자와 비면제 대상자가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는 소유지분 비율에 대해 부담금의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개정이 없는 한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전액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 3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19.10.17. 시행)

####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19.10.17. 시행)에 따른 운영기준을 마련·통보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I 추진 경과(배경)

- (법률개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개정 2019.4.16., 시행 2019.10.17.]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1조의2)

#### II 법률개정 내용

| 개정 전(19.10.16. 이전) | 개정 후(19.10.17. 시행)                                                                                                                                                                                                                  |
|--------------------|-------------------------------------------------------------------------------------------------------------------------------------------------------------------------------------------------------------------------------------|
| 〈 신 설 〉            | <b>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b>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 (자동차 말소등록) 폐차, 자동차 반품, 여객자동차 차령초과, 여객자동차 면허·등록 실효,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멸실, 수출, 차령초과, 교육·연구 목적 등

### III 적용 요령

#### ① 차령초과로 인한 차량 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 (시행유예) 자동차 차령초과로 인한 말소등록 시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등 제출 시행을 유예**(별도의 기준 변경 시까지)
- (유예사유) 납부 증명서류 등의 제출로 인한 체납액 징수효과보다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및 차량 무단방치 방지 등의 제고를 위한 조치

#### ② 이전등록 및 폐차·수출 등 차량 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제1호~제6호, 제8호)

- **이전등록 및 차령초과 말소등록 이외의 폐차, 수출, 화재 등 차량은 말소등록 전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등 반드시 확인**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상 ‘연계정보’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해당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여부 확인**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자에게 별도의 서류 제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영수증 또는 각 지자체별로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한 ‘환경개선부담금총괄현황’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건에 대한 완납여부를 확인**

#### ※ 대체압류 건도 완납여부 확인

- 경유자동차 및 다른 종류 자동차의 이전등록·말소등록 시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건의 완납여부 확인(대체압류 포함)

#### ※ 직권 말소등록의 경우

-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하는 경우에는 **납부 증명서류 등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등 **완납여부 확인 절차 불필요**

#### IV 적용시기 및 행정사항

- (적용시기) '19.10.17. 이후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 분부터 적용
  -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중이며, 시스템 개선 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압류(대체압류 포함) 건에 대한 완납여부 확인
- (적용철저) 자치단체에서는 차량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운영기준 적용 철저
  -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담당부서와 자동차등록사업소(차량 등록부서) 적극 협업하여 민원방지
- (홍보강화) 민원발생 및 납부자의 혼선이 없도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시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관련 홍보 철저(안내문, 고지서 제작 등)

## 붙임6 관계법령

### □ 이전등록 관련 규정(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 □ 말소등록 관련 규정(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効)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⑤ 생략

####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②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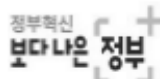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붙임7 운영기준 적용 안내



환경부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 적용  
안내

1. 환경산업경제과-4655호(2019.10.17.)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 관련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 2019.10.16.이전에 체납 및 압류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
  - 나.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압류(대체압류 포함) 건만 완납여부 확인
  - 다. 시스템 개선 후에는 압류(대체압류 포함) 및 체납 건 모두 완납여부 확인. 끝.

###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행보험과장), 서울특별시(환경정책과장), 부산광역시(환경정책과장), 대구광역시(환경정책과장), 광주광역시(환경정책과장), 대전광역시(기후환경정책과장), 울산광역시(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환경정책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정부지 역본부장(기후생태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정책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         |                                                                    |       |                         |                   |          |
|---------|--------------------------------------------------------------------|-------|-------------------------|-------------------|----------|
| 행정주사    | 백은상                                                                | 환경사무관 | 내일 2019. 10. 20.<br>정수명 | 과장                | 전결       |
| 협조자     |                                                                    |       |                         |                   |          |
| 시행      | 환경산업경제과-4731                                                       |       | 접수                      |                   |          |
| 우 30103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정부세<br>종청사 6동 환경부 / http://me.go.kr |       |                         |                   |          |
| 전화번호    | 044-201-6714                                                       | 팩스번호  | 044-201-6700            | / paekes@korea.kr | / 대국민 공개 |

# 제4장

## 질의·회신사례 모음

1. 제도 운영
2. 면제 및 감면
3. 부과 및 납부
4. 압류 등 강제징수와 압류해제
5. 과오납 환급
6. 결손처분



## 4장 질의·회신사례 모음

### 1 제도 운영

**Q A**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지 ?

-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비용과 동급의 휘발유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비용의 차액만큼을 경유자동차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금의 한 종류입니다.
- ㉡ 이에 따라, 배출가스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동급의 휘발유자동차와 유사한 유로-5, 유로-6 경유자동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Q A** 디젤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유류세에 포함시켜 많이 운행하는 차량에게 많이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닌지 ?

- ㉠ 환경개선부담금을 유류(경유)값에 포함시킬 경우 차량의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가 될 것이니 공평하다는 의견에는 일부 공감하나, 이러한 경우 현재 환경오염이 적어 면제(유로5, 유로6 경유차 및 저공해자동차) 대상인 경유자동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휘발유, 등유, 경유 등에 부과하고 있는 유류세에 교통환경에너지세가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닌지 ?**

-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제도로
-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휘발유, 등유, 경유 등에 부과하고 있는 유류세에 교통환경에너지세가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닌지 ?**

-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제도로
-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행거리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산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주행거리 확인은 자동차 검사소 등과 연계하여 확인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방식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환경오염 원인자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1월1일~6월30일, 7월1일~12월31일)에 맞추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제도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차량의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있으나 차종 및 차령에 따라 검사주기(6개월~2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부과기간(1월1일~6월30일, 7월1일~12월31일)에 대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에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

-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4, 유로3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 있으며, 유로4, 유로3 경유 자동차는 제작 당시 적용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 이와는 달리,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 경유차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서는 매연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서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매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연에 대해서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유로-4 경유자동차의 경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매연 25%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매연 15% 이하)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으로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세외수입에 포함되는지 ?

- ㉠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 세외수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법정부담금의 일종이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준 부과금액에 부과금 산정지수, 오염계수, 차령계수, 지역 계수를 곱하여 산정되는데, 그 중 차령계수는 10년 이상은 2.3배, 서울일 경우 인구 10만 미만 지역 대비 3.5배가 부과되어 동일한 차령임에도 거의 6배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불합리함 ?**

○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①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연소효율 저하와 ② 배기량이 클 경우 단위 연료소모량이 증가하는 점, ③지역별 인구, 차량 밀집정도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 정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 기준부과금액(통상 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배기량기준)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차량관리 상태에 따라 오염발생량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차량연수가 오래 될수록 엔진효율 하락 등에 의해 배출가스오염도와 오염배출량이 증가하므로 오염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구밀도가 높고 차량 운행이 많을수록 많은 양의 배출가스를 배출하게 되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정도가 지역적으로 집중될수록 인체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대기개선 목표 오염물질인 NO<sub>x</sub>나 PM<sub>10</sub>의 수준을 반영하고 이러한 오염도와 인구수의 상관관계를 국민생활에 미치는 피해정도를 반영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 것입니다.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이 해마다 올라가는 이유는?**

○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자동차 연식 및 부과금 산정지수의 변동에 따라 매년 일정 부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연식에 따라 3년 미만 차령계수는 0.5이고, 10년 미만까지 2년에 0.04씩 올라가며,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1.16의 차령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부과금 산정지수를 고시한 후 적용하고 있어 매년 부담금이 변동됩니다.(일반적인 경우 증가되나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감소 되는 경우도 있었음)

※ ('18년) 2.001 → ('19년) 2.037 → ('20년) 2.045 → ('21년) 2.035

## 2 면제 및 감면

**Q A** 면제 차량이었는데 차대번호가 변경된 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으니 취소해 달라는 경우 ?

- ㉠ 환경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개발원(환경 CS 사업단)과 통화하고 증빙 자료(필요시 공문 발송)를 제출하여 시스템에 차대번호 변경을 적용한 후 부과 취소
-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연동하여 차대번호에 따라 부과하므로 차대번호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차량으로 인식하여 부과하게 되어, 환경행정시스템 자료를 정정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 또 부과될 수 있음

**Q A**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0.4.3.부터 저공해자동차에서 경유자동차가 제외되었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중단된다고 하는 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 ?

-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에 저공해자동차로 인증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는 계속 적용됩니다.

**Q A** 민원인이 저공해자동차로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저공해자동차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

- ㉠ 차량 앞 보닛을 열었을 때 엔진실 주변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인증번호(000-00-00-00 형식)의 뒤에서 세 번째 숫자가 1~3이면 저공해자동차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입니다.(저공해자동차 제도 시행 초기 모델은 인증번호 구분이 잘못된 경우도 있다고 함)
-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자동차(제작 당시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제작한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부과제외 또는 부과 취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포차로 신고한 차량인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6조(개선부담금의 감면 대상),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대포차량에 대한 감면 사항은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자동차세도 부과하고 있음
-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하여 말소등록되거나 운행정지 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부과취소)
- ※ 말소등록 신청 및 운행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소관 부서에 문의



### 늦게 도난차량을 신고하였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

- 부과기간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멸실, 훼손 등으로 사용이 폐지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실제로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의 작성일 등을 기준으로 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도난차량의 경우 차량 도난신고일(공적서류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수시 부과가 가능하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도난신고가 늦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제 도난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 이전 기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소유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검사 미이행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문)을 제출하며, 법원에서도 민원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경우 ?**

- 위 판결은 자동차의 사용자와 원부상 소유자가 다르니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과태료에만 효력이 있는 판결입니다.
- 자동차가 대포차로 활용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이런 법적인 대응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활용 가능한 법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14쪽 5)에 근거해서 운행정지 명령일(자동차 등록원부에 명시됨)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라며,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명령일 이후는 부과취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혜택은 ?**

- 노후경유차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장치의 보증기간인 3년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개조되어 있는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저감장치 등 저감수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감사업 안내·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했으면 폐차될 때까지 면제되어야 하는데 3년간만 면제되는 이유는 ?**

- ㉠ 차량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자발적이고 추가적인 대기질 오염저감 노력을 감안하여 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 저감장치의 제작사 보증기간 이후의 대기개선 효율은 차량관리 상태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일률적으로 그 효율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보증기간 이후의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그 효율에 따라 1, 2, 3종으로 분류되며 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차량인데 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가 ?**

-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은 유로5, 유로6 경유차입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차량은 유로4 이하의 경유차로서, 제작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유로4 이하의 경유차로 인증받은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 본인의 차량이 유로4 경유자동차인지 유로5 경유자동차인지는 제작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경유차로서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1~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에 대해 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그 효율에 따라 1, 2, 3종으로 분류되며 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주변에 요소수 사용하는 다른 차량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은 유로5, 유로6 경유차입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차량은 유로4 이하의 경유차로서 요소수 사용 여부는 부과 및 면제의 기준이 아닙니다.
- 요소수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의 주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에 따라 분류되는 유로4, 유로5 경유차의 구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본인의 차량이 유로4 경유자동차인지 유로5 경유자동차인지는 제작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주행거리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5항제2호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으나 부과기간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멸실, 훼손 등으로 사용이 폐지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업소 입·출고확인서,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번호판 영치 등 사용을 할 수 없는 근거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그 기간 동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자동차보험을 자동차 소유주 1인 한정으로 가입한 경우 포함), 교도소 수감, 해외체류, 군입대 등의 사유만으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외체류, 교도소 수감, 입원, 군입대 등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을 면제받을 방법은 ?**

- ㉠ 「자동차손해배상 보험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1~3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업무가 위임된 경우 시·군·구청장 포함)에게 보관**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그 보관한 기간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관 부서에 문의
- ㉡ 다만, 입원(자동차보험을 자동차 소유주 1인 한정으로 가입한 경우 포함), 교도소 수감, 해외체류, 군입대 등의 사유만으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차량이 문제에 있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서비스센터 입고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본인 차량으로 00회사 통근버스를 운행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입원과 개인사업자 휴업 후 폐업하여 버스를 운행하지 않았다면서 병원 입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휴업사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며 면제를 요청한 경우 그 기간동안 면제해야 하는지 ?**

㉠ 부과기간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멸실, 훼손 등으로 사용이 폐지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실제로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의 작성일 등을 기준으로 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병원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휴업사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는 사용이 폐지되었거나 실제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업무가 위임된 경우 시·군·구청장 포함)에게 보관\*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그 보관한 기간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관 부서에 문의



**수입차로서 실제로 유로5 차량이나 2010년도 이전에 유로4로 인증·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유로5 차량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

-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5-150호, ’15.8.26.)’ 제4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유로6 경유차입니다.
  - 수입자동차의 경우 제작사(수입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 제2호 마목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유로4 경유 자동차)로 인증받아 출고된 자동차인 경우 상기 규정 제4조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가 불가합니다.
- ㉡ 수입사 또는 제작사에서 발급받은 유로5 경유자동차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유로5 경유자동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인증 당시 수입사에서 유로4 기준으로 인증신청(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서류 미제출, 유로4 배출가스보증기간 적용 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서류, 시험 결과 등이 유로4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인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유로5 보다 완화된 유로4 기준으로 시험하여 인증되었고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유로5의 7년보다 훨씬 짧은 2년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소급하여 유로5 경유자동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 \* 유로4 : 2년 또는 160,000km → 유로5 : 7년 또는 500,000km
  - 기 판매된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인증시험은 불가
- ㉢ 참고로, 유로5는 신규인증의 경우 2009.9.1.부터, 기 판매차의 경우 2010.10.1.부터 적용하나, 제작사의 선택에 의해 2009.9.1.일 이전에도 유로5로 미리 인증신청이 가능했습니다.

### 3 부과 및 납부

**Q A** 개인사업자의 경우 화물차를 등록할시 사업주의 소재지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되고 있는데 부과 기준은 ?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A** 자동차가 사망한 자의 소유로 되어있는데 누구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자동차관리시스템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므로 자동차의 상속인이 자동차관리시스템 상의 소유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형식적으로는 사망자에게 부과하여야 합니다.
- 사망자에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속이전을 하지 않는 차량(대포차 등)도 많다고 합니다.
- 자동차관리시스템 상 소유자가 사망한지 1년 정도 후에도 상속이전 되지 않은 차라면, 20~28쪽 라.(말소등록 되지 않았어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 49~51쪽 11.(결손 처분)이나 54쪽 13.(체납처분 중지)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Q A** 일시납부(연납) 신청하는 방법은 ?

- 연중 언제든지 시·군·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 일시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6~1.31에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go.kr)[서울은 이택스(etax.sreoul.go.kr)]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시납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납부한 경우에는 일시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3월 정기분 고지서를 받은 후 3월에 일시납부하려는 때에는 시·군·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서 3월 일시납부 고지서로 변경 수령하여 납부 기간(3.16~3.31) 내에 납부



### 일시납부(연납) 신청은 한번 만 하면 되는지 ?

- ㉠ 보통 한 번 일시납부를 신청하면, 1월에 일시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일시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1월에 일시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 다만, 주소를 해당 시·군·구 외로 이전하거나, 차량이나 소유자가 변경된 때(공동소유 → 단독소유 포함)에는 별도로 일시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위 설명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전출한 시·군·구에서 일시납부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 입 시·군·구에서는 일시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조치
- ㉢ 1.16~1.31에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go.kr)[서울은 이택스(etax.sreoul.go.kr)]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시납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납부한 경우에는 일시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1월에 일시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 3월 납부 기간(3.16~3.31) 내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도 다음 해 일시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1월에 일시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일시납부(연납)한 자동차가 공동소유(A(99%)+B(1%))에서 B 단독소유로 변경 되었을 때 일시납부(연납)한 것은 승계가 가능한지 ?

- ㉠ 환경개선부담금은 공동소유자 중 누가 납부의무자 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자 중 A가 중도에 공동소유자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해당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시납부로 납부완료된 상태이므로 B가 납부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인 편의에 따라 고지서가 99% 소유자인 A에게 발부되어 A가 납부한 것으로 기록된 것 뿐입니다.
- ㉡ A가 일시납부한 것에 대해 본인 지분만큼 환급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B에게 A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A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유자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A와 B에게 99:1로 환급하고, B에게는 소유자 변경 시점부터 계산하여 9월에 고지하면 됩니다.



**인구 30만명 정도인 김포시에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을 일시납부(연납)하고 5월에 인구 300만명 정도인 인천시 자치구로 진출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

-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는 등록지의 이전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납부(연납)한 경우에는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구 30만명인 김포시의 경우 “시행령 별표 7의 비고 5” 규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해당되어 지역계수 0.87이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은 지역계수 1.00입니다.
- 이에 따라, 등록지 이전 전일까지 지역계수 0.87로 일할계산(10% 감면 유지)하고 등록지 이전 이후부터 지역계수 1.00으로 일할계산(10% 감면 유지)하여 납부할 금액을 재산정한 후,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하고 추가 납부가 필요하면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지만 차량은 다른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제출한 지방(운행)확인서를 서울시에서도 인정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유예되었는데, 서울의 지역계수가 아닌 실제 차량 운행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

-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인 경우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입니다.
- ㉡ 지방(운행)확인서는 소유자가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는 서류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을 근거로하고 있으므로, 지방(운행)확인서에 의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지서를 납기 내에 받지 못하고 납기 후에야 수령했는데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일반우편 방식에 의해 송달(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 송달의 방법) 준용)되고 있으며, 등기우편은 온라인으로 발송과 수령확인이 가능하나 일반우편은 온라인 추적이 불가능하여 도달시기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납부고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사유를 밝히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고지서 미수령이 인정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압류도 해제



**자동차를 부과기간 이전에 폐차하였으나 말소등록의 지연으로 인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실제로 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폐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예:폐차장입고증)의 작성일 또는 사실 발생일을 사용폐지의 등록일로 하고 있음



**자동차 이전 등에 따른 이중 부과시 처리 방법 ?**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다만, 부과기준일에 A지역에서 부과기관을 달리하는 B지역으로 이전되었으나 두 개 기관에 이중 등록되어 동시에 부과된 경우에는 B지역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하고 A지역 부과권자가 부과를 취소하되, 납부의무자가 A지역에서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의거 기 납부한 경우에는 B지역에서 부과취소
-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B지역에서 부과함이 타당함



**자전거 매매로 명의이전을 하였는데 매도한 자가 체납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압류되어 있는 것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명의이전과 동시에 체납금이 같이 승계되는지 ?**

▷ 매매 당시 체납되어 압류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을 매수한 자가 납부한다고 합의 하였다고 할지라도, 납부의무는 부과기준일 당시 소유자인 자동차를 매도한 자에게 있습니다.

※ 매도한 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하고 매수한 자에게 받아내라고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자가 매도자 명의로 체납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참고로 '19.10.17. 이후에는 압류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을 납부하여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갑은 2007.3.9 을에게 양도증명서를 작성·이전을 요구하였으며, 을이 이행하지 않아 갑은 법원판결로 2008.1.4 을에게 강제이전을 하고 2007.하반기 갑에게 부과되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이며, 부과대상자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비록 개인간의 매매행위가 소유권이전등록 이전에 있었다 할지라도 자동차소유권은 판결선고를 기초로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이루어진 시점에 변경되었다 할 것임

※ 유사한 취지의 판례(대법원 1999.3.23. 선고 98도3278 판결)

- 즉, 갑에게 환급은 불가하며, 갑은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을에게 그 금액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도 갑에게 납부의무가 있음

## 4 압류 등 강제징수와 압류해제



###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

- ▷ 차량초과 폐차 등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가 말소된 후 환경행정시스템에는 압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말소일에 압류가 해제된 것입니다.(환경행정시스템 기록 정리 필요)
  -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가 말소된 지 5년이 지난 때에는 시효경과로 결손처분 하여야 합니다.
  -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54쪽 13.(체납처분 중지)에 따라 조치
- ※ 환경개선부담금 소멸시효\* : 5년
- \* 최초 고지 시의 납기 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최초 독촉부터 그 독촉의 납기까지와 압류되어 있는 기간 등 시효중단 기간을 제외한 기간



### 압류된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경우에도 말소등록된 경우와 같이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

- ▷ 압류된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경우 공매 등 강제처분의 실익은 없으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개시됩니다.
- ▷ 54쪽 13.(체납처분 중지)에 따라 재산조회, 체납처분 중지, 압류해제, 결손처분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을 제출하며 압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 압류를 해제해도 되는지 ?

- ㉠ 압류한 대상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즉, 채권)을 파산채권(회생절차인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등록하라고 요구하고(필요시 법원에 채권 신고), 파산채권(또는 회생채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압류를 해제
  - \*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와는 달리 우선권이 없는 일반채권(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Q&A)이므로 채권신고 필요
- 파산선고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으로, 파산채권을 신고한 때부터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을 신고한 때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 또는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 자동차 매매로 명의이전 한 후, 매도한 자가 체납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압류 되어 있는 것을 매수자(현 소유자)가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 ㉠ 매매 당시 체납되어 압류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을 매수한 자가 납부한다고 합의 하였다고 할지라도, 납부의무는 부과기준일 당시 소유자인 자동차를 매도한 자에게 있습니다.
- ㉡ 그러므로 매수자(현 소유자)가 본인의 체납에 대한 압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체납건에 대해 압류된 것을 압류해제해 달라고 하면 압류해제하고 매도자(전 소유자)의 다른 재산을 대체압류해야 합니다.
  - ※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체납금을 매수자가 내기로 하고 자동차 가격을 그만큼 할인하여 거래한 경우가 많기에 실무적으로는 매수자에게 납부하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의적으로는 매수자가 납부해야 합니다만, 매수자가 끝까지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면 압류해제하고 매도자의 다른 재산을 대체압류하면서 매도자에게 내도록하고, 매도자가 이익을 제기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민사로 해결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 참고로 '19.10.17. 이후에는 압류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을 납부하여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개정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제6호(‘20.3.24. 시행)를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 압류를 해제해도 되는지 ?**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의 신청)**

-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㉞ 압류된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민원인이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으므로 대체압류할 재산을 제공토록 하여 그 재산에 대체 압류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해제
- \* 20~28쪽 라.(말소등록 되지 않았어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의 1), 2), 4)~8), 10), 13) 및 14)
- ㉞ 대체압류할 다른 재산을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54쪽 13.(체납처분 중지)에 따라 재산조회, 체납처분 중지, 압류해제, 결손처분 등 진행



**'19.10.17 이전에 압류된 건인데도 압류된 건을 납부하여야만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

**이는 '19.10.17에 시행된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닌지 ?**

㉠ '19.10.17 이후에 자동차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제출을 자동차 말소등록으로도 확대한 개정 지방세법('15.7.24 시행)도 시행 후 말소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로, 과태료의 경우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11.7.6 시행)은 자동차 이전등록 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부칙에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체납되고 압류 및 공매까지 되었다면, 이때 체납된 환경개선 부담금을 공매된 이후에도 납부해야 하는지 ?**

㉠ 공매는 체납처분 절차의 하나이며, 압류된 차량이 공매가 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우선순위에서 배당을 못 받았더라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리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 대체압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체납자가 소유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 하였더라도 다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106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0조)



###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와 신탁재산 처분 ?

-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의 금지)에 따라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및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 및 공매가 불가능합니다.
  - ㉡ 다만, 신탁 전에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 납부대상인 시설물이나 자동차를 신탁 전에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유효하며, 그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고 공매 등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발생한 때 수탁자가 위탁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을 압류 하시기 바랍니다.
- ※ 신탁재산(A)의 수탁자(B) 이외의 체납자(C)의 체납액을 A에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C의 체납액에 대해 A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라면 이는 무효이며, A의 처분 시 C의 체납액은 징수할 수 없습니다.



### 캐피탈업체에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경우 ?

- ㉠ 리스(시설대여)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도 불구하고 리스회사 소유이며 사용자의 체납에 대해 리스차량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압류 시에 리스(시설대여) 차량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리스 보증금을 압류
  - 압류 시에 리스(시설대여) 차량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 차량을 압류하되 리스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압류 해제
- ※ 미지급된 리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와 동시에 리스 보증금 압류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시설대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구 시설대여업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 과오납 환급



### 환경개선부담금 과오납시 직권조정 절차는 ?

- ㉠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어 과오납된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직권조정 및 조정신청을 통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 징수권자(해당 지자체)에게 과오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징수권자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과오납이 인정될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결손처분



### 사망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처리 방법은 ?

- ▷ 등록말소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상속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소관 부서에 확인)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51쪽 10)에 따라 결손처분
  -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해당 차량 실소유 여부를 확인하시어(필요시 현장 출장 확인)
    - (1) 실소유시에는 상속인에게 납부독려 하시고 부과 주소도 상속인 주소로 수정 하시기 바라며
    - (2) 미소유시에는
      - 1) 20~28쪽 라.(말소등록 되지 않았어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의 1), 2), 4)~8), 10), 13) 및 1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제외(이미 부과된 건은 부과취소) 하시기 바랍니다.
      - 2) 위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54쪽 13.(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압류해제, 결손처분 등 진행한 후, 상속인에게 20~28쪽 라. (말소등록 되지 않았어도 부과하지 않는 경우)의 4)~6) 및 10)의 조치 중 하나를 하도록 하고 해당일자 이후로는 부과제외하시면 됩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미수금으로 매년 재부와 할 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 할 수 있는지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체납자의 재산이 파악되었을 때에 압류 등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시·도에 위임(시·군·구에 재위임)되었으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권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는 독촉 또는 납부최고,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됨
-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독촉 또는 납부최고(납기 경과후 15일 내에 발부한 1회 독촉고지 또는 납부최고분에 한해서 시효중단 효력이 있음)가 아닌 단순히 재차 고지서를 발부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압류 등)을 하여야 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징수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 제5장

## 환경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 개요
2. 업무 따라하기
  - 2-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 2-2.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관리
  - 2-3.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 2-4. 간단e납부 연계 관리
  - 2-5. 가상계좌 관리
  - 2-6. 자동납부 관리
  - 2-7. 자동차등록부 조회(말소 현황 등)
  - 2-8. 기타 관리
3. 자주 묻는 질문



## 5장 환경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1 개요

#### 업무 개요

##### ○ 인허가업무의 전산화로 생산성 증가

환경행정 인허가업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체계적인 업무관리와 각종대장을 전산화하여 합리적인 업무구조 확립 및 생산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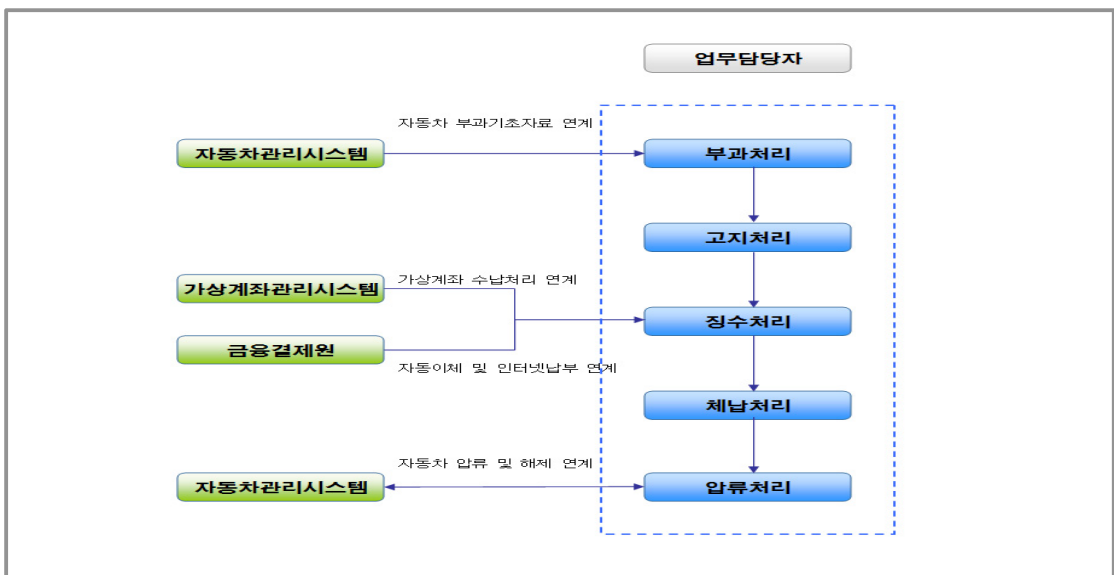
##### ○ 정보공동 활용을 통한 신속한 징수업무처리

차량 등 타 행정시스템과의 연계처리로 환경행정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금융결제원 지로 납부 등 타 시스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 ○ 시군구로부터 환경부로의 일관된 정보공유

시군구, 시도, 환경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종합적인 환경개선부담금부과현황의 파악 및 감시, 환경정책 수립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

#### 전체 구성도



## ▶ 관련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 메뉴 구조도

| 1레벨       | 2레벨      | 3레벨                 |
|-----------|----------|---------------------|
| 환경개선부담금관리 | 자동차개선부담금 | 자동차정보기초자료구축         |
|           |          | 자동차부담금대상자료생성        |
|           |          | 자동차부담금대상자료보정작업      |
|           |          | 자동차부담금감면일괄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가산금면제일괄처리    |
|           |          | 자동차부담금 광영권버스자료조회    |
|           |          | 자동차부담금연납분2기분반영처리    |
|           |          | 자동차부담금일괄면제처리(엑셀업로드) |
|           |          | 자동차부담금일괄면제처리(복지/보훈) |
|           |          | 자동차부담금부과처리          |
|           |          | 자동차부담금변경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고지자료점검       |
|           |          | 자동차부담금고지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징수처리(고지번호)   |
|           |          | 환경개선부담금징수처리(기타)     |
|           |          | 환경개선부담금수납일괄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수납오류현황       |
|           |          | 자동차부담금체납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압류(해제)처리     |
|           |          | 자동차부담금압류일괄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압류해제일괄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압류연계처리       |
|           |          | 자동차부담금환급처리          |

| 1레벨 | 2레벨         | 3레벨                |
|-----|-------------|--------------------|
|     |             | 환경개선부담금분할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결손일괄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변경일괄취소처리    |
|     |             | 자동차부담금기준조회         |
|     |             | 자동차부담금감면/면제대상조회    |
|     |             | 자동차부담금기초자료조회       |
|     |             | 자동차부담금부과자료조회       |
|     |             | 환경개선부담금총괄현황        |
|     | 자동차개선부담금-연납 | 자동차부담금연납신청관리       |
|     |             | 자동차부담금일괄부과처리(연납전체) |
|     |             | 자동차부담금일괄부과처리(연납신청) |
|     |             | 자동차부담금부과처리(연납분)    |
|     |             | 자동차부담금고지처리(연납분)    |
|     |             | 자동차부담금수납환급현황(연납분)  |
|     | 시설물개선부담금    | 시설물부담금기초자료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가산금면제일괄처리   |
|     |             | 시설물부담금부과처리         |
|     |             | 시설물부담금사용량처리        |
|     |             | 시설물부담금변경처리         |
|     |             | 시설물소유자변경현황조회(새움터)  |
|     |             | 환경개선부담금고지자료점검      |
|     |             | 시설물부담금고지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징수처리(고지번호)  |
|     |             | 환경개선부담금징수처리(기타)    |
|     |             | 환경개선부담금수납일괄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수납오류현황      |
|     |             | 시설물부담금체납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압류(해제)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압류연계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압류해제일괄처리    |
|     |             | 시설물부담금환급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분할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결손일괄처리      |
|     |             | 환경개선부담금변경일괄취소처리    |
|     |             | 시설물부담금기준조회         |
|     |             | 시설물부담금기초자료조회       |
|     |             | 시설물부담금부과자료조회       |

| 1레벨 | 2레벨      | 3레벨                                                                                                                                                             |
|-----|----------|-----------------------------------------------------------------------------------------------------------------------------------------------------------------|
|     |          | 환경개선부담금총괄현황                                                                                                                                                     |
|     | 고지서출력    | 고지서출력                                                                                                                                                           |
|     | 간단e납부연계  | 간단e납부 고지내역 송신 연계이력조회<br>간단e납부 수납내역 송신 연계이력조회<br>간단e납부 환급내역 송수신 연계이력조회<br>간단e납부 수납내역 수신 연계이력조회<br>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 수신<br>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 대사처리                       |
|     | 가상계좌관리   | 환경개선부담금가상계좌등록/부여관리<br>환경개선부담금가상계좌수납처리<br>환경개선부담금가상계좌수납현황                                                                                                        |
|     | 자동납부관리   | 자동납부신청등록<br>자동납부신청자등록현황<br>자동납부신청파일생성<br>자동납부신청결과반영<br>자동납부청구파일생성<br>자동납부청구결과반영                                                                                 |
|     | 자동차등록부조회 | 자동차등록부(갑부사항)조회<br>자동차등록부(최종사항)조회                                                                                                                                |
|     | 보고및현황관리  | 환경개선부담금보고처리<br>환경개선부담금수납현황<br>환경개선부담금체납현황<br>환경개선부담금반송현황<br>환경개선부담금압류/해제현황<br>환경개선부담금지역별집계표<br>환경개선부담금수납일자별집계<br>환경개선부담금변경현황조회<br>환경개선부담금환급현황조회<br>환경개선부담금체납자조회 |
|     | 시도중앙부처연계 |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현황조회                                                                                                                                                 |
|     | 기타변경관리   | 지역코드일괄변경<br>지역코드변경처리<br>지번주소→도로명주소전환<br>납부자 자료정비<br>부과/고지/체납/수납 금액이상 보정처리<br>2020연납 확인대상자료                                                                      |

## 화면 구성



## 2 업무 따라하기

### 2-1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 1.1 자동차부담금 부과처리

##### 1.1.1 자동차부담금 부과처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를 생성·변경하는 화면

■ 처리순서 : 대상조회(1 → 2), 부과자료입력(3 → 4), 부과자료삭제(5)

- 1 조회조건 : 검색할 대상을 입력하는 부분
- 2 조회 : 입력한 차량의 부과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기능
- 3 입력필드 : 부과자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입력
- 4 저장 :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과자료 생성·변경 처리
- 5 삭제 : 조회된 부과자료를 삭제처리
- 6 관련업무 : 부과처리 관련한 업무화면을 열 수 있는 팝업 기능

7 저공해,유로4 확인 : 유로4,저공해인증 차량 여부 확인 위한 기능

8 기타이력 : 납부자별 기타이력을 등록 할 수 있는 기능

※ 차량번호가 같고 납부자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조회조건에 분기, 차량번호, 납부자에 조회조건을 모두 입력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번호가 "경기1마1234"라는 차량을 납부자 "111111-1111111"와 "999999-9999999"가 가지고 있었다면 조회조건에 입력을 할 때 차량번호 납부자까지 입력을 해주어야함

※ 일할계산대상인 경우에는 화면상의 일할 계산을 체크를 하고, 관련업무의 일할계산처리 팝업을 통해 일할 자료를 입력하신 후 저장을 하면 됨

※ 고지처리 되고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된 자료는 다계좌가상계좌번호 사용 시 '다계좌가상계좌번호1' 출력되고, 미사용 시에는 기존 '가상계좌번호'가 출력된다.

### 1.1.2 자동차부담금 부과처리 관련업무

|                                                                                              |
|----------------------------------------------------------------------------------------------|
| 자동차등록부조회(갑부사항)                                                                               |
| 자동차등록부조회(최종사항)                                                                               |
| 일할계산처리                                                                                       |
| 변경처리                                                                                         |
| 고지처리                                                                                         |
| 징수처리                                                                                         |
| 체납처리                                                                                         |
| 압류(해제)처리                                                                                     |
| 기초자료조회                                                                                       |
| 부과자료조회                                                                                       |
| 보고처리                                                                                         |
| 체납현황                                                                                         |
|  송달주소이력조회 |

#### 화면/항목 설명

: 부과처리작업과 관련된 화면을 불러오는 팝업화면

### 1.1.3 일할계산처리

#### 화면/항목 설명

: 일할계산 대상자료의 부과금을 산정하는 팝업화면

- 1 추가: 일할계산 구간을 추가하는 기능  
※ [기본]을 체크 후 [추가]하면 기본적인 부과내역을 설정하면서 자료가 추가됨
- 2 입력필드 : 일할계산 산정을 위한 자료를 입력
- 3 저장 :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과금 산정 처리
- 4 삭제 : 선택된 행의 입력 자료를 삭제하는 기능

### 1.1.4 송달주소 이력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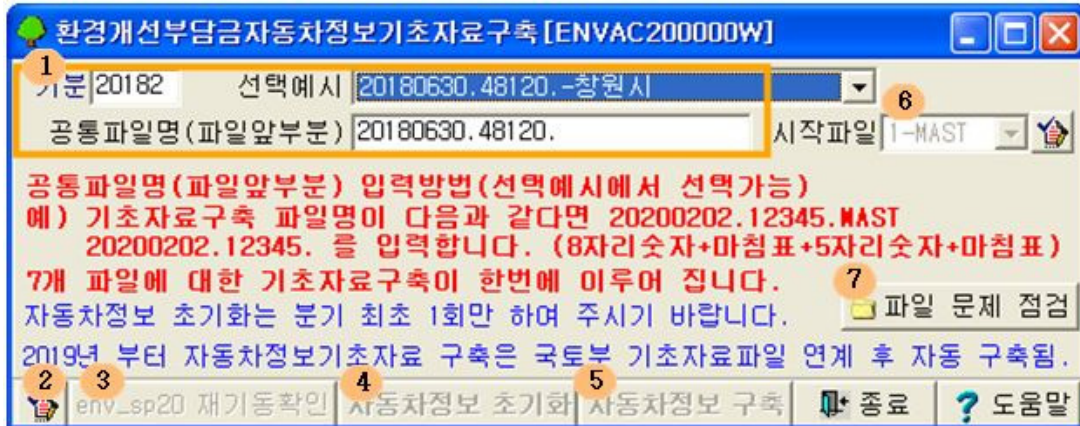
#### 화면/항목 설명

: 부과자료의 송달이력을 조회하고 반송내역을 입력하는 팝업화면

- 1 반송구분 : 반송내역을 입력
- 2 저장 : 변경된 송달 이력을 저장

## 1.2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료 생성

### 1.2.1 자동차정보기초자료구축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간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화면

처리순서 : ① → ⑤

- ① 부과기본정보 : 선택예시를 참고하여 공통파일명(파일앞부분)을 입력함.
- ② 버튼 활성화 : 2019년도부터 자동차정보기초자료 구축은 국토부 기초자료파일 연계 후 자동 구축됨에 따라 업무담당자 요청 시에만 운영지원센터 지원을 통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함.
- ③ env\_sp20 재기동확인 : 자동차정보기초자료구축 서비스(env\_sp20)가 기동중인지 확인 함.
- ④ 자동차정보 초기화 : 기 구축된 자동차정보기초자료가 초기화 됨.
- ⑤ 자동차정보 구축 : 기 구축된 자동차정보기초자료가 초기화 됨.
- ⑥ 시작파일 : 자동차정보 기초자료 구축 시 오류로 인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파일부터 다시 구축 가능하도록 함.
- ⑦ 파일 문제 점검 : 자동차정보기초자료 파일의 오류여부를 점검 할 수 있음.

## 1.2.2 자동차부담금 대상자료생성 화면

###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화면

### ■ 처리순서 :

- 0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일자 관리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전국공통) 및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운행 제한된 기간(시행일자)을 관리함.
- 1 부과기본정보 : 기분, 세입징수관, 조사자, 기관코드, 시군구코드, 지역구분, 징수결의일을 입력한 후 세입징수관/조사자는 시군구행정상의 ID(새울행정 홈페이지 ID와 상이할 수 있음)를 입력 후 체크버튼을 눌러서 입력함.  
 ※ 지역코드(5자리) : 공통행정-자료열람관리-지역코드열람 으로 확인  
 자치단체코드(7자리) : 공통행정-자료열람관리-자치단체 및 기관열람 으로 확인  
 지역계수(1자리) : 환경행정의 자동차개선부담금 기준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  
 -> 인구10만 이상 지역의 읍면지역은 부과자료생성시에 지역계수가 자동으로 변경됨.  
 담당자,징수관 ID : 구제시의 경우 구제시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중 한명의 ID를 입력
- 2 자동차정보 기초자료 구축 확인: 2019년도부터 도입된 국토부 파일연계 후 자동차정보 기초자료구축이 정상완료 되었는지 확인함.
- 3 부과처리단계 확인: 업무 담당자는 부과기본정보를 모두 입력 후 [부과처리단계 확인] 버튼을 눌러 부과기본정보 확정을 하고, [부과처리단계 확인] 버튼을 다시한번 눌러서 부과처리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 되었는지 확인 및 부과처리 단계별 버튼의

활성화를 시켜야한다. 처리상태는 버튼 옆의 파란색 문구로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처리상태 조회] 버튼을 이용하여 단계별 처리상태의 상세조회를 확인 할 수 있음.

※ 부과처리단계 확인 버튼은 자동차분 정기분 일괄 부과처리를 위한 단계별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반드시 눌러주셔야 현재 처리 하여야할 상태가 조회 됨.

- 4 처리상태 조회 : 각 단계 처리버튼 우측의 파란색 처리상태 문구(미처리/처리중/오류/완료) 로서 확인.
- 5 기초코드 자료 확인 : 자동차분 정기분 일괄 부과처리하기 전에 기본적인 유로4/5, 저공해인증, 자동차요약정보구축자료 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기능. 오류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시군구운영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오류점검 및 조치 후 부과처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6 부과기초자료 생성처리 : 자동차요약정보구축자료를 이용하여 부과처리를 위한 부과기초자료(원시자료,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생성하는 절차이다. 해당기분의 부과기초자료가 존재하면 우선 삭제 후 기초자료를 생성하게 됨.
- 7 부과기초자료 감면/면제 반영 : 부과기초자료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날짜조정 등을 반영하는 절차임. 처리시 세부 처리단계별로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음.

※ 자동차정보 기초자료에 말소된 지역코드를 사용본거지로 사용하는 자료가 존재하면 [자동차정보기 자료 말소된지역코드변경처리]화면이 자동 호출되어 해당자료 보정 완료 후에만 다음 작업이 가능.

- 8 부과기초자료 보정작업 : 부과기초자료를 조회하여 보정작업을 하는 절차. 중복자료가 존재하면 산정처리가 불가능 하므로 중복자료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건은 면제처리 해야한다. 해당 중복건이 모두 부과가 되어야 하는 부과건이라면 면제처리한 부과건을 메모해 두었다가 일괄부과처리가 모두 완료된 후 개별 부과처리로 등록 하여야 함.

※ 부과정보 생성 및 산정처리 이전에 보정을 하여야만 부과자료에 반영이 된다.  
(산정처리 후 처리한 보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9 수시분 일괄 체크처리 : 해당기분의 부과자료가 존재할 시 수시분으로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절차.

※ 산정처리 후에 이 작업을 하면 해당기분 부과분 전체에 체크처리가 되니 체크처리 버튼을 눌렀을때 나오는 메시지의 대상건수를 반드시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함.

- 10 일괄부과처리 자료 초기화 : 부과정보 생성 및 산정처리 또는 일할대상 처리 및

산정처리의 재작업이 필요할 시 일괄부과처리로 생성된 부과자료는 초기화 하는 기능

※ 부과자료가 삭제되는 과정이니 신중을 기하여야 함.

- 11 부과정보 생성 및 산정처리 : 보정작업이 모두 완료된 부과기초자료를 근거로 부과자료를 생성하는 기능.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작업.

※ [6. 부과정보 생성 및 산정처리]기능 실행 시 [3. 부과기초자료 보정작업] 화면에서 보정필수 [오류/확인 대상]이 존재하면 작업이 불가함.

- 12 일할대상 자료 등록 처리 : 보정작업이 모두 완료된 부과기초자료를 근거로 일할 부과자료를 생성하는 기능.
- 13 일할대상 산정처리 : 생성 된 일할 부과자료에 대해서 부과금 산정 처리하는 기능.
- 14 조사자/징수관 반영 : 해당분기의 모든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에 대해서 조사자 및 징수관에 대한 사항을 일괄 수정 처리하는 기능. 구제시의 경우 각 구제시별 조사자/징수관으로 수정 반영함.
- 15 현재 서버시간 조회 : 6, 7 단계 작업시 서비스가 재기동 되는 시간을 피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재 서버시간을 조회하는 기능

### 1.2.3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일자 관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운행 제한된 기간을 관리 하는 화면

- ① 조회(시행일자) : 등록된 운행 제한 기간(시행일자)을 조회
- ② 조회(제외여부설정) : 등록된 자치단체별 단속제외정보(제외여부 설정 값)을 조회
- ③ 부과금액 일괄재계산 (필요 시에만 재계산) : 정기분 일괄부과 8단계 완료 이후에 시행일자, 제외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만 재계산(구제시의 경우 관련구청 모두다 정기분 고지 여부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 후 재계산 진행해야 함)

※ 시행일자, 자치단체별 단속제외정보(제외여부 설정 값)는 환경공단에서 제공된 자료로 자동 구축됨  
 ※ [부과금액 일괄재계산]처리 시 부과금액이 0원 보다 크면서 미고지된 자료의 부과금액만을 일괄 재계산 함->일괄부과 5단계 이전에 시행일자, 제외여부가 변경 없이 8단계 까지 진행하였다면 [부과금액 일괄재계산]처리 작업은 불필요 함.(6~8단계 사이에 부과금 계산됨 )

## 1.2.4 자동차부담금 대상자료보정 화면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부담금대상자료보정작업(2010-2기분부터)[ENVAC052000W]

1분기 20191 ☐ 면제처리 대상 조회 ?{ 조회

차량번호  오류/확인 대상  Next조회건수 500 ?{ Next

[오류내용에 따른 조치방법안내]

[자동차부담금대상자료생성] 화면에서 [6. 부과정보 생성 및 산정처리] 처리를 하기 이전에 작업한 내용만 부과자료에 반영됩니다.  
 [자동차부담금대상자료생성] 화면에서 [7. 일할대상 처리 및 산정처리] 처리 이후에는 부과처리화면에서 보정하셔야 합니다.

| 번호 | 부과기분 | 자동차번호 | 소유자명 | 소유자번호 | 적용시작일 | 적용종료일 | 지역코드 | 행정동코드 | 최초 |
|----|------|-------|------|-------|-------|-------|------|-------|----|
| 2  |      |       |      |       |       |       |      |       |    |

면제 사유 코드

01 소파차량  
 02 관할지역이 아님  
 03 단종전출차량  
 04 매연저감장치 장착  
 05 저공해차량  
 06 저공해차량  
 07 유로4차량  
 08 유니목차량  
 09 상용용차량  
 10 적용일자오류  
 11 수시부과차량  
 12 부과초차량  
 90 기타 (담당자 지정 입력)

감면 사유 코드

01 저공해용고차  
 02 유로4차량  
 03 매연저감장치 장착  
 04 저공해엔진 장착

관련업무 \* [오류/확인 대상]에서 [보정필수] 항목이 있는 5개 항목을 조회되는  
 자료가 존재시 [6. 부과정보 생성 및 산정처리] 작업이 불가 합니다. 3 엑셀 4 삭제 5 저장 종료 ? 도움말 면제사유코드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부담금대상자료중 정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조회하여 자료보정을 하는 화면

- 1 조회조건 : 기분, 오류내용,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자료 보정할 대상을 조회
    - ※ 오류내용을 "주민번호오류"로 선택하여 조회하면 주민등록번호가 "999999999999"이거나 자릿수가 맞지 않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적용일자오류"로 선택하여 조회하면 적용시작일이 적용종료일보다 큰 경우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차량번호오류\_[보정필수]"로 선택하여 조회하면 차량번호가 7자리보다 적은 경우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지역코드오류"로 선택하여 조회하면 잘못된 지역코드가 들어있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배기량0인차량"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배기량이 0인차량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경유차량이아닌차량"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경유차량이 아닌차량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유니목차량"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유니목 차량인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납부자명이 없거나 납부자명에 주민번호가 입력된건"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납부자명이 없거나 납부자명에 주민번호가 입력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중복자료(주민번호와 차량번호가 같은 자료)건\_[보정필수]"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주민번호와 차대번호가 같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삭제처리하여 자료가 조회되지 않도록 보정해주고, 부과대상이면 부과처리화면에서 일괄부과처리

후 수기부과처리 하여 주어야함.

- ※ 오류내용을 "취득일, 등록일, 최초등록일자, 시군구등록일 오류"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취득일, 등록일, 최초등록일자, 시군구등록일 날짜가 이상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소유자명 또는 주소에 상품용으로 기입된 차량"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소유자명에 상품/상사/자동차/모터스/오토/상 품 라는 문구가 있거나 주소에 상품이라는 문구가 있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소유자명확인"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사용자명이 4글자이상이며 상품용이 아닌 경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매연저감장치 인지 확인)"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구조변경이력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로 해당기간에 이력이 존재하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차량원부상 상품용으로 분류된 차량"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상품용코드가 등록 되어져 있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오류내용을 "**\*부과자료 미생성된 전입차량(일할자료생성오류 대상)**\_[보정필수]"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부과기초자료 중 부과자료 생성시 부과자료가 생성되지 않을 전입차량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삭제처리하여 자료가 조회되지 않도록 보정해주고, 부과대상이면 부과처리화면에서 일괄부과처리 후 수기부과처리 하여 주어야함.
- ※ 오류내용을 "**\*부과대상자료 중 중간 차량번호 변경차량(부과자료생성오류 대상)**\_[보정필수]"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부과기초자료중 납부자번호, 차대번호가 같으나 차량번호가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동일한 납부자번호, 차대번호의 경우 차량번호가 동일하도록 기초자료를 보정하여 주어야함.
- ※ 오류내용을 "**\*대상시작일 중복오류**\_[보정필수]"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부과기초 자료 중 차대번호, 대상시작일자가 같은 중복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삭제 및 저장 후 원부를 확인하여 부과대상이 맞으면 부과처리 화면에서 부과처리 등록하여 주어야함
- ※ 부과대상제외차량조회를 체크하고 조회하시면 부과자료 생성이 안된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지 않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음.

**2 자료보정영역** : 선택한 대상의 자료를 수정할 수 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직접 수정이 가능

- ※ 조회된 자료를 정정하여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자료가 저장되고 자료가 제대로 맞으면 오류내용으로 조회하여도 조회되지 않음.

**3 엑셀** : 조회된 자료를 엑셀파일로 저장

**4 삭제** : 대상 자료를 면제처리

- ※ 자료를 삭제하면 실제로 삭제되지않고 면제코드 90으로 자동 입력됨.

**5 저장** : 보정한 자료를 저장

## 1.3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면제 일괄처리

### 1.3.1 환경개선부담금가산금면제일괄처리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면제대상을 조회하여 선택/저장하여 체납시 가산금 미부여 되도록 처리하는 화면

#### 처리순서 : 대상조회(1) → (2), 대상선택(3), 저장(4)

- 1 조회조건 : 가산금 면제 대상을 입력하는 부분
  - ※ 전기분 가산금면제 자료와 같은 현기분 부과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조회항목중 [전기분면제자료]를 체크한 후 조회함.
- 2 조회 : 입력한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회하는 기능
- 3 확인 : 가산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에 체크
- 4 저장 : 선택된 자료에 대해서 가산금 면제되도록 처리

## 1.4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담금일괄면제처리

### 1.4.1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담금 일괄면제처리(엑셀업로드)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미고지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중 100% 면제 대상이 되는 부과자료에 대해서  
엑셀파일의 납부자번호를 기준으로 일괄면제처리 하는 화면

- ① 조회조건 : 일괄면제처리할 조회 조건을 선택
- ② 엑셀업로드 : 일괄면제할 납부자번호 엑셀 파일을 선택하여 읽어 들임
- ③ 일괄면제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를 확인에 체크 한 후 저장

※ 면제대상기간이 부과기간 중간에 있을 경우 일괄면제처리 화면에서는 처리 불가능 하므로 부과처리 화면에서 처리하여야 함.

※ 엑셀서식은 아래와 같음. 2번째줄부터 대상자료가 시작되어야 함.

|   | A     | B             | C      | D        | E        | F    | G      | H |
|---|-------|---------------|--------|----------|----------|------|--------|---|
| 1 | 기분    | 납부자번호         | 면제구분코드 | 면제대상시작일  | 면제대상종료일  | 납부자명 | 부과대상번호 |   |
| 2 | 20161 | 1111111111111 | 9      | 20010101 | 20180101 | 테스트  | 11111  |   |
| 3 | 20161 | 3333333333333 | 9      | 20010101 | 20180101 | 김부자  | 다른차량   |   |
| 4 | 20161 | 3333331234567 | 9      | 20010101 | 20180101 | 김영명  | 4444   |   |
| 5 | 20161 | 1111111111333 | 9      | 20010101 | 20180101 | 다른이름 | 55555  |   |
| 6 | 20161 | 5555555555555 | 9      | 20010101 | 20180101 | 김태양  | 6666   |   |
| 7 |       |               |        |          |          |      |        |   |
| 8 |       |               |        |          |          |      |        |   |

## 1.4.2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담금 일괄면제 처리(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등)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미고지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중 100% 면제 대상이 되는 부과자료에 대해서** 복지부, 국가보훈처에서 감면대상자 정보연계 된 자료의 납부자번호를 기준으로 **일괄면제처리** 하는 화면

- 1 조회조건 : 일괄면제처리 할 조회 조건을 선택
- 2 일괄면제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를 확인에 체크 한 후 저장
  - ※ 대상자의 자격기간이 부과대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야만 일괄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
  - ※ 일부기간만 포함되어 일괄처리가 필요한 경우 부과처리 화면에서 개별 처리하여야 합니다.(해당 자료들은 확인 체크 해제 후 확인 필요일자가 강조처리 됨)
  - ※ 면제구분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연계대상자 차이에 따라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 ※ 납부자별 부과건수는 대상자 기준으로 부과건수가 다건인 경우의 확인을 위하여 선택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 납부자별부과건수: '2-납부자별 다건 부과자료'로 조회 시 부과금액이 높은 순서로 정렬되고, 조회된 납부자의 첫 번째 자료만 일괄선택이 가능합니다.
  - ※ 관련업무의 [부과면제검토] 기능을 통해서 부과현황에는 면제로 처리되어져 있으나 행복e음/e보훈시스템 연계현황에는 없는 자료들을 조회 가능하며, [공동소유자면제검토] 기능을 통해서 자동차등록원부 공동소유자의 행복e음/e보훈시스템 연계현황과 부과내역과의 비교 현황을 조회 가능 합니다.

## 1.5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담금연납분2기분반영처리

### 1.5.1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담금 연납분 2기분 반영처리 화면

| 확인                                  | 기분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명 | 연납수납일자     | 연납수납금  | 2기분부과금 | 2기분감면금액 | 연납수납금  | 연납일자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20140 | 1111111111 | 9구 9999 | 홍길동  | 2014-03-27 | 76,920 | 11,440 | 11,440  | 11,440 | 2014-00-1-4 |

#### 화면/항목 설명

: 미고지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중 연납 일시납 수납이 되어 2기분 부과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 부과자료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제공된 일시납 수납현황을 기준으로 2기분 부과제외 처리하는 화면

- ① 조회조건 :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 ② 처리자료선택 : 연납 일시납 수납이 되어 2기분 부과 제외 시켜야 할 부과 자료를 확인에 체크하여 2기분 부과금액과 2기분 감면금액을 확인
- ③ 저장 : 저장 버튼을 눌러 일시납에 따른 2기분 반영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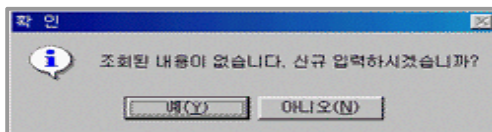
## 1.6 자동차부담금 고지처리

### 1.6.1 자동차부담금 고지처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부담금 부과자료를 조회하여 고지처리 하는 화면

- 1 조회조건 : 조회할 고지자료의 조회 조건을 입력
- 2 조회버튼 : 입력한 조건을 바탕으로 고지자료를 조회한다. 조회조건으로 입력한 자동차에 대해서 고지처리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Dialog가 보여짐.



[예]를 선택하면 [조회]버튼이 비활성화 되고 납기내기한, 납기후 기한, 고지일자를 입력하신 후 [고지자료생성]을 클릭하면 해당시군구에서 부과처리 된 자동차부담금의 자료가 읍면동별로 생성이 됨.

- 3 입력필드 : 고지처리에 필요한 납기기한과 고지일, 담당자 항목 입력하는 부분
- 4 고지자료생성 : 입력값을 적용하여 부과자료를 고지처리 하여 고지자료를 생성하는 기능

※ 부과처리에서 부과금액이 3000원 이상이 되어야 고지처리가 됨.

※ 분기, 지역구분을 입력하고 자동차번호, 납부자의 이름,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조회 조건에 맞는 자동차만 고지처리를 할 수 있음.

5 삭제 : 선택된 고지자료를 삭제하여 고지 취소하는 기능

※ 고지처리를 한 후에 부과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을 조회하여 삭제를 하고 부과금을 다시 산정한 후에 고지처리를 다시 할 수 있음.

6 고지서 : 선택된 고지자료의 고지서를 출력하는 기능

7 관련업무 : 고지처리업무와 관련된 화면을 호출하는 팝업

8 집배코드추가 : 고지서에 집배코드 추가출력 시 선택

※ 다계좌가상계좌번호 사용 시에는 고지자료 조회, 고지서출력, ocr파일생성 시 다계좌가상계좌번호 10개 항목이 추가되고 다계좌가상계좌번호 미사용 시에는 기능개선 전과 동일하게 기존 가상계좌번호가 조회, 출력된다. 또한 고지자료 삭제 시에는 기존가상계좌번호와 다계좌가상계좌번호가 삭제된다.

9 전자고지 발송 : 전자고지 발송 대상자료 생성하여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고지 처리함.

※ 전자고지 발송 연계시스템을 도입한 자치단체에서만 버튼 활성화 됨

## 1.6.2 자동차부담금 고지처리 관련업무

|    |                                                                                                 |
|----|-------------------------------------------------------------------------------------------------|
| 1  |  납부기한일괄변경      |
| 2  |  관외요청결과반영(확인)  |
| 3  |  관외요청결과반영      |
| 4  |  관외정보요청        |
| 5  |  고지서위탁출력OCR    |
| 6  |  고지서 출력        |
| 7  |  세입징수결의서       |
| 8  |  불납결손현황        |
| 9  |  1기분고지대상연납수납현황 |
| 10 |  배출가스등급 고지서반영  |
| 11 |  환경설정 읽어오기     |

### 화면/항목 설명

#### : 고지처리작업과 관련된 팝업화면

- 1 납부기한일괄변경 : 납기내, 납기후, 고지일 일괄변경
- 2 관외요청결과반영(확인) : 관외요청결과반영이 정상처리 되었는지 확인
- 3 관외요청결과반영 : 주민과로부터 받은 파일을 선택하여 최종 관외주민정보를 반영처리
- 4 관외정보요청 : 관내정보 송달주소를 수정하고 관외 정보에 대해 관외정보 요청용 파일 생성  
※ 관외정보는 관외정보요청버튼을 클릭하여 요청한지 약 2일이 경과되어야 송달주소 보정용 파일을 받을 수 있음.
- 5 고지서위탁출력OCR : OCR파일을 생성.고지서 출력을 위해 OCR센터에 보낼 파일 생성
- 6 고지서 출력 :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 호출
- 7 세입징수결의서 : 세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는 기능
- 8 불납결손현황 : 불납결손현황 조회 화면을 호출
- 9 1기분고지대상연납수납현황 : 연납분이 수납처리 된 정기분(1기분)자료를 조회하여 고지처리 대상에서 제외처리 할 수 있는 화면 호출
- 10 배출가스등급 고지서반영 : 고지서(부과자료)에 배출가스등급 반영하는 기능
- 11 환경설정 읽어오기 : 환경행정시스템의 환경설정을 읽어오는 기능

## 1.7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자료 점검

### 1.7.1 고지자료점검-관내주소반영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송달주소를 관내거주자에 한해서 일괄로 현행화 처리 하는 화면

- ① 조회조건 : 자동차/시설물 중 대상을 선택
- ② 반영조건 : 관내거주자의 송달주소중 변경하고자 반영조건을 선택 및 입력
- ③ 일괄반영처리 : 선택된 조건에 해당하는 관내거주자의 송달주소를 일괄로 현행화 처리

## 1.7.2 고지자료점검-우편번호일괄재부여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송달주소의 우편번호를 조회하여 재부여 하는 화면 우편번호 미부여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처리 가능함

- ① 조회조건 : 자동차/시설물 중 대상을 선택
- ② 조회조건 : 우편번호 재부여를 위한 조건을 선택 및 입력
- ③ 조회처리 : 선택된 조건에 해당하는 송달주소 우편번호 내역을 조회
- ④ 선택 :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를 체크
- ⑤ 반영조건 : 우편번호 재부여 하는 기준을 선택
- ⑥ 우편번호(재)부여저장 : 선택된 자료들에 대해서 송달주소 우편번호를 반영조건에 기준에 따라 일괄 수정

### 1.7.3 고지자료점검-송달구분일괄변경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송달구분을 일괄변경 처리 하는 화면

- ① 조회조건 : 자동차/시설물 중 대상을 선택
- ② 반영조건 : 송달구분을 변경 반영 하고자 하는 조건을 선택 및 입력
- ③ 송달구분 : 반영하고자 하는 송달구분을 선택
- ④ 일괄반영처리 : 조회조건과 반영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선택한 송달구분으로 일괄반영

## 1.8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리

### 1.8.1 자동차부담금 체납처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자료 중에 납기 후 기한 내에 수납이 처리되지 않은 고지자료를 체납자료로 등록하는 화면

처리순서 : 체납처리(1 → 2 → 3 → 4), 체납취소(1 → 2 → 5 → 4)

1 조회조건 : 체납처리를 할 대상을 입력

2 조회 : 체납처리 대상을 조회하여 그리드에 표시

3 추가 : 선택된 대상에 체납사항을 추가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은 1회만 가능함.

4 저장 : 추가나 삭제된 체납내역을 저장

5 삭제 : 선택된 대상의 체납건을 삭제

※ 저장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삭제내역이 반영이 됨.

6 체납자료일괄생성 : 다량의 고지자료를 체납처리 하는 체납자료일괄생성 화면 호출

## 1.8.2 체납자료 일괄생성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다량의 고지자료를 체납자료로 등록하는 화면

처리순서 : 체납처리(1 → 2 → 3), 체납취소(1 → 2 → 4 → 3)

- 1 조회조건 : 체납처리를 할 대상의 조회조건을 입력한다. 미체납자료는 [체납처리자료제외]를 체크하여 조회
- 2 조회 : 체납처리 대상을 조회하여 그리드에 표시
- 3 저장 : 선택된 대상에 체납처리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은 1회만 가능함
- 4 취소 : 선택된 대상들에 대하여 체납을 취소  
※ 저장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체납취소가 반영이 됨.

## 1.9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일괄처리

### 1.9.1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일괄처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시금고나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수납파일을 받아 일괄수납처리 하는 화면

처리순서 : 1 → 2

- ① 수납화일 : 시금고나 금융결제원의 수납파일을 읽어들이어 화면에 표시
- ② 저장 : 읽어들이는 수납내역을 저장하여 수납처리
- ③ 엑셀 : 읽어들이는 수납내역을 엑셀파일로 출력
- ④ 수납오류현황 : 수납처리 중 오류가 발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호출

※ 수납도중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파일명\_오류.처리연월일”로 파일이 생성되고 오류내용과 오류가 난 고지번호가 입력되어 생성된다. 오류가 난 것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징수처리(기타) 또는 환경개선부담금징수처리(고지번호)화면에서 건건이 처리하여야 함.

## 1.9.2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처리(고지번호)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담당자가 고지번호로 개별 수납처리 및 취소하는 화면

- ① 조회조건 : 수납하고자하는 부과건의 고지번호와 수납일자, 접수일자를 입력
- ② 엑셀 : 수납처리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
- ③ 조회 : 수납하고자하는 대상을 조회
- ④ 저장 : 선택한 대상을 수납처리
- ⑤ 취소 : 선택한 대상을 수납취소처리

※ 당일 수납된 처리한 자료에 대해서만 수납취소가 가능하고 시일이 지난 자료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처리(기타) 화면에서 조회하여 취소해야함.

### 1.9.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처리(기타) 화면

계 획 자 원 - 환 경 개 선 부 담 금 징 수 처 리 (기 타) [ENVAC025003W]

|      |            |                        |            |            |            |
|------|------------|------------------------|------------|------------|------------|
| 1 분기 | 20112      | 수납                     | 미수납        | 수납구분선택     |            |
| 지역구분 | 4111000000 | 경기도 수원시                |            | 납부자명       |            |
| 세입코드 | 12595921   | 기타경상이전수입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            | 자동차번호      |            |
| 고지번호 |            | 수납일자                   | 2011-07-04 | 세입일자(접수일자) | 2011-07-04 |

| 확인 | 관리번호 | 납부자 | 부과번호 | 분납 | 고지금액 | 가산금 | 납부기한 | 수납일자 | 접수일자 |
|----|------|-----|------|----|------|-----|------|------|------|
|    |      |     |      |    |      |     |      |      |      |

수납건수 0 건 수납금액 0 원

수납취소시 선택된 모든 자료가 수납취소 됩니다.  
수납취소 처리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회] 3 [저장] 4 [수납취소] [종료] [도움말]

#### 화면/항목 설명

: 담당자가 개별 수납처리 및 취소하는 화면

- ① 조회조건 : 수납하고자하는 부과건의 조회조건과 수납일자, 접수일자를 입력
- ② 조회 : 수납하고자하는 대상을 조회
- ③ 저장 : 선택한 대상을 수납처리
- ④ 수납취소: 선택한 대상을 수납취소처리

※ 수납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납구분을 수납에 선택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수납접수일자를 입력하시고 자료를 조회 후 변경할 수납접수일자로 수납접수일자를 바꾸고 수납접수일자 옆의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자료의 수납접수일자가 모두 변경되며 그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수납접수일자를 일괄로 변경할 수 있음.

## 1.10 자동차부담금 변경처리

### 1.10.1 자동차부담금 변경처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부담금 고지자료에 대한 증액, 감액 등의 부과금 변경사항을 처리하는 화면

**처리순서** : 변경처리( ① → ② → ③ → ④ ), 변경취소( ① → ② → ⑤ → ④ )

- ① 조회조건 : 변경처리를 할 대상을 입력
- ② 조회 : 조회조건에 맞는 대상을 조회하여 화면에 표시
- ③ 변경내역 : 변경처리 할 내역을 입력  
※ 가산금(증가산금) 감액 할 경우 변경금액 앞에 '-'를 붙여야 함
- ④ 저장 : 입력한 내용대로 변경처리
- ⑤ 삭제 : 선택된 대상의 체납건을 삭제  
※ 저장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삭제내역이 반영이 됨

## 1.10.2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일괄처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다량의 결손자료를 처리하는 화면

- 1 조회조건 : 결손처리 하고자하는 대상의 조회조건을 입력
- 2 결손대상 : 조회된 자료 중 결손처리 할 대상을 선택
- 3 결손내역 : 결손사유와 결손구분, 처리일자를 입력
- 4 저장 : 선택한 대상을 결손처리
- 5 엑셀 : 화면에 조회된 결손대상을 엑셀파일로 저장
- 6 엑셀업로드 :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결손처리
  - 가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화면에서 결손처리대상을 엑셀로 다운 받은후에 실제 결손처리 대상을 선택하여 엑셀파일을 수정함.
  - 나 엑셀파일의 컬럼순서를 분기, 부과대상번호, 부과금, 가산금, 고지번호 순서로 맞춘다. 위에 지정된 5개의 항목외에 다른 항목은 Upload시 무시됨.
  - 다 자료의 첫번째 열(Row)은 제목이 위치하여야 하며, 제목이 없는 경우에도 2번째 열(Row)의 자료부터 Upload 됨.
  - 라 엑셀자료의 고지번호에 '-'가 있어도 무방함.

|   | A     | B      | C      | D     | E                        |
|---|-------|--------|--------|-------|--------------------------|
| 1 | 분기    | 부과대상번호 | 부과금    | 가산금   | 고지번호                     |
| 2 | 20031 | 경기30러  | 38,870 | 1,940 | 2003-01-1-41111110-      |
| 3 | 20031 | 경기30모  | 40,310 | 2,010 | 2003-01-1-41111110-      |
| 4 | 20031 | 경기30무  | 35,990 | 1,790 | 2003-01-1-41111110-..... |

- 7 일괄부과취소(엑셀업로드) :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일괄부과취소 할 수 있는 팝업창을 호출 (처리방법과 엑셀양식은 결손과 동일함)

## 1.11 환경개선부담금 분할처리

### 1.11.1 환경개선부담금 분할처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고지된 자료의 고지자료를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하는 화면

- 1 조회조건 : 분할하고자하는 대상의 조회조건을 입력
- 2 분할내역 : 분할 내역을 입력한다. 분납회수는 분할하고자하는 개수-1을 입력한다.  
즉 3번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는 2를 입력
- 3 분할금액 : 각 차수별 분할금액과 납기내일자를 입력
- 4 조회 : 분할 대상을 조회
- 5 저장 : 분할 내역을 저장하여 분할처리
- 6 삭제 : 분할내역을 삭제

## 1.12 환경개선부담금 환급처리

### 1.12.1 자동차부담금 환급처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이중수납등이 발생한 자동차부담금에 대해 환급처리하는 화면

- ① 조회조건 : 분기와 차량번호 납부자번호를 입력
- ② 조회 : 조건에 맞는 대상을 조회
- ③ 내역등록 : 환급내역을 입력
- ④ 저장 : 입력한 환급내역을 저장
- ⑤ 삭제 : 환급내역을 삭제
- ⑥ 출력 : 아래와 같은 서식의 환급통지서를 출력

|                                                                                                                                                                                                                                                          |           |     |               |                                                                                      |                                                                                       |                                                                                            |
|----------------------------------------------------------------------------------------------------------------------------------------------------------------------------------------------------------------------------------------------------------|-----------|-----|---------------|--------------------------------------------------------------------------------------|---------------------------------------------------------------------------------------|--------------------------------------------------------------------------------------------|
| <b>경상남도 창원시</b><br>(전화번호 :                      )<br><div style="text-align: right;">2022년 04월 12일</div>                                                                                                                                                 |           |     |               |                                                                                      |                                                                                       |                                                                                            |
| 문서번호 :                      호                      발신 : 창원시장<br>수    신 : 브라우니<br>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input type="checkbox"/> 조정부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    급    통지서                                                                        |           |     |               |                                                                                      |                                                                                       |                                                                                            |
| <input type="checkbox"/> 조정부과<br><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    급                                                                                                                                                                              |           |     |               |                                                                                      |                                                                                       |                                                                                            |
| 계                                                                                                                                                                                                                                                        | 부담금       | 가산금 | 미    납<br>부담금 | <input type="checkbox"/> 조    정<br><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    급<br>부과금 | <input type="checkbox"/> 조    정<br><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    급<br>납입일자 | <input type="checkbox"/> 수    납<br><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    급<br>은행 및 계좌번호 |
| 2,998,080                                                                                                                                                                                                                                                | 2,998,080 | 0   | 0             | 1,236,980                                                                            | 2022-04-12                                                                            |                                                                                            |
| <input type="checkbox"/> 조정부과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급사유<br>테스트                                                                                                                                                                          |           |     |               |                                                                                      |                                                                                       |                                                                                            |
|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 2014-01-1-48125520-000003 기문:20141                                                                                                                                                                                                          |           |     |               |                                                                                      |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br>환경개선부담금을 <input type="checkbox"/> 조정부과    함을 알려 드립니다.<br><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    급<br>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br>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

**6 환급내역 : 처리에 필요한 내역을 입력**

※ 환급처리프로그램은 은행과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환급에 대한 자료를 입력 후 관리하는 용도임.

환급계좌번호는 간단e납부시스템으로부터 민원인이 입력하는 내역을 전송 받을 수 있음.

진행상태가 [환급결정결의] 이상이 되어야 민원인이 환급내역이 조회 가능함.

**7 관련업무-환급금계산 : 환급자료 등록 시 입력된 '조정기준일자'까지의 조정부과일수 기준으로 조정부과금액 재계산하여 예상환급금 확인 가능함.**

## 1.13 환경개선부담금 압류(해제)처리

### 1.13.1 환경개선부담금 압류(해제)처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료에 대하여 압류 및 해제 처리를 하는 화면

■ 처리순서 : 압류/해제처리( ① → ⑥ → ⑩ → ③ → ② → ⑤ → ⑦ )

- ① 조회조건 : 압류 및 해제 처리를 할 대상을 입력
- ② 압류재산입력 : 압류구분, 압류대상번호등을 입력  
※ 전송구분을 전송함으로 하면 국토교통부연계처리화면에서 연계처리를 해야 실제 압류가 잡히게 되고, 환경행정시스템상에 압류내역만 저장하고자 할 때는 전송구분을 전송안함으로 선택.
- ③ 추가 : 압류재산입력 행을 하나 추가
- ④ 삭제 : 선택된 압류재산입력 행을 삭제
- ⑤ 압류등록사항입력 : 압류처리와 관련된 등록사항을 입력하는 부분.
- ⑥ 조회 : 조회조건에 입력된 대상의 압류내역을 조회
- ⑦ 저장 : 입력한 압류 및 해제 사항을 저장
- ⑧ 삭제 : 저장되어있는 압류 및 해제 내역을 삭제
- ⑨ 관련업무 : 압류 및 해제처리와 관련된 화면을 호출하는 팝업.
- ⑩ 압류/해제 선택 : 압류와 압류해제를 선택하는 기능

### 1.13.2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일괄처리 화면

#### ■ 화면/항목 설명

: 다량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료에 대하여 일괄 압류 처리를 하는 화면

■ 처리순서 : 압류일괄처리( 1 → 2 → 3 → 4 → 5 → 10 )

- 1 전송구분 : 국토교통부연계처리 여부를 선택
  - ※ 전송구분을 전송함으로 하면 국토교통부연계처리화면에서 연계처리를 해야 실제 압류가 잡히게 되고, 환경행정시스템상에 압류내역만 저장하고자 할 때는 전송구분을 전송안함으로 선택.
- 2 압류등록사항입력 : 압류처리와 관련된 등록사항을 입력하는 부분.
  - ※ 등록목적에 원부과대상표시를 체크하면 등록목적 뒷부분에 원부과대상번호가 포함되어 저장됨.
- 3 조회조건 : 조회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을 호출
- 4 조회조건입력 : 대상을 조회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조건 입력.
- 5 저장 : 선택한 대상의 압류 사항을 저장
- 6 삭제 : 선택한 대상의 압류내역을 삭제
- 7 엑셀 : 압류 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
- 8 Txt저장 : 압류 내역을 텍스트파일로 저장
- 9 엑셀 :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압류처리를 할 수있음
  - ※ 대체압류 일괄처리를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하는 방법
    - ①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화면에서 압류대상차량을 엑셀로 다운 받은후에 대체압류할 차량번호를

조사하여 엑셀파일을 수정.

- ② 엑셀파일의 컬럼순서를 고지번호, 대체차량번호, 납부자, 납부자주민번호, 총 체납액, 납기내일자 순서로 맞춘다. 위에 지정된 6개의 항목외에 다른 항목은 무시됨.
- ③ 고지번호, 대체차량번호, 납부자주민번호가 없는 자료는 업로드되지 않음..
- ④ 엑셀파일에 Sheet가 여러개 있는 경우 첫번째 Sheet의 자료만 업로드 됨.
- ⑤ 자료의 첫번째 행은 제목이 위치하여야 하며, 제목이 없는 경우에도 2번째 열(Row)의 자료부터 업로드 됨.
- ⑥ 엑셀자료의 고지번호나 납부자주민번호에 '-'가 있어도 무방함.

|   | A                         | B      | C   | D              | E         | F          | G       |
|---|---------------------------|--------|-----|----------------|-----------|------------|---------|
| 1 | 고지번호                      | 대체차량번호 |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총체납액      | 납기내일자      | 원부과대상번호 |
| 2 | 2011-02-1-41111560-000008 | 1가1111 | 이종범 | 000206-1111111 | 410,190   | 2004-03-31 | 5가5560  |
| 3 | 2011-02-1-41111560-000004 | 2가2222 | 홍길동 | 111111-1111111 | 60,680    | 2004-03-31 |         |
| 4 | 2011-02-1-41111560-000023 | 3가3333 | 홍길동 | 111111-1111112 | 2,157,720 | 2004-03-31 | 5가5557  |
| 5 | 2004-01-1-41111560-000001 | 1가1111 | 김길동 | 121122-1111113 | 3,630     | 2004-03-31 | 5가5558  |
| 6 | 2004-01-1-41111560-000001 | 1가1111 | 김길동 | 121122-1111113 | 3,630     | 2004-03-31 | 5가5559  |
| 7 | 2004-01-1-41111560-000001 | 1가1111 | 김길동 | 121122-1111113 | 3,630     | 2004-03-31 | 5가5560  |
| 8 | 2006-01-1-4111156-0000013 | 2가2222 | 최홍만 | 111122-1111113 | 14,400    | 2004-03-31 | 5가5561  |

- 10 국토교통부압류내역연계처리 : 국토교통부압류내역연계처리 화면으로 이동.

### 1.13.3 환경개선부담금 압류해제일괄처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다량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료에 대하여 일괄 압류해제 처리를 하는 화면

**처리순서 : 압류일괄처리(1 → 2 → 3 → 4 → 5 → 8)**

- 1 전송구분 : 국토교통부연계처리 여부를 선택
- 2 압류해제등록사항입력 : 압류해제처리와 관련된 등록사항을 입력하는 부분.
- 3 조회조건 : 조회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을 호출
- 4 조회조건입력 : 대상을 조회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조건 입력.
- 5 압류해제(저장) : 선택한 대상의 압류해제 사항을 저장
- 6 엑셀 : 압류 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
- 7 엑셀 :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압류처리를 할 수있음

※ 엑셀서식은 아래와 같음. 2번째줄부터 대상자료가 시작되어야 함.

(압류구분코드: 1-자동차, 2-건설기계, 3-이륜자동차, 4-시설물, 5-토지, 6-전차, 7-은행계좌)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
| 1 | 기본    | 부과번호                      | 실압류차량번호 | 소유자명 | 소유자번호          | 미수금액  | 납부기한       | 원부과대상번호 | 수납일자       | 접수일자       | 압류구분코드 |
| 2 | 20151 | 2015-01-1-4812552-0010086 | 17가1234 | 김부자  | 123456-1234511 | 10000 | 2015-03-24 | 17가1235 | 2015-05-01 | 2015-05-01 | 1      |
| 3 |       |                           |         |      |                |       |            |         |            |            |        |

- 8 국토교통부압류내역연계처리 : 국토교통부압류내역연계처리 화면으로 이동.

## 1.13.4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압류연계처리 화면

환경개선부담금-압류정보자동차정보시스템연계처리 [ENVAC028100W]

1 관소재지 48125149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조회건수 0 처리건수 0

축탁일자 ~ 부담금종류 0-전체 압류관리번호 전체

압류구분 0-압류해제 연계처리 N-M처리 압류결과 0-전체 오류사유

소유자번호 = 소유자명 차량번호 공문번호

| 확인 | 압류구 | 축탁일자 | 부과번호 | 압류관리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명 |
|----|-----|------|------|--------|------|------|
|----|-----|------|------|--------|------|------|

관련업무 5 2 3 연계처리 4 엑셀 종료 ?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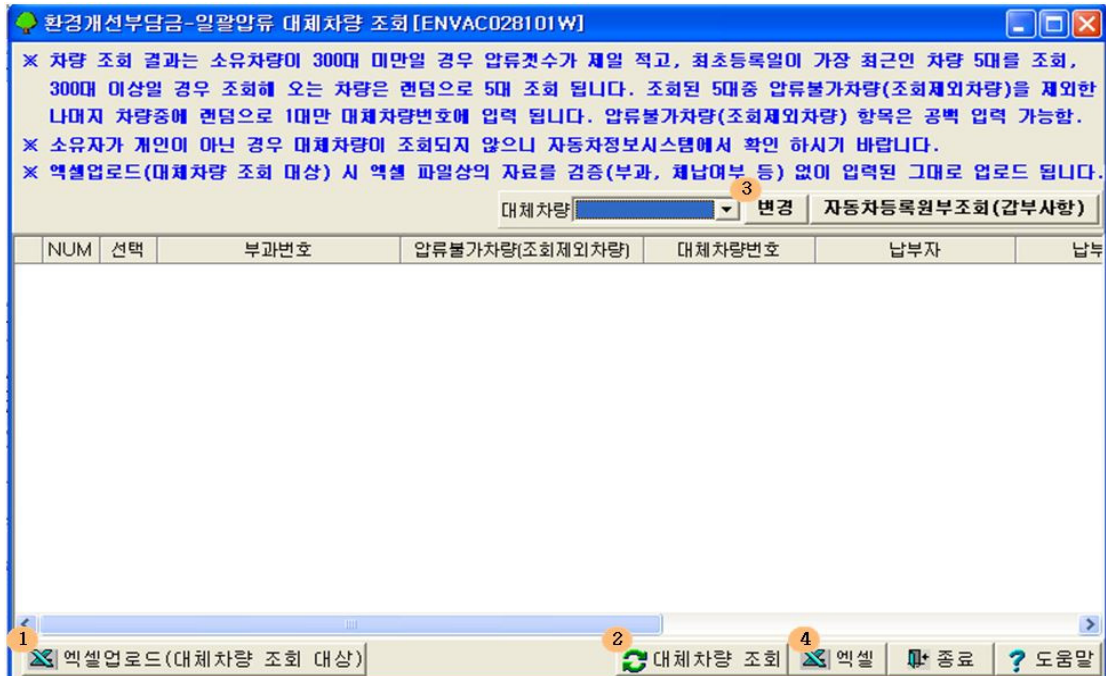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및 해제 자료를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제 압류 및 해제처리를 하는 화면

처리순서 : 압류연계처리(1 → 2 → 3) 압류해제연계처리(1 → 2 → 5 → 3)

- 1 조회조건 : 연계처리를 할 대상을 입력  
※ [압류(해제)처리], [압류일괄처리], [압류해제일괄처리]화면에서 저장한 내역들이 조회됨.
- 2 조회 : 입력된 조건을 바탕으로 연계처리할 내역을 조회
- 3 연계처리 : 선택한 대상들을 국토교통부시스템과 연계처리
- 4 엑셀 : 연계처리대상을 엑셀파일로 저장
- 5 관련업무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압류관리번호받아오기, 대체차량 조회, 처리결과 재확인, 미연계처리 자료의 삭제 등을 처리  
※ 연계처리 후 오류가 발생한 부과건들은 [보고및현황관리]-[환경개선부담금 압류/해제현황] 화면에서 비정상처리건 삭제기능을 통해 압류저장 내역을 삭제해야함.

※ 5 관련업무- 대체차량 조회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체압류 가능한 차량을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는 화면

- 1 대체차량 조회 대상 엑셀 파일을 서식에 맞게 작성 후 엑셀파일을 업로드
- 2 업로드 된 자료 중 대체차량 조회 대상을 선택 하여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대체차량 조회
- 3 대체차량번호를 조회된 다른 차량번호로 변경 하려면 변경하려는 대상 자료의 행(Row)을 마우스 로 선택 후 '대체차량'선택박스에서 변경 할 차량번호를 선택 하고 '변경'버튼을 클릭하면 대체차량번호가 선택된 차량번호로 변경된다.
- 4 대체차량 조회 된 자료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2 업로드 된 자료 중 대체차량 조회 대상을 선택 하여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대체차량 조회

3 대체차량번호를 조회된 다른 차량번호로 변경 하려면 변경하려는 대상 자료의 행(Row)을 마우스 로 선택 후 '대체차량' 선택박스에서 변경 할 차량번호를 선택 하고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대체차량번호가 선택된 차량번호로 변경된다.

#### 4 대체차량 조회 된 자료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 1.14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조회

### 1.14.1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조회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부과자료에 대한 통계 조회 화면

처리순서 : 조회(1 → 2)

- 1 조회조건 : 다양한 조건을 입력하여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 2 조회 : 입력된 조건을 바탕으로 부과자료를 조회 (조회 후 필터기능으로 해당 자료만 확인 가능)
- 3 관련업무 : 부과자료 관련한 기능을 연결해주는 팝업메뉴

※ 조회결과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호출되어 해당 자료의 주민번호나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으며 '납부자별기타이력등록'화면을 호출 할 수 있다.

|                                                                                                                                                                  |
|------------------------------------------------------------------------------------------------------------------------------------------------------------------|
| 선택된 행의 주민번호로 다시 조회하기 (조회조건 동일)(Q)<br>선택된 행의 주민번호로 조회조건 추가하며 조회조건 창을 열기(P)<br>선택된 행의 차대번호로 조회조건 추가하며 조회조건 창을 열기(Q)<br>선택된 행의 지역코드,시설물번호로 조회조건 추가하며 조회조건 창을 열기(B)  |
| 조회조건 초기화(수납구분 제외)하며 선택된 행의 주민번호로 조회하기(2000-2기부터)(Z)<br>조회조건 초기화(수납구분 제외)하며 선택된 행의 차대번호로 조회하기(2000-2기부터)(Q)<br>차량,시설물구분/수납구분 제외 조회조건 초기화 주민번호로 조회하기(2000-2기부터)(S) |
| 조회조건 초기화(수납구분 제외)하며 선택된 행의 주민번호로 조회하기(전체기분)(T)<br>조회조건 초기화(수납구분 제외)하며 선택된 행의 차대번호로 조회하기(전체기분)(U)<br>차량,시설물구분/수납구분 제외 조회조건 초기화 주민번호로 조회하기(전체기분)(Y)                |
| 선택된 행의 주민번호를 클립보드로 복사하기(W)<br>선택된 행의 전자고지번호를 클립보드로 복사하기(X)<br>선택된 행의 차량번호를 클립보드로 복사하기(Y)<br>선택된 행의 납부자명, 주민번호로 '납부자별기타미력등록'화면 조회하기 (Z)                           |

※ 다계좌가상계좌번호 사용 시 기존 가상계좌번호, 다계좌가상계좌번호 10개 추가 되어 조회되며 다계좌가상계좌번호 미사용 시 기존 가상계좌번호, 다계좌가상계좌번호 10개 추가(조회되는 자료는 없음 ")되어 조회 된다.

## 1.15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별기타이력등록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별 기타이력(비고)를 등록하는 화면

### 처리순서 : 조회(1) → (2)

- 1 조회조건 : 조회조건을 입력한다.
- 2 조회 : 입력된 조건을 바탕으로 납부자별 비고 이력을 조회
- 3 추가 : 추가버튼을 누른 후 추가자료를 등록할 수 있음.

## 2-2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연납 관리

### 2.1 자동차부담금연납신청관리

#### 2.1.1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담금연납신청관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내역을 등록/관리하는 화면

처리순서 : 연납신청내역 등록처리( ① → ② → ③ , ④ )

- ① 추가 버튼을 눌러 자료 등록한다.
- ② 연납신청내역을 입력한다.
- ③ 저장버튼을 눌러 연납신청내역을 저장한다.
- ④ 정상 자료조회 후 [선택]에 체크 하고 삭제버튼을 눌러 선택된 자료만 삭제 가능하다.

※ 관련업무- 직전년도수납분으로입력 : 직전년도 수납분으로 연납신청내역을 일괄 등록한다.

※ 관련업무- 엑셀업로드(연납신청) : 엑셀파일 업로드로 연납신청내역을 일괄 등록한다.

※ 관련업무- 연납미수납대상연납신청해지 : 연납 납부신청은 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지 않은 연납신청 대상 자료의 연납신청을 [해지]한다.

※ 신청기준

(1) 납부자번호 : 납부자번호만을 기준으로 연납 신청여부를 확인

(2) 납부자번호+차대번호 : 납부자번호와 차대번호까지 비교한 기준으로 연납 신청여부를 확인

## 2.2 자동차부담금일괄부과처리(연납분)

### 2.2.1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담금일괄부과처리(연납분)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에 대한 일괄적으로 부과자료를 등록하는 화면

처리순서 : 연납일괄부과처리 등록처리( ① → ② → ③ → ④ )

- ① 조회조건을 입력 후 조회하여 자료를 조회
- ②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한다.
- ③ 선택된 자료들에 대해서 부과기초자료생성 버튼을 누르면 연납 부과자료를 처리를 기초적인 부과내역과 일할내역이 등록된다. 단, 1기분 부과대상기간에 12월 31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고 고지처리 되어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만 처리한다.
- ④ 선택된 자료들에 대해서 부과금액산정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연납 부과기초자료를 기준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하여서 반영한다. 단, 연납 부과기초자료가 등록되어져 있으면서 고지처리 되어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만 처리한다.

※ 일반적인 처리 순서는 부과기초자료생성 후 부과금액산정을 처리 한다.

## 2.2.2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담금연납일괄부과처리(전체)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전체 부과내역을 기초자료로 연납 부과내역을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화면

### 처리순서 : 연납일괄부과처리 등록처리(1 → 2 → 3)

- 1 조회조건을 입력한다.
  - 2 [1.대상자료]점검 버튼을 클릭하여 산정지수 반영여부와 부과건수 등을 확인 한다.
  - 3 [2.연납 부과자료 일괄생성(전체)]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기분의 1기분 전체 부과내역을 기초자료로 연납 부과내역과 일할내역이 등록된다.
- ※ 위택스를 통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및 납부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납부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연납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납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1월 연납 고지 시에는 1기분 전체 부과내역을 기초자료로 연납부과내역을 일괄적으로 생성합니다.
  - ※ 본화면의 경우 1월 연납 부과기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 연납 고지내역중 미신청자의 경우 위택스연계를 제외하고는 납부금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가상계좌, 고지서출력 등 불가능)
  - ※ [관련업무]의 [연납부과자료일괄삭제처리] 버튼 기능을 통해서 연납분 미수납 부과자료 일괄삭제가 가능합니다.

## 2.3 자동차부담금부과처리(연납분)

### 2.3.1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담금부과처리(연납분)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에 대한 부과자료를 등록하는 화면

처리순서 : 연납부과처리 등록처리( ① → ② → ③ )

- ① 기본, 차량번호 등을 입력 후 조회하여 자료를 조회
- ② 기 등록된 자료가 존재할 경우 자료가 조회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추가등록 여부 확인 후 해당년도 1기분 부과자료 중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등록 기본 내역으로 등록됨.
- ③ '기등록 자료일 경우 내역 수정 후 저장 또는 삭제 등의 처리로 부과자료를 관리하고 신규 추가인 경우 일할상세내역에 선납부분의 추가 등을 하여 저장하여 연납에 대한 부과금액을 산정
- ④ 납부자별 기타이력을 등록 할 수 있는 기능

※ 연납 신규 부과등록의 예시

(1) 연납 고지 하고자 하는 차량번호를 연납부과처리 화면에서 조회함.

- (2) “조회내용이 없습니다.신규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에서 “예”를 눌러 부과내역을 입력함. ( 해당년도 1기분 내역이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  
해당년도 1기분 부과내역이 없는 경우 먼저 1기분 부과내역의 등록 후 연납 부과함.
  - (3) 부과기본내역 탭에서 수정할 사항을 수정  
해당부과건의 납부자가 연납 신청 시 ‘연납신청여부’에 체크 하여 저장한다.
  - (4) 일할상세내역 탭에서 해당년도 1기분,2기분 에 해당되는 일할내역을 등록  
1기분일할과 2기분일할을 각각 일할 등록 하여야 함.  
따라서 아무런 변동이 없는 차량의 부과자료라고 하여도 최소 2건의 일할 (7.1~12.31,1.1~6.30) 로 등록 되어져야 함.  
\* 1월 연납신청 건은 1, 2 기분 10% 감면으로 일할상세내역 탭에서 1, 2기분 각각 감면률을 0.10 으로 입력하고 2, 3월 연납신청 건은 2기분만 10% 감면으로 2기분 일할 료에만 0.10 으로 입력하여 감면처리 한다.
- ※ 고지처리 되고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된 자료는 다계좌가상계좌번호 사용 시 '다계좌가상계좌번호1' 출력되고, 미사용 시에는 기존 '가상계좌번호'가 출력된다.
- ※ 관련업무-[부담금 미리계산]버튼 기능으로 연납부과금 내역 변경저장 없이 부담금 계산 가능

## 2.4 자동차부담금고지처리(연납분)

#### 2.4.1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담금고지처리(연납분) 화면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부담금고지처리(연납분)[ENVAC009200W]**

기분 2020 지역구분 4812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구분 납배코드추가  
 납부자 like= 신규취득일 차량번호

고지대상 고지월 1월 납기내기한 고지일 2020-01-10 납기후기한 담당자(문의전화) 김환경미

| 선택 | 납부자 | 납부자번호 | 차량번호 | 고지일 | 부과금 | 가산금 | 합 계 | 고지번호 |
|----|-----|-------|------|-----|-----|-----|-----|------|
|----|-----|-------|------|-----|-----|-----|-----|------|

고지서위탁출력OCR 연납분 1기분 체납현황 연납신청여부일괄처리 지금액 0

관련업무 조회 고지자료 생성 삭제 고지서 종료 도움말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자료를 이용하여 고지처리 하는 화면

**처리순서 : 자동차 연납 고지처리 등록처리( 1 → 2 → 3 → 4 )**

- 1 기 분 , 차량번호 등을 입력 후 조회하여 자료를 조회
- 2 기 고지처리된 자료가 존재할 경우 자료가 조회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신규입력(고지처리) 여부 확인 후 납기내기한,고지일 등을 입력받은 후 고지자료를 생성  
납기내기한과 납기후기한은 납기내기한의 날짜를 기준으로 같은 날짜로 처리
- 3 연납분 고지처리시 관련 해당년도 1기분 고지자료는 부과금액 0원으로 변경 및 부과취소 처리됨. 연납분 고지삭제시에는 해당년도 1기분에 대해서 부과금액 환원 및 부과취소의삭제가 처리됨.
- 4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에 대한 고지서는 본 화면에서만 출력 가능함.  
타 고지서와 기본적인 양식은 동일 하나 정기/체납 대신 연납 으로 출력하고,

가산금이 없음.

- 5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의 고지처리 이후의 가상계좌부여, 수납처리 등은 기존 환경개선부담금관리-자동차개선부담금의 관련 화면에서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연납분 1기분 체납현황: 연납분 고지처리 대상 자료 중 1기분이 체납된 자료를 조회  
 \* 연납분 고지처리 대상 자료 중 1기분 체납된 자료가 있으면 연납분 고지처리가 불가능함. 따라서 연납분 정상 고지처리 하려면 '연납분 1기분 체납현황' 화면에서 추출 된 자료의 체납 자료를 삭제해야 함.
- 7 집배코드추가 : 고지서에 집배코드 추가출력 시 선택
- 8 고지월(고지자료생성 조건) : 선택된 고지월에 따라 해당 고지자료가 생성된다.  
 ※ 다계좌가상계좌번호 사용 시에는 고지자료 조회, 고지서출력, ocr파일생성 시 다계좌가상계좌번호 10개 항목이 추가되고 다계좌가상계좌번호 미사용 시에는 기능개선 전과 동일하게 기존 가상계좌번호가 조회, 출력된다. 또한 고지자료 삭제 시에는 기존가상계좌번호와 다계좌가상계좌번호가 삭제된다.

## 2.5 자동차부담금수납환급현황(연납분)

### 2.5.1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부담금수납환급현황(연납분)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에 대한 수납/환급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 처리순서 : 자동차 연납 현황 조회(1 → 2)

- ① 기분, 차량번호 등을 입력 후 조회하여 자료를 조회
- ② 환경개선부담금 해당 자치단체 연납 수납분에 대한 현황이 조회
- ③ 연납분 수납자료 중 환급이력이나 변경이력이 존재하는 현황은 조회조건 [구분]에서 선택하여 조회 가능함.

※ 시설물부담금 폐지로 설명 생략

### 3.2.1 시설물부담금 고지처리 화면



- 1 **조회조건** : 조회할 고지자료의 조회 조건을 입력한다.
- 2 **조회버튼** : 입력한 조건을 바탕으로 고지자료를 조회한다. 조회조건으로 입력한 시설물에 대해서 고지처리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Dialog가 보여진다.



[예]를 선택하면 [조회]버튼이 비활성화 되고 납기내기한, 납기후 기한, 고지일자를 입력하신 후 [고지자료생성]을 클릭하면 해당시군구에서 부과처리 된 자동차부담금의 자료가 읍면동별로 생성이 된다.

- ③ 입력필드 : 고지처리에 필요한 납기기한과 고지일, 담당자 항목 입력하는 부분
- ④ 고지자료생성 : 입력값을 적용하여 부과자료를 고지처리 하여 고지자료를 생성하는 기능

※ 부과처리에서 부과금액이 3000원 이상이 되어야 고지처리가 된다.

- ⑤ 삭제 : 선택된 고지자료를 삭제하여 고지 취소하는 기능

※ 고지처리를 한 후에 부과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을 조회하여 삭제를 하고 부과금을 다시 산정한 후에 고지처리를 다시 할 수 있다.

- ⑥ 고지서 : 선택된 고지자료의 고지서를 출력하는 화면을 호출
- ⑦ 관련업무 : 고지처리업무와 관련된 화면을 호출하는 팝업
- ⑧ 집배코드추가 : 고지서에 집배코드 추가출력 시 선택

※ 다계좌가상계좌번호 사용 시에는 고지자료 조회, 고지서출력, ocr파일생성 시 다계좌가상계좌번호 10개 항목이 추가되고 다계좌가상계좌번호 미사용 시에는 기능개선 전과 동일하게 기존 가상계좌번호가 조회, 출력된다. 또한 고지자료 삭제 시에는 기존가상계좌번호와 다계좌가상계좌번호가 삭제된다.

### 3.2.2 시설물부담금 고지처리 관련업무

|   |                                                                                              |
|---|----------------------------------------------------------------------------------------------|
| 1 |  납부기한일괄변경   |
| 2 | 관외요청결과반영(확인)                                                                                 |
| 3 |  관외요청결과반영   |
| 4 |  관외정보요청     |
| 5 |  고지서위탁출력OCR |
| 6 |  고지서 출력     |
| 7 |  세입징수결의서    |
| 8 |  환경설정 읽어오기  |

#### 화면/항목 설명

： 고지처리작업과 관련된 업무를 호출하는 팝업메뉴

- 1 납부기한일괄변경 : 납기내, 납기후, 고지일 일괄변경
- 2 관외요청결과반영(확인) : 관외요청결과반영이 정상처리 되었는지 확인
- 3 관외요청결과반영 : 주민과로부터 받은 파일을 선택하여 최종 관외주민정보를 반영처리
- 4 관외정보요청 : 관내정보 송달주소를 수정하고 관외 정보에 대해 관외정보 요청용 파일 생성  
※ 관외정보는 관외정보요청버튼을 클릭하여 요청한지 약 2일이 경과되어야 송달주소 보정용 파일을 받을 수 있다.
- 5 고지서위탁출력OCR : OCR파일을 생성.고지서 출력을 위해 OCR센터에 보낼 파일 생성
- 6 고지서 출력 :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 호출
- 7 세입징수결의서 : 세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는 기능
- 8 환경설정 읽어오기 : 환경행정시스템의 환경설정을 읽어오는 기능

### 3.3 시설물부담금 변경처리

#### 3.3.1 시설물부담금 변경처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시설물부담금 고지자료에 대한 증액, 감액 등의 부과금 변경사항을 처리하는 화면

■ 처리순서 : 변경처리(① → ③ → ② → ④), 변경취소(① → ③ → ⑤ → ④)

- ① 조회조건 : 변경처리를 할 대상을 입력한다.
- ② 변경내역 : 변경처리 할 내역을 입력한다.  
※ 가산금(증가산금) 감액 할 경우 변경금액 앞에 '-'를 붙여야 함
- ③ 조회 : 조회조건에 맞는 대상을 조회하여 화면에 표시한다.
- ④ 저장 : 입력한 내용대로 변경처리를 한다.
- ⑤ 삭제 : 선택된 대상의 체납건을 삭제한다.  
※ 저장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삭제내역이 반영이 됨

## 2-4 간단e납부 연계 관리

### 4.1 간단e납부 고지내역 송신 연계이력조회

#### 4.1.1 간단e납부 고지내역 송신 연계이력조회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자료가 간단e납부 시스템으로 연계된 이력을 조회하는 화면

#### 처리순서 : 고지내역 송신 연계이력조회(1 → 2)

- 1 조회조건 : 조회하고자 하는 연계이력의 조건을 선택 및 입력
- 2 조회 : 조회 버튼을 눌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내역의 간단e납부 시스템으로의 연계이력을 조회
- 3 엑셀 : 고지내역 연계이력을 엑셀 출력

## 4.2 간단e납부 수납내역 송신 연계이력조회

### 4.2.1 간단e납부 수납내역 송신 연계이력조회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내역이 간단e납부 시스템으로 연계된 이력을 조회하는 화면

#### 처리순서 : 수납내역 송신 연계이력조회( 1 → 2 )

- 1 조회조건 : 조회하고자 하는 연계이력의 조건을 선택 및 입력
- 2 조회 : 조회 버튼을 눌러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내역의 간단e납부 시스템으로의 연계이력을 조회
- 3 엑셀 : 수납내역 연계이력을 엑셀 출력

## 4.3 간단e납부 환급내역 송신 연계이력조회

### 4.3.1 간단e납부 환급내역 송신 연계이력조회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환급내역이 간단e납부 시스템으로 연계된 이력을 조회하는 화면

#### 처리순서 : 환급내역 송신 연계이력조회( ① → ② )

- ① 조회조건 : 조회하고자 하는 연계이력의 조건을 선택 및 입력
- ② 조회 : 조회 버튼을 눌러 환경개선부담금 환급내역의 간단e납부 시스템으로의 연계이력을 조회
- ③ 엑셀 : 환급내역 연계이력을 엑셀 출력

## 4.4 간단e납부 수납내역 수신 연계이력조회

### 4.4.1 간단e납부 수납내역 수신 연계이력조회 화면

#### 화면/항목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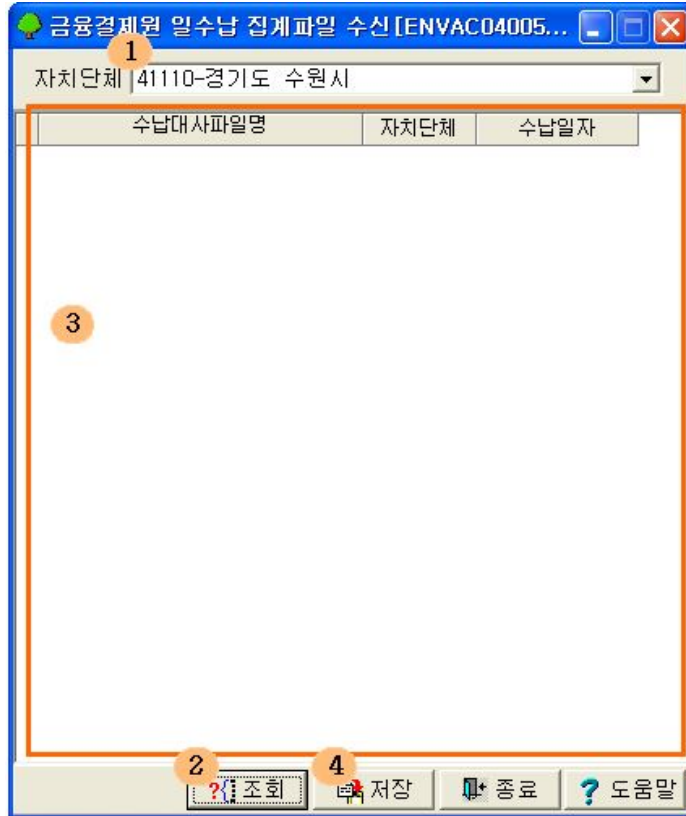
: 간단e납부 시스템을 통한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내역이 서울환경행정시스템으로 연계된 이력을 조회하는 화면

#### 처리순서 : 수납내역 수신 연계이력조회(1 → 2)

- ① 조회조건 : 조회하고자 하는 연계이력의 조건을 선택 및 입력
- ② 조회 : 조회 버튼을 눌러 간단e납부를 통한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내역의 연계이력을 조회
- ③ 엑셀 : 간단e납부를 통한 수납내역 연계이력을 엑셀 출력

## 4.5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 수신

### 4.5.1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 수신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에 따른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을 새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신 하여 저장하는 화면

처리순서 : 일수납 집계파일 수신처리(1 → 2 → 3 → 4)

- 1 조회조건 :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자치단체)을 선택
- 2 조회 : 조회 버튼을 눌러 환경개선부담금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 미 수신처리된 파일 내역을 조회
- 3 선택 : 수신 처리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
- 4 저장 : 선택된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을 환경행정시스템에 저장

## 4.6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 대사처리

### 4.6.1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 대사처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을 환경행정상 수납내역과 비교하여 대사처리 하는 화면

#### 처리순서 :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 대사처리 ( 1 → 2 → 3 → 4 )

- ① 조회 : 조회하고자 하는 연계이력의 조건을 선택 및 입력하고 조회
- ② 조회결과 : 조회된 대사파일의 상세내역이 조회
- ③ 대사처리 : 대사파일의 수납내역과 환경행정상 수납내역을 비교하여 대사처리
- ④ 엑셀 : 금융결제원 일수납 집계파일의 대사처리 내역을 엑셀 출력

## 2-5 가상계좌관리

### 5.1 가상계좌 등록/부여관리

#### 5.1.1 가상계좌 등록/부여관리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화면

- ① 조회조건 : 가상계좌번호를 부여 및 취소할 대상을 입력하는 부분  
※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때는 구분을 미부여로 조회하고 취소할 때는 부여로 조회해야함.
- ② 조회 : 조회조건을 바탕으로 대상자료를 조회  
※ 가상계좌 미부여 된 자료 조회 시 고지금액이 0원 이상인 자료만 조회됨.
- ③ 부여 : 가상계좌번호를 각각의 고지건별로나 납부자별로 부여  
※ “납부자별”을 선택하면 한 납부자의 모든 고지건이 동일한 가상계좌번호를 갖게되고, “고지건별”을 선택하면 각각의 고지건마다 개별 가상계좌번호를 갖게됨.

- 4 부여취소 : 부여가 되어있는 가상계좌번호를 삭제  
※ 부여취소한 가상계좌번호는 다시 복구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업해야함.
- 5 가상계좌등록 : 가상계좌업체로부터 받은 번호를 환경행정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일괄등록

- 6 환경설정 : 가상계좌 부여/관리를 위한 환경설정. 고지서 출력여부와 좌표 등을 선택할 수 있음

- 7 OCR파일 생성 : 가상계좌업체에 전송하기위한 OCR파일을 생성하는 팝업

## 5.1.2 가상계좌수납처리 현황

### 화면/항목 설명

： 가상계좌수납처리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실시간수납시스템과 연계하는 자치단체만 사용)

- ① 조회조건 : 조회하고자 하는 가상계좌수납처리 현황의 조건을 선택 및 입력
- ② 조회 : 조회 버튼을 눌러 가상계좌수납처리 현황 조회
- ③ 저장 : 선택된 자료의 확인구분, 확인비고를 저장
- ④ 엑셀 : 가상계좌수납처리 현황을 엑셀 출력
- ⑤ 은행파일생성 : 선택된 자료가 은행전송용 텍스트파일로 생성

※ 다계좌가상계좌번호 사용 시 기존 가상계좌번호 항목이 제거되어 조회되고 다계좌가상계좌번호 미사용 시 기존 가상계좌번호가 조회된다.

## 2-6 자동납부관리

### 6.1 자동납부 신청 등록

#### 6.1.1 자동납부 신청 등록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를 등록하는 화면

- ① 조회조건 : 자동납부 신청자의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
- ② 자동납부신청내역 : 조회된 신청자의 신청내역이 나타난다. 내역이 없을 경우 담당자가 직접 입력
- ③ 자동납부 현황 : 자동납부신청이력현황과 미수납건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는 필드.
- ④ 저장 : 입력한 신청내역을 저장
- ⑤ 미리보기 : 자동납부신청서를 출력하기 전에 미리보기를 할 수 있음
- ⑥ 출력 : 아래 그림과 같은 자동납부신청서를 출력

##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납부 (신규) 신청서

### □ 예금주 인적사항

|        |      |
|--------|------|
| 성명     |      |
| 연락처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자동이체은행 |      |
| 이체계좌번호 |      |

### □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 ※ 주) 1. 통장인감과 자동이체 납부 신청서 인감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2. 납기일에 예금잔액이 납부할 환경개선부담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체가 불가능하며,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하신 날의 다음 부과분부터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수원시 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납부제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계좌에서 고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요금의 납기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1 년 06 월 30 일

신청인

|   |  |
|---|--|
| 인 |  |
|---|--|

수원시장

|     |    |  |    |
|-----|----|--|----|
| 접수자 | 소속 |  | 확인 |
|     | 직  |  |    |
|     | 성명 |  |    |

※ 여공통장 계좌번호, 실명확인필

## 6.2 자동납부 신청자등록현황

### 6.2.1 자동납부 신청자등록현황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자동납부 신청자 등록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 1 조회조건 :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 2 자동납부신청자등록현황 : 자동납부신청등록을 통해 저장된 내용이 조회

## 6.3 자동납부 신청파일생성

### 6.3.1 자동납부 신청파일생성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등록된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내역을 금융결제원에 보내는 파일을 생성하는 화면

- ① 조회조건 : 파일로 생성할 대상의 조회조건을 입력
- ② 자동납부신청대상현황 : 파일로 생성될 대상을 보여줌
- ③ 파일현황 : 생성될 파일에 대한 처리일자 및 폴더를 입력할 수 있음
- ④ 처리 : 입력한 조건대로 자동납부 신청파일을 생성

## 6.4 자동납부 신청결과반영

### 6.4.1 자동납부 신청결과반영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동납부신청결과 파일을 환경행정시스템에 반영하는 화면

- 1 조회조건 : 자동납부 신청결과현황을 조회
- 2 자동납부신청결과현황 : 자동납부신청결과현황을 화면에 보여줌
- 3 파일현황 : 자동납부 신청결과 파일을 읽어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4 [송달구분]자동이체로 일괄변경 : 자동납부 신청결과반영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자동이체 등록이 된 건들에 대하여 송달구분을 자동이체로 일괄변경 하는 기능.
- 5 처리 : 읽어들이 신청결과반영파일을 환경행정시스템에 반영함
- 6 엑셀 : 자동납부신청결과현황을 엑셀파일로 저장

## 6.5 자동납부 청구파일생성

### 6.5.1 자동납부 청구파일생성 화면

환경개선부담금관리-자동납부청구파일생성(GW83) [ENVAC107000W]

1 납기일 [ ] 구분 [0-전체] 청구기분 [2001-1] ~ [2016-2] ? 조회

자동납부청구파일생성대상

| 제외 | 구분 | 기본 | 부과대상 | 납부자명 | 고지번호 | 소유자번호 |
|----|----|----|------|------|------|-------|
| 2  |    |    |      |      |      |       |

파일현황 (시금고 계좌정보)

3 은행 [002-산업은행]  
 계좌번호 [77777777] (-)없이 15자리까지 입력가능  
 예금주 [55555]  
 파일위치 [c:\wrais]

처리현황

출건수 [0] 처리건수 [0]  
 청구건수 [0] 청구금액 [0]

생성처리율 [ ]

\* 월의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납기일]은 그 다음 첫번째 평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분의 납기내일까지 지난 경우 반드시 채납처리후에 자료를 생성하여 주십시오.  
 \* 고지서출력 화면에서 출력대상을 자동납부청구서로 선택하시면 고지서양식으로 자동납부청구서를 출력 가능합니다.

4 생성 5 자동납부청구서 엑셀 종료 도움말

#### 화면/항목 설명

: 금융결제원에 보내는 자동납부 청구파일을 생성하는 화면

- 1 조회조건 : 자동납부 청구파일을 생성할 대상을 조회
- 2 자동납부청구파일대상현황 : 자동납부청구파일을 생성할 대상을 보여줌
- 3 파일현황 : 자동납부청구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항목을 입력  
 ※ 환경설정에 설정하여 처리함. 예금주명은 약어로 짧게 기입함.
- 4 생성 : 자동납부청구파일을 생성
- 5 자동납부청구서 : 자동납부청구서를 출력

## 6.6 자동납부 청구결과반영

### 6.6.1 자동납부 청구결과반영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동납부청구결과 파일을 반영하는 화면

- ① 조회조건 : 자동납부청구결과를 반영할 대상을 조회
- ② 자동납부청구파일반영내역 : 자동납부청구결과반영 내역을 보여줌
- ③ 파일현황 : 자동납부청구결과파일을 읽어들임
- ④ 처리 : 읽어들인 자동납부청구결과파일을 반영하여 수납처리
- ⑤ 엑셀 : 자동납부청구결과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
- ⑥ 수납오류내역 : 수납오류내역화면을 호출

청구결과반영 구분초기화 : 자동납부청구결과 파일을 다시 처리하기 위하여 반영결과구분값을 초기화 함

## 2-7 자동차등록부 조회

### 7.1 자동차등록부 조회

#### 7.1.1 자동차등록원부(갑부사항)조회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사항 조회 화면

처리순서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사항 조회(1 → 2)

- 1 조회조건 : 조회할 차량번호 와 소유자번호 입력
- 2 조회 : 입력한 차량번호 와 소유자번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사항 조회
- 3 조회된 갑부사항과 관련한 최종사항 조회화면으로 연결 조회

## 7.1.2 자동차등록원부(최종사항)조회 화면

환경개선부담금관리-자동차등록원부(최종사항)조회[ENVAC030010W]

|        |         |          |
|--------|---------|----------|
| 차량등록번호 | 제원관리번호  | 말소등록일    |
| 차명     |         | 말소등록구분명  |
| 차종종별명  | 차종유형명   | 차종분류명    |
|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용도       |
| 연식     | 색상      | 출처구분     |
| 최초등록일  | 등록(변경)일 | 제작연월일    |
| 소유자명   | 소유자번호   | 소유자구분    |
| 사용본거지  |         |          |
| 소유자주소  |         |          |
| 검사유효기간 | 소유자법정코드 | 소유자전화번호  |
| 점검유효기간 |         | 유로 4/저공해 |

자동차등록원부기타 | 구조변경등록사항 | 제원사항(출고시) |

|                  |         |           |       |
|------------------|---------|-----------|-------|
| 형식명              | 취득금액    | 승차정원수     | 사용연료  |
| 배기량              | 차량총중량   | 최대적재량     |       |
| 취득일자             | 취득종료일자  | 미전등록(양수)일 |       |
| 신차량번호            | 이전차량번호  | 등록상세명     |       |
| 차량만료일자           | 차번호변경시기 | 사용본거지관청코드 |       |
| 번호판규격명           | 번호판영치여부 | 번호판영치최고일  |       |
| 3 자동차등록원부소유자주소반영 | 저당수     | 압류건수      | 구조변경수 |

관련업무 | 갑부사항 | 1 자동차등록번호 | 2 조회 | 종료 | 도움말

### 화면/항목 설명

: 자동차등록원부 최종사항 조회 화면

#### 처리순서 : 자동차등록원부 최종사항 조회 (1 → 2)

- 1 조회조건 : 조회할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 2 조회 : 입력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등록원부 최종사항 조회
- 3 관련업무 - 자동차등록원부소유자주소반영 :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주소로 부과 자료의 납부자, 송달주소 반영

### 7.1.3 경유자동차말소현황조회

#### 화면/항목 설명

: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연계 받은 경유자동차 말소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 해당 현황은 수시부과대상여부 검토 대상 자동차(소유자번호는 앞 6자리만 제공)

#### 처리순서 : 경유자동차 말소현황 조회(1 → 2)

- 1 조회조건 : 조회하고자 하는 말소현황의 조건을 선택 및 입력
- 2 조회 : 조회 버튼을 눌러 경유자동차 말소현황을 조회
- 3 부과 : 조회된 말소자동차가 차대번호와 소유자번호앞6자리 기준으로 동일 차량 부과내역 여부
- 4 부과처리화면/최종사항조회/갑부사항조회 화면으로 연결하여 부과처리 하거나,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5 엑셀 : 조회된 말소현황을 엑셀로 출력

## 2-8 기타 관리

### 8.1 기타 관리

#### 8.1.1 환경개선부담금 반송현황조회 화면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반송현황조회 [ENVAC012001W]

1 납금종류 2-자동차 지역구분 48125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기분 20152 ~ 20152 납부자 차량번호  
 반송구분 등록일자 ~ 2015-11-17 송달구분

| 분기 | 법정동 | 차량번호 | 납부자 | 납부자번호 | 부과금액 | 수납금액 | 반송구분 | 등록일자 | 요청주 |
|----|-----|------|-----|-------|------|------|------|------|-----|
|----|-----|------|-----|-------|------|------|------|------|-----|

관련업무 반송구분 4 일괄입력 3 엑셀 2 조회 5 저장 종료 도움말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반송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 처리순서 : 반송현황 조회(1 → 2)

- 1 조회조건 : 조회하고자 하는 반송현황의 조건을 선택 및 입력
- 2 조회 : 조회 버튼을 눌러 환경개선부담금반송현황 조회
- 3 엑셀 : 반송현황을 엑셀 출력
- 4 일괄입력 : 조회된 자료의 반송구분을 일괄입력
- 5 저장 : 입력된 반송구분, 비교를 저장

## 8.1.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조회 화면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체납현황[ENVAC017200W]

1 금종류 1-시설물 지역구분 4812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납부자 like= 분기 5 시설물번호 4

납부내기한 2024-03-29 부과금액 3,000 ~ 99,999,999 납부자번호목록조회 납부자번호목록등록

| 분기 | 지역코드 | 부담금번호 | 납부자 | 납부자번호 | 부과일 | 부과금 | 가산금 | 체납액 | 고지번호 | 고지자수 |
|----|------|-------|-----|-------|-----|-----|-----|-----|------|------|
|----|------|-------|-----|-------|-----|-----|-----|-----|------|------|

체납건수 0 총부과금 0 총가산금 0 총체납금 0

3 엑셀 2 ? 조회 ? 도움말

'납부자번호목록조회' 체크 후 조회시 '납부자번호목록등록'으로 등록된 납부자 자료만 조회 됩니다.(엑셀파일의 첫번째 행(row)부터 자료가 등록됩니다.)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반송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 처리순서 : 체납현황 조회(1 → 2)

- 1 조회조건 : 조회하고자 하는 반송현황의 조건을 선택 및 입력
- 2 조회 : 조회 버튼을 눌러 환경개선부담금체납현황 조회
- 3 엑셀 : 조회된 체납현황을 엑셀로 출력
- 4 납부자번호목록등록 : 납부자번호목록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
- 5 납부자번호목록조회 : '납부자번호목록등록'으로 업로드 한 납부자번호들의 체납 자료만 조회 시 선택하여 조회

## 8.2.1 환경개선부담금 반송정보등록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자료의 송달이력에 반송정보(반송사유, 반송일자)를 등록하는 화면

### 처리순서 : 반송정보 등록처리(1 → 2 → 3 → 4 → 5 → 6 → 7 → 8)

- ① 환경설정항목 : 우선 환경설정 값 들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설정된 '환경설정항목' 중에 원하는 항목을 선택
- ② 반송화일 : 반송센터에서 받은 반송정보 수록 파일을 화면에 불러옴
- ③ 반송정보수록내역 : 반송정보수록 내역을 보여줌
- ④ 대상선택 : 반송정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
- ⑤ 반송대상자료조회 : 반송정보수록 내역을 대상으로 환경행정시스템 상 존재 유무 확인
- ⑥ 반송조회 대상선택 : 선택된 자료중에 전체 반송정보 등록을 하려면 '수납자료포함' 선택, 수납 자료 제외 하고 반송정보 등록을 하려면 '수납자료제외'를 선택
- ⑦ 저장 : 읽어들이 반송정보수록 내역의 반송사유, 반송일자를 환경행정시스템에 저장
- ⑧ 엑셀 : 반송정보수록 내역을 엑셀파일로 저장

### 8.3.1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출력 화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출력 [ENVAC020000W]

1 대상 2-자동차 정기분 ☒ 독촉분 부과금 3,000 ~ 9,999,999,999,999

기분 2018-2 ~ 2018-2 지역구분 48125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송달구분

납부자 like= 말소 제외 말소 만 부과대상번호

☐ 정렬순서사용 납부자번호 송달주소 우편번호

☒ 집배코드추가 고지서종류 고지서좌표 환경설정화면

고지건수 0 담당자 출력시 사용

합계금액 0 연락처 출력시 사용 담당자출력(2Band)

관련업무 ? 조회 엑셀 ? 종료 ? 도움말

#### 화면/항목 설명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출력 화면

처리순서 : 고지서 출력 (1 → 3)

- 1 조회조건 : 조회하고자 하는 출력대상 자료의 조건을 선택 및 입력
- 2 조회 : 조회 버튼을 눌러 고지서 출력대상 자료조회
- 3 출력 : 조회된 자료 고지서 출력
- 4 엑셀 : 조회된 고지서 출력대상 자료를 엑셀로 출력
- 5 집배코드추가 : 고지서에 집배코드 추가출력 시 선택

※ 다계좌가상계좌번호 사용 시에는 고지자료로 조회, 고지서출력 시 다계좌가상계좌번호 10개 항목이 추가되고 다계좌가상계좌번호 미사용 시에는 기능개선 전과 동일하게 기존 가상계좌번호가 조회, 출력된다.

### 8.4.1 2020연납 확인대상자료조회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2020연납 확인대상자료조회 화면

처리순서 : 환급내역 등록 ( 1 → 4 ), 다음년도 연납분 감액처리 ( 6 → 8 )

- ① 조회조건 : 조회할 조회조건 선택
- ② 조회 : 입력한 조회조건에 해당하는 연납분 환급 확인대상 자료 조회
- ③ 수정 : 수정할 자료에 대해서 **선택에 체크** 후 환급결정일자 입력
- ④ 환급내역등록(20200연납분만 처리가능) : 선택에 체크된 자료들이 환급처리 화면의 현황으로 저장처리. 환급대상/충당대상 자료만 처리. 처리 후 구분은 환급확정/충당확정으로 저장
- ⑤ 환급통지서출력(20200연납분만 처리가능) : 선택에 체크된 자료들에 대해서 환급통지서 출력. 환급확정/환급통지 자료만 처리. 처리 후 구분은 환급통지로 저장
- ⑥ 2022감액대상 : 2022년 연납분 감액으로 환급/충당 처리 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서 '2022감액대상'으로 저장 ※ 이자계산이 완료된 자료만 감액대상으로 저장 가능함
- ⑦ 2022감액등록 : '2022감액대상'으로 등록된 자료들에 대해서 일괄로 2022년도 연납분 감액처리

- 8 2022수납확인 : 2022년도 연납분 감액처리된 자료들에 대해서 일괄로 '2022수납확인'으로 저장

- ※ 저장/환급내역등록/환급통지서 처리 시 처리대상이 아닌 자료는 처리에서 제외됨
- ※ 환급내역등록 처리한 자료는 수정 불가능함
- ※ 환급처리에서 수정 시 내역의 차이 발생 가능함

## 8.5.1 환경설정 화면

### 화면/항목 설명

: 환경설정 화면

### 처리순서 : 환경설정 조회 및 저장 (1 → 2 → 3)

- 1 조회조건 : 조회할 자치단체를 선택
- 2 조회 : 선택된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환경개선후담금 환경설정을 조회
- 3 저장 : 선택된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환경개선후담금 환경설정 변경사항을 저장

※ 가상계좌 출력위치에 지방세입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환경설정 가능

### 3 자주 묻는 질문

#### 1 시설물사용량에서 시설물번호 0000 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시설물번호 0000은 특이한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즉 큰 건물에 대해서 연료 용수량을 분배를 해줄 때 표제부로 0000을 사용하며 해당 건물은 부과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용도 코드에 555를 입력해 주시고 시설물번호 0001, 0002~ 등에 대해서는 용수산정방법, 연료 산정방법은 "3"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시설물번호 0000에서 통합배분계산을 하여 각각의 시설물 0001, 0002~에 연료, 용수량을 분배를 해줍니다.

#### 2 일할계산대상자료 작업 시 저장하였는데 적용이 안됩니다.

일할자료의 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용기간, 지역계수, 차량용도, 최대적재량이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위에 적은 항목들의 값을 확인하시고 저장하여 주십시오

#### 3 고지처리 된 자료 삭제하려면?

환경개선부담금관리→자동차(시설물)개선부담금→자동차(시설물)부담금고지처리

- 1) 고지처리 화면에서 고지 삭제할 자료를 조회한 다음
- 2) 삭제할 자료에 체크하고
- 3) 화면 하단의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4 환경개선부담금 관외정보요청 방법

환경개선부담금관리→자동차(시설물)개선부담금→자동차(시설물)부담금고지처리

- 1) 관외정보요청 작업은 고지처리 된 자료에 대해서만 실행되므로, 모든 부과 대상에 대해 고지 처리 완료 후 관외정보요청 처리해야 합니다.
- 2) 고지처리 화면에서 지역구분은 지역전체, 송달구분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업무 → 관외정보요청 을 누르면 관내정보는 자체 수정되고 관외자료에 대해 파일이 생성 됩니다.
- 3) 생성 된 관외정보 파일을 주민과에 요청하여 수정한 파일을 다시 받아 고지처리 → 관련업무 → 관외송달주소수정 버튼을 누르고 받은 파일을 지정하여 송달주소 수정 하면 됩니다.

## 5 환경개선부담금 소유자(납부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경개선부담금관리 → 자동차(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 자동차(시설물)부담금부과처리  
변경하고자 하는 부과자료를 조회하여 납부자 란을 수정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 6 자동차개선부담금 산정 시에 필요한 기준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동차개선부담금 산정 시에 필요한 기준에는 차령계수, 오염계수, 지역계수, 기준부과금, 산정지수, 시군구별지역계수가 있으며 산정 기준별 상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자동차\_차령계수

| 코드ID   | 코드 | 차령범위1(~년이<br>상) | 차령범위2(~년미<br>만) | 차령계수 | 적용시작연도     |
|--------|----|-----------------|-----------------|------|------------|
| ENV123 | 01 | 0               | 1               | 1.00 | 1994/01/01 |
| ENV123 | 02 | 1               | 2               | 1.02 | 1994/01/01 |
| ENV123 | 03 | 2               | 3               | 1.04 | 1994/01/01 |
| ENV123 | 04 | 3               | 4               | 1.06 | 1994/01/01 |
| ENV123 | 05 | 4               | 5               | 1.08 | 1994/01/01 |
| ENV123 | 06 | 5               | 6               | 1.10 | 1994/01/01 |
| ENV123 | 07 | 6               | 7               | 1.12 | 1994/01/01 |
| ENV123 | 08 | 7               | 8               | 1.14 | 1994/01/01 |
| ENV123 | 09 | 8               | 999             | 1.16 | 1994/01/01 |
| ENV123 | 10 | 0               | 4               | 1.00 | 2003/01/01 |
| ENV123 | 11 | 4               | 6               | 1.04 | 2003/01/01 |
| ENV123 | 12 | 6               | 8               | 1.08 | 2003/01/01 |
| ENV123 | 13 | 8               | 999             | 1.12 | 2003/01/01 |
| ENV123 | 14 | 0               | 3               | 0.5  | 2008/01/01 |
| ENV123 | 15 | 3               | 4               | 1    | 2008/01/01 |
| ENV123 | 16 | 4               | 6               | 1.04 | 2008/01/01 |
| ENV123 | 17 | 6               | 8               | 1.08 | 2008/01/01 |
| ENV123 | 18 | 8               | 10              | 1.12 | 2008/01/01 |
| ENV123 | 19 | 10              | 999             | 1.16 | 2008/01/01 |

## 2. 자동차\_오염계수

| 코드ID   | 코드 | 배기량범위1(cc) | 배기량범위2(cc) | 오염계수 |
|--------|----|------------|------------|------|
| ENV122 | 01 | 0          | 2000       | 1.00 |
| ENV122 | 02 | 2001       | 2500       | 1.25 |
| ENV122 | 03 | 2501       | 3500       | 1.75 |
| ENV122 | 04 | 3501       | 6500       | 2.64 |
| ENV122 | 05 | 6501       | 10000      | 4.50 |
| ENV122 | 06 | 10001      | 9999999999 | 5.00 |

## 3. 자동차\_지역계수

| 코드ID   | 코드 | 지역             | 지역계수 |
|--------|----|----------------|------|
| ENV135 | 1  | 인구500만이상       | 1.53 |
| ENV135 | 2  | 인구100만이상500만미만 | 1.00 |
| ENV135 | 3  | 인구50만이상100만미만  | 0.87 |
| ENV135 | 4  | 인구10만이상50만미만   | 0.85 |
| ENV135 | 5  | 인구10만미만        | 0.40 |

## 4. 자동차\_기준부과금

| 코드ID   | 코드    | 기준부과금_일반(원) | 기준부과금_영업(원) |
|--------|-------|-------------|-------------|
| ENV125 | 20101 | 20,250      | 20,250      |
| ENV125 | 20091 | 20,250      | 20,250      |
| ENV125 | 20081 | 20,250      | 20,250      |
| ENV125 | 20011 | 20,250      | 20,250      |
| ENV125 | 20002 | 20,250      | 20,250      |
| ENV125 | 20001 | 20,250      | 20,250      |
| ENV125 | 19992 | 20,250      | 12,150      |
| ENV125 | 19991 | 20,250      | 12,150      |
| ENV125 | 19982 | 20,250      | 12,150      |
| ENV125 | 19981 | 20,250      | 12,150      |
| ENV125 | 19972 | 12,150      | 12,150      |
| ENV125 | 19971 | 12,150      | 12,150      |
| ENV125 | 19962 | 12,150      | 12,150      |
| ENV125 | 19961 | 12,150      | 12,150      |
| ENV125 | 19952 | 12,150      | 8,100       |
| ENV125 | 19951 | 12,150      | 8,100       |
| ENV125 | 19942 | 8,100       | 8,100       |
| ENV125 | 19941 | 8,100       | 8,100       |

## 5. 자동차\_산정지수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4조제제3항에 따라 매년 환경부에서 고시

## 6. 자동차\_시군구별지역계수 (인구변동 및 기타사유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구역별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 부과기간 내 인구변동으로 인하여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 산정(매월 말일기준으로 익월초에 인구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제6장

## 부 록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3단 비교표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                                                                                 |
|-----------------------------------------------------------------------------------------------------------------------------------------------------------------------------------------------------------------------------------------------------------------------------------------------------------------------------------------------------------------------------------------------------------------------------------|--------------------------------------------------------------------------------------------------------------------------|-------------------------------------------------------------------------------------------------------------------------------------|
| <p><b>제1조(목적)</b>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b> 삭제</p> <p><b>제3조</b> 삭제</p> <p><b>제4조</b> 삭제</p> <p><b>제5조</b> 삭제</p> <p><b>제6조</b> 삭제</p> <p><b>제7조</b> 삭제</p> <p><b>제8조</b> 삭제</p> <p><b>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b>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lt;개정 2015. 1. 20.&gt;</p> | <p><b>제1조(목적)</b>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b> 삭제</p> <p><b>제3조</b> 삭제</p> |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b> 삭제</p> <p><b>제3조</b> 삭제</p> |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b><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p> |
|--------------------------------------------------------------------------------------------------------------------------------------------------------------------------------------------------------------------------------------------------------------------------------------------------------------------------------------------------------------------------------------------------------------------------------------------------------------------------------------------------------------------------------------|-----------------------------------------------------------------------------------------------------------------------------------------------------------------------------------------------------------------------------------------------------------------------------------------------------------------------------------------------------------------------------------------------------------------------------------------------------------------|--------------------------------------------------------------------|
|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5. 1. 20.&gt;</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lt;개정 2013. 7. 16., 2015. 1. 20.&gt;</p> <p>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 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무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2. 삭제 &lt;2015. 1. 20.&gt;</p> <p>3. 삭제 &lt;2015. 1. 20.&gt;</p> <p>4. 삭제 &lt;2015. 1. 20.&gt;</p> <p>5. 삭제 &lt;2015. 1. 20.&gt;</p> | <p>제4조&lt;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gt; ① 삭제 &lt;2015. 6. 9.&gt;</p> <p>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lt;개정 2015. 6. 9.&gt;</p> <p>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p> <p>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p> <p>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p>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 |
|----------------------------------------------------------------|-------------------------------------------------------------------------------------------------------------------------------------------------------------------------------------------------------------------------------------------------------------------------------------------------------------------------------------------------------------------------------------------------------------------------------------------------------------------------------------------|-----------------------------------------------------|
| <p>6. 삭제&lt;2015. 1. 20.&gt;<br/>7. 삭제&lt;2015. 1. 20.&gt;</p> | <p>③ 삭제&lt;2015. 6. 9.&gt;<br/>④ 삭제&lt;2015. 6. 9.&gt;<br/>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br/>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br/>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br/>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유가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br/>⑥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2015. 6. 9.&gt;</p> |                                                     |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b><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p> |
|-------------------------------------------------------------------------------------------------------------|----------------------------------------------------------------------------------------------------------------------------------------------------------------------------------------------------------------------------------------------------------------------------------------------------------------------------------------------------------------------------------------------------------------------------------------------------------------------------------------------------------------------------------------------------------------------------------------------------------|--------------------------------------------------------------------|
| <p>8. 전사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p> | <p>⑦ 삭제&lt;2019. 10. 15.&gt;<br/>[전문개정 2010. 11. 19.]</p> <p><b>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b> ① 삭제&lt;2015. 6. 9.&gt;</p> <p>② 삭제&lt;2015. 6. 9.&gt;</p> <p>③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p> <p>④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 폐지 등으로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과 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 대상으로 한다.&lt;개정 2015. 6. 9.&gt;<br/>[전문개정 2010. 11. 19.]</p> <p><b>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b> ① 삭제&lt;2015. 6. 9.&gt;</p> <p>② 삭제&lt;2015. 6. 9.&gt;</p> <p>③ 삭제&lt;2015. 6. 9.&gt;</p> <p>④ 삭제&lt;2015. 6. 9.&gt;</p> <p>⑤ 별 제9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p>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br>자동차 1대<br>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br>따른 수급권자<br>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7호, 2024. 6. 4., 일부개정]<br>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br>1. 경우에 다른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br>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br>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br>하여 고시하는 자동차<br>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br>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br>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서<br>「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br>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한다)<br>⑥ 법 제9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br>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란 다<br>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5.<br>15., 2018. 12. 31., 2021. 4. 6.><br>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br>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br>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br>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br>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br>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 |
|----------------------------------------------------------------------------------------------------------------------------|-------------------------------------------------------------------------------------------------------------------------------------------------------------------------------------------------------------------------------------------------------------------------------------------------------------------------------------------------------------------------------------------------------------------------------------------------------------------------------------------------------------------------------------------------------------------------------------------------|-----------------------------------------------------|
|----------------------------------------------------------------------------------------------------------------------------|-------------------------------------------------------------------------------------------------------------------------------------------------------------------------------------------------------------------------------------------------------------------------------------------------------------------------------------------------------------------------------------------------------------------------------------------------------------------------------------------------------------------------------------------------------------------------------------------------|-----------------------------------------------------|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b><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647호, 2024. 6. 4.,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p> |
|---------------------------------------------------------------|---------------------------------------------------------------------------------------------------------------------------------------------------------------------------------------------------------------------------------------------------------------------------------------------------------------------------------------------------------------------------------------------------------------------------------------------------------------------------------------------------------------------------------------------------------------------------------|--------------------------------------------------------------------|
|                                                               | <p>업체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도 장에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p> <p>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p> <p>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p> <p>[전문개정 2014. 1. 14.]<br/>[제목개정 2015. 6. 9.]</p> <p><b>제7조(개선부담금 감면)</b>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lt;개정 2015. 6. 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li> <li>2. 삭제&lt;2015. 6. 9.&gt;</li> <li>3. 삭제&lt;2015. 6. 9.&gt;</li> </ol>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 |
|-----------------------------------------------------------------------------------------------------------------------------------------------------------------------------------|---------------------------------------------------------------------------------------------------------------------------------------------------------------------------------------------------------------------------------------------------------------------------------------------------------------------------------------------------------------------------------------------------------------------------------------------------------------------------------------------------------------------------------------------------------|-----------------------------------------------------|
| <p>④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lt;신설 2019. 4. 16.&gt;</p> | <p>4.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br/>5. 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br/>② 삭제 &lt;2015. 6. 9.&gt;<br/>③ 삭제 &lt;2015. 6. 9.&gt;<br/>[전문개정 2014. 1. 14.]</p> <p><b>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①</b>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lt;개정 2015. 6. 9., 2019. 10. 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규등록일</li> <li>2. 말소등록일</li> <li>3.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li> <li>4. 등록지의 이전일(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li> <li>5. 소유권 이전등록일</li> </ol> <p>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p> |                                                     |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b><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647호, 2024. 6. 4.,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p>                                                                                                                                                                                                     |
|---------------------------------------------------------------|---------------------------------------------------------------------------------------------------------------------------------------------------------------------------------------------------------------------------------------------------------------------------------------------------------------------------------------------------------------------------------------------------------------------------------------------------------------------------------------------------------------------------------|------------------------------------------------------------------------------------------------------------------------------------------------------------------------------------------------------------------------------------------------------------------------|
|                                                               | <p>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lt;신설 2019. 10. 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li> <li>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li> <li>3.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경우</li> </ol> <p>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포함한다), 범 별 표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납부 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lt;개정 2019. 10. 15.&gt;</p> <p>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p> | <p><b>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b>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p> <p><b>제5조(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결과의 기록·관리)</b>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p>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                                                                                                                                                                     |
|-------------------------------------------------------------------------------------------------------------------------------------------------------------------------------------------------------------------------------------------------------------|-------------------------------------------------------------------------------------------------------------------------------------------------------------------------------------------------------------------------------------------------------------------------------------|-------------------------------------------------------------------------------------------------------------------------------------------------------------------------------------------------------------------------|
|                                                                                                                                                                                                                                                             | <p>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lt;개정 2019. 10. 15.&gt;<br/>[전문개정 2010. 11. 19.]</p>                                                                                                                                                                  | <p>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저장·관리할 수 있다.</p> |
| <p>⑤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그 관할구역의 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9. 4. 16., 2023. 7. 18.&gt;</p> | <p><b>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b>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p> |                                                                                                                                                                                                                         |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b><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647호, 2024. 6. 4.,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p> |
|--------------------------------------------------------------------------------------------------------------|-------------------------------------------------------------------------------------------------------------------------------------------------------------------------------------------------------------------------------------------------------------------------------------------------------------------------------------------------------------------------------------------------------------------------------------------------------------------------------------------------------------------------------------------------------------------------|--------------------------------------------------------------------|
| <p>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9. 4. 16.&gt;</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p> | <p>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19. 10. 15., 2024. 4. 2.&gt;</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지급한다. &lt;개정 2024. 4. 2.&gt;</p> <p>③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lt;개정 2024. 4. 2.&gt;</p> <p>[전문개정 2010. 11. 19.]</p> <p>[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lt;2019. 10. 15.&gt;]</p> <p><b>제8조의3(분할납부 등)</b> ① 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별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p>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                                                            |
|-----------------------------------------------------------------------------------------------------------------------------------------------------------------------------------------------------------------------------------------------------------------------------------------------------------------------------------------------------------------------------------------------------------------------------------------------------------------------------------------------------------------|---------------------------------------------------------------------------------------------------------------------------------------------------------------------------------------------------------------------------------------------------------------------------------------------------------------------------------------------------------------------------------------------------------------------------------------------------------------------------------------------------------------------------------------|----------------------------------------------------------------------------------------------------------------|
| <p>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lt;개정 2019. 4. 16.&gt;</p> <p>1.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p> <p>2.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p> <p>⑧ 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선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p> | <p>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lt;개정 2014. 1. 14., 2019. 10. 15.&gt;</p> <p>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p> <p>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p> <p>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lt;개정 2019. 10. 15.&gt;</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 월 말일로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p> | <p><b>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b>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p> |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b><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647호, 2024. 6. 4.,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p> |
|----------------------------------------------------------------------------------------------------------------------------------------------------------------------------------------------------------------------------------------------|----------------------------------------------------------------------------------------------------------------------------------------------------------------------------------------------------------------------------------------------------------------------------------------------------------------------------------------------------------------------------------------------------------------------------------------------------------------------------------------------------------------------------------------------------------------|--------------------------------------------------------------------|
| <p>“개선부담금”으로, “세무서장”은 “환경부장관”으로, “납세”는 “납부”로 본다. &lt;개정 2013. 7. 16., 2019. 4. 16.&gt;</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4. 16.&gt;</p> <p>[전문개정 2010. 5. 25.]</p> | <p>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lt;개정 2019. 10. 15.&gt;</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lt;개정 2021. 2. 17.&gt;</p> <p>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p> <p>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p> <p>⑥ 삭제 &lt;2019. 10. 15.&gt;</p> <p>[전문개정 2010. 11. 19.]</p> <p>[제목개정 2014. 1. 14.]</p> <p>[제8조의2에서 이동 &lt;2019. 10. 15.&gt;]</p> <p><b>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b> ① 환경부장관은</p> | <p>서식에 따른다.</p>                                                    |

| <div>환경개선비용 부담법</div> <div>[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div>                                                                                                                                                                                                                                                                                                                                                                                                                                                                                                                  | <div>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div> <div>[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div>                                                                                                | <div>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div> <div>[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div> |
|------------------------------------------------------------------------------------------------------------------------------------------------------------------------------------------------------------------------------------------------------------------------------------------------------------------------------------------------------------------------------------------------------------------------------------------------------------------------------------------------------------------------------------------------------------------------------------|-----------------------------------------------------------------------------------------------------------------------------------------------------------------------|------------------------------------------------------------------------|
| <p>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lt;개정 2019. 10. 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선부담금의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li> <li>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li> <li>3. 삭제&lt;2015. 6. 9.&gt;</li> <li>4. 분할납부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경우</li> </ol>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lt;개정 2019. 10. 15.&gt;</p> <p>[전문개정 2010. 11. 19.]</p> <p><b>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b> ①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의 납</p> | <p>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b>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b>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p> |                                                                        |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b><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p>                                                                                            |
|---------------------------------------------------------------|-----------------------------------------------------------------------------------------------------------------------------------------------------------------------------------------------------------------------------------------------------------------------------------------------------------------------------------------------------------------------------------|---------------------------------------------------------------------------------------------------------------------------------------------------------------|
|                                                               | <p>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전문개정 2010. 11. 19.]</p> | <p>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b>제8조 삭제</b></p> <p><b>제9조(규제의 재검토)</b>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p>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 |
|--------------------------------------------------------------------------------------------------------------------------------------------------------------------------------------------------------------------------------------------------------------------------------------------------------------------------------------------------------------------------------------------------------------------------|---------------------------------------------------------------------------------------------------------------------------------------------------------------------------------------------------------------------------------------------------------------------------------------------------------------------------------------------------------------------------------------------------------------------------------------------------------------------------------------|-----------------------------------------------------|
| <p><b>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b></p> <p>① 개선부담금(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납부일로 본다.</p> <p>③ 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4. 16.]</p> | <p><b>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b></p> <p>① 별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li> <li>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li> <li>②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li> </ol> | <p>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b><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p>                                |
|------------------------------------------------------------------------------------------------------------------------------------------------------------------------------------------------------------------------------------------------------------------------|------------------------------------------------------------------------------------------------------------------------------------------------------------------------------------------------------------------------------------------------------------------------------------------------------------------------------------------------------------------------------------|---------------------------------------------------------------------------------------------------|
| <p><b>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b> ① 삭제&lt;2015. 1. 20.&gt;<br/>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br/>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br/>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 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개정 2015. 1. 20.&gt;<br/>[전문개정 2010. 5. 25.]</p> | <p>[본조신설 2019. 10. 15.]<br/>[총선 제11조는 제8조의2로 이동 &lt;2019. 10. 15.&gt;<br/><b>제12조</b> 삭제<br/><b>제13조</b> 삭제<br/><br/><b>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b> ① 법 제10조에 따른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은 기준 부과액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lt;개정 2015. 6. 9.&gt;<br/>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부과금액은 별표 6의 2와 같다.&lt;개정 2015. 6. 9.&gt;<br/>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 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p> | <p><b>제10조</b> 삭제<br/><b>제11조</b> 삭제<br/><b>제12조</b> 삭제<br/><b>제13조</b> 삭제<br/><b>제14조</b> 삭제</p>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 |
|-------------------------------------------------------------------------------------------------------------------------------------------------------------------------------------------------------------------------------------------------------------------------------|-------------------------------------------------------------------------------------------------------------------------------------------------------------------------------------------------------------------------------------------------------------------------------------------------------------------------------------------------------------------------------------------------------------------------------------------------------------------------|-----------------------------------------------------|
| <p>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li> <li>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용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li> </ol> | <p>[전문개정 2010. 11. 19.]</p> <p>[제목개정 2015. 6. 9.]</p> <p>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량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p> <p>제16조 삭제</p> <p>제17조 삭제</p> <p>제17조의2 삭제</p> <p>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li> <li>2.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li> <li>3.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li> <li>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li> </ol> <p>[전문개정 2010. 11. 19.]</p> |                                                     |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b><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p> |
|---------------------------------------------------------------------------------------------------------------------------------------------------------------------------|----------------------------------------------------------------------------------------------------------------------------------------|--------------------------------------------------------------------|
| <p>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br/>[전문개정 2010. 5. 25.]</p> <p>제12조 삭제</p> <p>제13조 삭제</p> <p>제14조 삭제</p> <p>제15조 삭제</p> <p>제16조 삭제</p> <p>제17조 삭제</p> <p>제18조 삭제</p> | <p>제19조 삭제</p> <p>제20조 삭제</p> <p>제21조 삭제</p> <p>제22조 삭제</p> <p>제23조 삭제</p> <p>제24조 삭제</p> <p>제25조 삭제</p> <p>제26조 삭제</p> <p>제27조 삭제</p> |                                                                    |
| <p>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歲入)으로 한다.</p> <p>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p>                                               |                                                                                                                                        |                                                                    |

| <div>환경개선비용 부담법</div> <div>[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div>                                                                                                                                                                                                                                                                                                                                                                                                                                              | <div>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div> <div>[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div> | <div>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div> <div>[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div> |
|----------------------------------------------------------------------------------------------------------------------------------------------------------------------------------------------------------------------------------------------------------------------------------------------------------------------------------------------------------------------------------------------------------------------------------------------------------------------------------------------------------------|------------------------------------------------------------------------|------------------------------------------------------------------------|
| <p>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7. 16.〉</p> <p>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7. 18.〉</p> <p>③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5. 25.]</p> <p><b>제21조(결손처분)</b>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p> |                                                                        |                                                                        |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b></p> <p>[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p> <p>[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p> <p>[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p> |
|----------------------------------------------------------------------------------------------------------------------------------------------------------------------------------------------------------------------------------------------------------------------------------------------------------------------------------------------------------------------------------------------------------------------------------------------------------------------------------------------------------------------------------------------------------------------------|-----------------------------------------------------------------------|-----------------------------------------------------------------------|
| <p>을 채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20. 5.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채납처분이 끝나고 그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채납액보다 부족한 경우</li> <li>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li> <li>3. 개선부담금을 채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채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li> </ol>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9. 4. 16.]</p> <p><b>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b>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 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p> |                                                                       |                                                                       |

| <div>환경개선비용 부담법</div> <div>[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div>                                                                                                                                                                  | <div>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div> <div>[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div>                                                                                                                                                                                                                                                                                                                         | <div>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div> <div>[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div> |
|------------------------------------------------------------------------------------------------------------------------------------------------------------------------------------------------------------------------------------|------------------------------------------------------------------------------------------------------------------------------------------------------------------------------------------------------------------------------------------------------------------------------------------------------------------------------------------------------------------------------------------------|------------------------------------------------------------------------|
| <p>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22조(권한의 위임)</b>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 <p><b>제28조(권한의 위임)</b>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11. 19., 2019. 10. 15., 2023. 2. 21., 2024.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li> <li>2. 제4조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li> <li>3. 제8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li> <li>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li> </ol> <p>4의2.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산처분 및 체납처분</p> |                                                                        |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b><br/>[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p>                                                                                                                                                                                                                                                                                                                                                                                                                                                                     | <p><b>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b><br/>[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p> |
|---------------------------------------------------------------|----------------------------------------------------------------------------------------------------------------------------------------------------------------------------------------------------------------------------------------------------------------------------------------------------------------------------------------------------------------------------------------------------------------------------------------------------------------------------------------------------------------------------------------|--------------------------------------------------------------------|
|                                                               | <p>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p> <p>② 삭제 &lt;2007. 6. 4.&gt;</p> <p>③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lt;개정 2010. 11. 19., 2024. 4. 2.&gt;</p> <p>④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은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lt;개정 2010. 11. 19., 2024. 4. 2.&gt;</p> <p><b>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b> 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1. 법 제9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징수</p> |                                                                    |

| <div> <div>환경개선비용 부담법</div> <div>[법률 제19558호, 2023. 7. 18., 일부개정]</div> </div> | <div> <div>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div> <div>[대통령령 제34547호, 2024. 6. 4., 일부개정]</div> </div>                                                                             | <div> <div>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div> <div>[환경부령 제1083호, 2024. 4. 2., 일부개정]</div> </div> |
|--------------------------------------------------------------------------------|-----------------------------------------------------------------------------------------------------------------------------------------------------------------|-------------------------------------------------------------------------------------|
|                                                                                | <div> <div>에 관한 사무</div> <div>2. 법 제2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강제 징수 등에 관한 사무</div> <div>3.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 분 및 채납처분에 관한 사무</div> <div>[본조신설 2012. 1. 6.]</div> </div>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별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별표] 〈신설 2019. 4. 16.〉

### 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제9조제4항 관련)

|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
| 1.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2.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1] 삭제 <1994. 12. 31.>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2] 삭제 <1994. 12. 31.>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3] 삭제 <2019. 10. 15.>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4] 삭제 <2015. 6. 9.>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5] 삭제 <2015. 6. 9.>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6] 삭제 <2015. 6. 9.>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24. 6. 4.〉

###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제14조제2항 관련)

| 적용 기간             | 1995년 1월 1일부터<br>1996년 12월 31일까지 | 1997년 1월 1일 이후 |
|-------------------|----------------------------------|----------------|
| 기준 부과금액<br>(원/반기) | 12,150                           | 20,250         |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cc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7,6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4.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신규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7] &lt;개정 2023. 2. 21.&gt;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

## 1. 오염유발계수

| 엔진 총배기량(cc)        | 오염유발계수 |
|--------------------|--------|
| 2,000 이하           | 1.00   |
| 2,000 초과 2,500 이하  | 1.25   |
| 2,500 초과 3,500 이하  | 1.75   |
| 3,500 초과 6,500 이하  | 2.64   |
| 6,500 초과 10,000 이하 | 4.50   |
| 10,000 초과          | 5.00   |

## 2. 지역계수

| 지역별  | 인구<br>10만 미만 | 인구<br>10만 이상<br>50만 미만 | 인구<br>50만 이상<br>100만 미만 | 인구<br>100만 이상<br>500만 미만 | 인구<br>500만 이상 |
|------|--------------|------------------------|-------------------------|--------------------------|---------------|
| 지역계수 | 0.40         | 0.85                   | 0.87                    | 1.00                     | 1.53          |

## 비고

- 인구의 적용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군이 통합된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구역별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해당 시의 시청 소재지가 읍·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역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군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인구 1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을 사용 본거지로 하여 등록한 자동차의 지역계수는 “인구 10만 이상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권역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 3. 차령계수

| 차령   | 3년 미만 | 3년 이상<br>4년 미만 | 4년 이상<br>6년 미만 | 6년 이상<br>8년 미만 | 8년 이상<br>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비고: 차령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차령은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되, 차령이 3년 미만인 경유 사용 자동차의 차령계수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유 사용 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 0.50
2. 그 밖의 경유 사용 자동차: 1.00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표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표] 삭제 <2015. 6.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

화경개서부담금 납부고지서식

## 1. 분납고지서

(아프)

[illegible]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  |             |  |                                                                                                  |  |            |  |  |  |
|-------------------|--|-------------|--|--------------------------------------------------------------------------------------------------|--|------------|--|--|--|
| ①성명               |  | ④발행번호       |  |                                                                                                  |  |            |  |  |  |
| ②생년월일<br>(본인등록번호) |  |             |  |                                                                                                  |  |            |  |  |  |
| 납부<br>의무자         |  |             |  |                                                                                                  |  |            |  |  |  |
| ③주소               |  | ⑥           |  | ⑤차량<br>번호                                                                                        |  |            |  |  |  |
| 배기량               |  | ⑦           |  | ⑧년도<br>반기분                                                                                       |  |            |  |  |  |
| ⑧부과기관 및<br>코드번호   |  | ⑨           |  | ⑩납부<br>기한                                                                                        |  |            |  |  |  |
| 부담금 내용            |  |             |  |                                                                                                  |  |            |  |  |  |
| ⑪총계               |  | ⑫납기 내<br>금액 |  | ⑬납기 후<br>기산금                                                                                     |  | ⑭미납<br>부담금 |  |  |  |
| 원                 |  | 원           |  | 원                                                                                                |  | 원          |  |  |  |
| ⑮잔지남부번호           |  |             |  |                                                                                                  |  |            |  |  |  |
| ⑯가상계좌             |  |             |  |                                                                                                  |  |            |  |  |  |
| 수납일째도장            |  | 년 월 일       |  | 납<br>특<br>광<br>시<br>별<br>시<br>장<br>영<br>역<br>시<br>장<br>도<br>별<br>자<br>치<br>시<br>장<br>지<br>사<br>인 |  |            |  |  |  |
|                   |  |             |  | 특<br>별<br>자<br>치<br>도<br>지<br>사<br>특<br>례<br>시(인구 100만<br>이상의 대도시)의 장                            |  |            |  |  |  |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  |             |  |                                                                                                  |  |            |  |  |  |
|-------------------|--|-------------|--|--------------------------------------------------------------------------------------------------|--|------------|--|--|--|
| ①성명               |  | ④발행번호       |  |                                                                                                  |  |            |  |  |  |
| ②생년월일<br>(본인등록번호) |  |             |  |                                                                                                  |  |            |  |  |  |
| 납부<br>의무자         |  |             |  |                                                                                                  |  |            |  |  |  |
| ③주소               |  | ⑥           |  | ⑤차량<br>번호                                                                                        |  |            |  |  |  |
| 배기량               |  | ⑦           |  | ⑧년도<br>반기분                                                                                       |  |            |  |  |  |
| ⑧부과기관 및<br>코드번호   |  | ⑨           |  | ⑩납부<br>기한                                                                                        |  |            |  |  |  |
| 부담금 내용            |  |             |  |                                                                                                  |  |            |  |  |  |
| ⑪총계               |  | ⑫납기 내<br>금액 |  | ⑬납기 후<br>기산금                                                                                     |  | ⑭미납<br>부담금 |  |  |  |
| 원                 |  | 원           |  | 원                                                                                                |  | 원          |  |  |  |
| ⑮잔지남부번호           |  |             |  |                                                                                                  |  |            |  |  |  |
| ⑯가상계좌             |  |             |  |                                                                                                  |  |            |  |  |  |
| 수납일째도장            |  | 년 월 일       |  | 납<br>특<br>광<br>시<br>별<br>시<br>장<br>영<br>역<br>시<br>장<br>도<br>별<br>자<br>치<br>시<br>장<br>지<br>사<br>인 |  |            |  |  |  |
|                   |  |             |  | 특<br>별<br>자<br>치<br>도<br>지<br>사<br>특<br>례<br>시(인구 100만<br>이상의 대도시)의 장                            |  |            |  |  |  |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  |             |  |                                                                                                  |  |            |  |  |  |
|-------------------|--|-------------|--|--------------------------------------------------------------------------------------------------|--|------------|--|--|--|
| ①성명               |  | ④발행번호       |  |                                                                                                  |  |            |  |  |  |
| ②생년월일<br>(본인등록번호) |  |             |  |                                                                                                  |  |            |  |  |  |
| 납부<br>의무자         |  |             |  |                                                                                                  |  |            |  |  |  |
| ③주소               |  | ⑥           |  | ⑤차량<br>번호                                                                                        |  |            |  |  |  |
| 배기량               |  | ⑦           |  | ⑧년도<br>반기분                                                                                       |  |            |  |  |  |
| ⑧부과기관 및<br>코드번호   |  | ⑨           |  | ⑩납부<br>기한                                                                                        |  |            |  |  |  |
| 부담금 내용            |  |             |  |                                                                                                  |  |            |  |  |  |
| ⑪총계               |  | ⑫납기 내<br>금액 |  | ⑬납기 후<br>기산금                                                                                     |  | ⑭미납<br>부담금 |  |  |  |
| 원                 |  | 원           |  | 원                                                                                                |  | 원          |  |  |  |
| ⑮잔지남부번호           |  |             |  |                                                                                                  |  |            |  |  |  |
| ⑯가상계좌             |  |             |  |                                                                                                  |  |            |  |  |  |
| 수납일째도장            |  | 년 월 일       |  | 납<br>특<br>광<br>시<br>별<br>시<br>장<br>영<br>역<br>시<br>장<br>도<br>별<br>자<br>치<br>시<br>장<br>지<br>사<br>인 |  |            |  |  |  |
|                   |  |             |  | 특<br>별<br>자<br>치<br>도<br>지<br>사<br>특<br>례<br>시(인구 100만<br>이상의 대도시)의 장                            |  |            |  |  |  |

297×210mm[백상지 80g/㎡]

유의사항

1.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납부담금이 적혀 있는 납부의무자는 미납부담금을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은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한 직접납부와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자동차의 오염유발계수 × 차량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7. 납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분야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8. 해당 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가 감면되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 납기 마감일 7일 전까지 일시납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식

## 2. 일시 납부고지서

(아프)

( )  
어  
모  
간  
행  
기  
관  
( )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           |           |  |  |
|-----------------------------------------------------------------------------------------------------------------------------------------------------------------------------|-----------|-----------|--|--|
| ①성명                                                                                                                                                                         | ④발행번호     |           |  |  |
| ②생년월일<br>(주민등록번호)                                                                                                                                                           |           |           |  |  |
| ③주소                                                                                                                                                                         |           |           |  |  |
| ⑤배기량                                                                                                                                                                        | ⑥차량<br>번호 |           |  |  |
| ⑦년도분                                                                                                                                                                        |           |           |  |  |
| ⑧부과기간 및<br>코드번호                                                                                                                                                             |           | ⑨납부<br>기한 |  |  |
| 부담금 내용                                                                                                                                                                      |           |           |  |  |
| ⑩납부금액                                                                                                                                                                       |           | 원         |  |  |
| ⑭전자납부번호                                                                                                                                                                     |           |           |  |  |
| ⑮가상계좌                                                                                                                                                                       |           |           |  |  |
| <div> <div>년 월 일</div> <div> <div>수납일째도장</div> <div> <div>특광</div> <div>특별자치시</div> <div>도</div> <div>특별자치도지사</div> <div>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div> </div> </div> </div> |           |           |  |  |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           |           |  |  |
|-----------------------------------------------------------------------------------------------------------------------------------------------------------------------------|-----------|-----------|--|--|
| ①성명                                                                                                                                                                         | ④발행번호     |           |  |  |
| ②생년월일<br>(주민등록번호)                                                                                                                                                           |           |           |  |  |
| ③주소                                                                                                                                                                         |           |           |  |  |
| ⑤배기량                                                                                                                                                                        | ⑥차량<br>번호 |           |  |  |
| ⑦년도분                                                                                                                                                                        |           |           |  |  |
| ⑧부과기간 및<br>코드번호                                                                                                                                                             |           | ⑨납부<br>기한 |  |  |
| 부담금 내용                                                                                                                                                                      |           |           |  |  |
| ⑩납부금액                                                                                                                                                                       |           | 원         |  |  |
| ⑭전자납부번호                                                                                                                                                                     |           |           |  |  |
| ⑮가상계좌                                                                                                                                                                       |           |           |  |  |
| <div> <div>년 월 일</div> <div> <div>수납일째도장</div> <div> <div>특광</div> <div>특별자치시</div> <div>도</div> <div>특별자치도지사</div> <div>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div> </div> </div> </div> |           |           |  |  |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           |           |  |  |
|-----------------------------------------------------------------------------------------------------------------------------------------------------------------------------|-----------|-----------|--|--|
| ①성명                                                                                                                                                                         | ④발행번호     |           |  |  |
| ②생년월일<br>(주민등록번호)                                                                                                                                                           |           |           |  |  |
| ③주소                                                                                                                                                                         |           |           |  |  |
| ⑤배기량                                                                                                                                                                        | ⑥차량<br>번호 |           |  |  |
| ⑦년도분                                                                                                                                                                        |           |           |  |  |
| ⑧부과기간 및<br>코드번호                                                                                                                                                             |           | ⑨납부<br>기한 |  |  |
| 부담금 내용                                                                                                                                                                      |           |           |  |  |
| ⑩납부금액                                                                                                                                                                       |           | 원         |  |  |
| ⑭전자납부번호                                                                                                                                                                     |           |           |  |  |
| ⑮가상계좌                                                                                                                                                                       |           |           |  |  |
| <div> <div>년 월 일</div> <div> <div>수납일째도장</div> <div> <div>특광</div> <div>특별자치시</div> <div>도</div> <div>특별자치도지사</div> <div>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div> </div> </div> </div> |           |           |  |  |

(여) (하) (하) (사) (사)

(부과기과)여모택

(여고생)

(납부자 보관용)

 $297\text{mm} \times 210\text{mm}$  [북상지 80g/m<sup>2</sup>]

유의사항

1.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납부담금이 적혀 있는 납부의무자는 미납부담금을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3. 납기미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은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한 직접납부와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자동차의 오염유발계수 × 차량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7. 납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분야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6. 1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대장

| 관리번호 |                 |                 |                |                  |               |           |               |                  |             |               |  |
|------|-----------------|-----------------|----------------|------------------|---------------|-----------|---------------|------------------|-------------|---------------|--|
| 지동차  | 차대번호            |                 |                | 연식               |               |           |               | 성명               |             |               |  |
|      | 차명              |                 |                | 제작 용도            |               |           |               | 생년월일<br>(법인등록번호) |             |               |  |
|      | 차종              |                 |                | 출처 구분            |               |           |               |                  |             |               |  |
|      | 배기량             |                 |                | 등록 용도            |               |           |               |                  |             |               |  |
|      | 최초 등록일          |                 |                | 용도변경일            |               |           |               | 주소               |             |               |  |
|      | 사용 본거지          |                 |                |                  |               |           |               |                  |             |               |  |
|      | 등록 지역<br>(지역계수) |                 |                | 면제 구분            |               |           |               |                  |             |               |  |
|      | 연도<br>기         | 연도별<br>차량<br>계수 | 양도(전출)일<br>말소일 | 취득(전입)일<br>용도변경일 | 적용일수<br>당기부담금 | 가산금<br>합계 | 수납년월일<br>수납금액 | 납부고지서 번호         | 조정내역<br>조정일 | 체납처분내역<br>독촉일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4. 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납부의무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상호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      |    |
|               | 차량번호      |              |    |
| 당초 부과<br>내용   | 납부고지서 수령일 |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    |
|               | 부과 일시     | 부과 금액        |    |
|               | 납부기한      |              |    |
| 분할납부<br>신청 금액 | 합계        |              |    |
|               | 1차        | 2차           | 3차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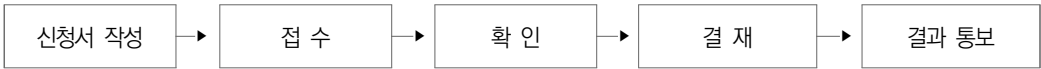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br>없음 |
|------|----|-----------|

처리 절차



신청인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4. 4. 2.〉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 ]허용 [ ]불허용 통지서

|     |          |              |  |  |
|-----|----------|--------------|--|--|
| 신청인 | 납부의무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상호       |              |  |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      |  |  |
|     | 차량번호     |              |  |  |

|       |            |       |         |          |
|-------|------------|-------|---------|----------|
| 부과 기간 |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 부과 금액 | 분할납부 금액 | 차감 부과 금액 |
|       |            |       |         |          |

|            |       |      |         |           |
|------------|-------|------|---------|-----------|
| 분할납부<br>사항 | 분할 횟수 | 납부기한 |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해야 할 금액 |
|            | 1차    |      |         |           |
|            | 2차    |      |         |           |
|            | 3차    |      |         |           |
|            | 합계    |      |         |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귀하의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 ]허용 [ ]불허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직인

## 유의사항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또는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4. 2.〉

환경개선부담금 [ ]조정 부과 통지서  
[ ]환급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납부의무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상호                        |              |       |
|                            | 주소                        |              |       |
| [ ]조정 부과<br>내용<br>[ ]환급 내용 | 계                         |              |       |
|                            | 부담금                       | 가산금          | 미납부담금 |
|                            | [ ]조정 부과금<br>[ ]환급 부과금    |              |       |
|                            | [ ]조정 부과 결정일<br>[ ]환급 결정일 |              |       |
|                            | [ ]수납<br>[ ]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              |       |

사유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 ]조정 부과 [ ]환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직인

작성방법

- 1. 납부의무자란에는 조정 부과 또는 환급 대상 시설물의 상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성명, 시설물 주소를 적습니다.
- 2. 사유란에는 조정 부과 또는 환급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4. 2.〉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신청인         | 납부의무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상호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              |     |
|             | 차량번호            |              |     |
| 당초 부과<br>내용 | 납부고지서 수령일       |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     |
|             | 부과 일시           | 부과 금액        |     |
|             | 납부기한            |              |     |

조정 신청 사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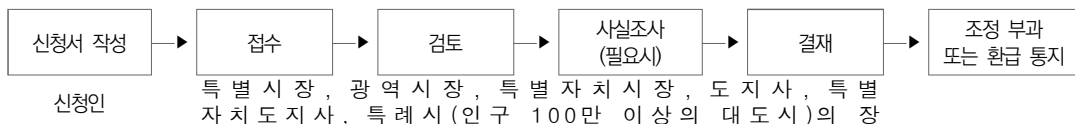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조정 신청 증명서류 1부 | 수수료<br>없음 |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7. 6. 7.〉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7. 6. 7.〉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시행 2024. 6. 7.] [환경부훈령 제1646호, 2024. 6. 7., 일부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법 제9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한다.
2. "납부 장소"란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말한다.
3.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징수의 순위)**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담금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가산금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 제2장 부담금 산정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일할계산)**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그 기준일로 한다.

1. 신규등록일
  2. 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면제대상 용도로의 변경등록일
  3. 말소등록일
  4. 운송사업용 또는 자가용으로의 변경등록일
  5. 휴지신고일
  6.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등록일
- ② 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나 부과 기간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멸실, 훼손 등으로 사용이 폐지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세 비과세관련 규정의 기준일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다만, 폐차의 경우 폐차장 입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 ③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운행하고 있으나 종전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의 운행 신고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④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면제 자동차의 경우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여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권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제8조(수시부과)**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 시의 부담금 납부 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우편송달의 경우 20일로 한다.

**제9조(분할납부허가 취소통지 및 일시징수)** ① 영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 중 이미 납부한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되 제24조의 독촉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 제4장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 시 단수계산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부과금 산정지수의 적용)**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산정지수는 부과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부담금 산정 시 단수계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부담금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⑤ 삭제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5장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제19조(징수관의 임명 및 재정보증)**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담금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 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징수관의 업무)**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부담금 수납금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
3.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4. 부담금의 조정, 환급, 분할납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공매 등에 관한 사항
6. 결산처분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담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제21조(납부고지서 서식)** 징수권자가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고지금액의 최저한)** ① 고지할 부담금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으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에 따른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3조 삭제**

**제24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 ②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③ 독촉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제4호의2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독촉 고지서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25조(공매에 의한 징수)** ① 공매에 의하여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부터 지체없이 특별회계에 불입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한 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제26조(체납처분 절차)** ① 징수권자는 납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체납사유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②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징수관으로 하여금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중점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제27조(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① 징수권자는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기타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징수관이 직접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공부 열람과 재산확인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
3. 전화가입 사항
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6. 기타 참고사항

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색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이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주소,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의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제29조(결손처분)** 부담금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채납처분이 종결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에 부족한 때
2. 부담금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채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4.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채납처분비에 부족되어 채납처분을 중지한 때
5. 채납처분 목적물의 총재산이 부담금의 납기 개시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 추산가격이 채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부족되어 채납처분을 중지한 때
6. 자동차에 부과된 부담금으로서 그 차주가 사망하고 해당 자동차는 폐차, 멸실되어 등록 말소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채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및 같은 법 제564조에 따라 채납자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때

**제30조(결손처분의 취소 등)** 징수권자는 제29조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 절차를 취해야 한다.

## 제6장 수납사무, 환급 및 징수비용의 지급

**제31조(수납사무)** ① 징수권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방세 등(이하 "공금"이라 한다)의 수납을 위하여 설치한 금고에 부담금의 수탁사무를 위탁해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른 금고에 부담금 수납을 위한 징수권자 명의의 부담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③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금고업무 취급계약 및 공금수납대행 계약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제32조(수납된 부담금의 특별회계 납입)** ① 징수권자는 금고은행으로 하여금 징수한 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특별회계에 납입하게 해야 하며, 금고은행은 납입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납부일 다음 날까지 징수권자에

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금고은행으로부터 부담금 납입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특별회계 수입 징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자는 부담금과 구분해야 한다.

**제33조(환급금의 지출방법)** ① 징수권자가 부담금의 과다 납입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처리시 해당 금고은행에 납입된 부담금이 과오납 결정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징수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특별회계 수입 징수관이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33조의2(일시납부한 부담금의 환급)**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부담금을 일시납부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일시수납한 징수권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등록지 이전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제34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납입된 때에는 매분기 영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징수비용을 정산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지급하되, 12월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이후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지급된 징수비용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입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여비, 일용직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 취득비, 물품구입비 등
  2. 행정소송 비용
  3. 신규부과대상 발굴자, 체납액 징수자 및 징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4.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5. 관할 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6. 기타 시·도 또는 특별시의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
- ③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35조(장부의 비치)** 징수권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부담금 징수

및 환급금 지출사항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36조(보고)** 징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지정서식에 따라 전년도 부과·징수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송신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

1. 부과 및 징수현황 : 별지 제8호 서식
2. 체납처분현황 : 별지 제9호 서식
3. 환급현황 : 별지 제10호 서식

**제37조(점검확인의 실시)** ① 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 등 부과대상 현황관리의 적정여부
2.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등 부담금 산정 적정여부
3. 부담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
4. 부과·징수대장 등 기록·관리여부
5.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 수립·시행 여부

② 시·도지사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 부과·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다만, 압류에 관계되는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제15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646호, 2024.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6.7.] [환경부고시 제2024-113호, 2024.6.7., 일부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연소·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2호의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유로4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2006. 1. 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유로5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바목의 2009. 9. 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유로6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사목의 2014. 1. 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경유자동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및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장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제4조(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제2조제1호의 "저공해자동차" 및 같은조제5호의 "유로5 경유차"와 같은조제6호의 "유로6 경유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제6조** 〈삭 제〉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 칙 〈제2024-113호, 2024. 6. 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6. 7.] [환경부고시 제2024-112호, 2024. 6. 7., 일부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징수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추가 징수비용"이라 함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기본 징수비용 이외 추가로 교부하는 징수비용을 말한다.
3. "부담금 징수율"(이하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징수결정 합산금액에는 불납결손액의 현년도와 과년도 합산금액을 제외한다.
4. "부담금 기본 징수율"(이하 "기본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현년도와 과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5. "부담금 초과 징수율"(이하 "초과 징수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도 또는 특별시의 징수율 추이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환경부장관은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추가 징수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2.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확인

**제6조(추가 징수비용 지급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평가하고, 평가결과 추가 징수비용 지급 대상이 되는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전년도 징수한 부담금의 초과 징수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 징수비용 이외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추가 징수비용의 산정식은 별표와 같다.

**제7조(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 ①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제출한 서류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된 부담금을 토대로 전년도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징수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③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 및 비용의 결정은 시·군·구별로 산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결정한 추가 징수비용을 해당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

**제8조(추가 징수비용 재배분 등)**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시·도지사는 지급받은 추가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배분방법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2024-112호, 2024. 6. 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시행 2019. 10. 17.] [환경부고시 제2019-192호, 2019. 10. 17., 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제1조(납부대행기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 |           |
|----------------|-----------|
| 사단법인<br>금융결제원  | 신용카드사     |
|                | (주)광주은행   |
|                | KB국민은행(주) |
|                | (주)농협은행   |
|                | 롯데카드(주)   |
|                | 비씨카드(주)   |
|                | 삼성카드(주)   |
|                | 수협은행      |
|                | 신한카드(주)   |
|                | (주)전북은행   |
|                | (주)제주은행   |
|                | 하나카드(주)   |
|                | (주)한국씨티은행 |
|                | 현대카드(주)   |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30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 부 칙 〈제2019-192호, 2019. 10. 17.〉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시행 2024. 1. 1.] [환경부고시 제2023-298호, 2023. 12. 28., 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319로 한다.

### 부 칙 〈제2023-298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

인 쇄 2024년 12월

발 행 2024년 12월

발 행 인 환 경 부 장 관 김 완 섭

편 집 녹색전환정책관 서 영 태

과장 마재정 / 사무관 이준규 / 주무관 전소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TEL: 044-201-6688/6689) (우: 61945)